

2018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지침 안내문

- 본 지침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제작하였습니다.
- 그동안 국가예방접종 세부사업별로 발간하였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안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안내’,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예방접종 민원상담 사례집’을 2018년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으로 통합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에게 예방접종사업별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발간 예정인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2018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에 대한 오류정정, 내용 수정, 보완 및 제언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정보시스템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예방접종관리과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침내용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문의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48~51, 이메일: nip01@korea.kr)

2018년도 국가예방접종 세부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구 분	2017년	2018년	비고												
사업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004. 1. 1.이후 출생자) <신설> * Hib 및 PCV 백신은 생후 59개월 이하 지원 * A형간염 백신은 2012년 이후 출생아 지원 * HPV백신은 2003~2005년 출생한 여자 ('03년생은 '16년 1차접종자에게 2차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는 생후 6~59개월 아동	- 만 12세 이하 아동 (2005. 1. 1.이후 출생자) * BCG 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지원(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검사 음성인 경우) * Hib 및 PCV 백신은 생후 59개월 이하 지원 * A형간염 백신은 2012년 이후 출생아 지원 * HPV백신은 2005~2006년 출생한 여자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내용 참조) * 인플루엔자는 생후 6개월~만12세 이하 아동	p5 *예방접종실시기준에 따라 BCG 지원대상자 명확히 함 *인플루엔자 지원대상 확대												
예방 접종 비용 공고 주체 등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위원회 위촉자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 - 예방접종비용 결정 및 비용 관보·공고의 주체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위원회 위촉자 -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장) - 예방접종비용 결정 및 비용 관보·공고의 주체 -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사항 (17.10.19) p123												
계약 기간	위탁계약 체결기간: 3년	- 위탁계약 체결기간: 5년 * 고시 시행일(2017.10.19.) 이후 계약기관부터 적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사항 (17.10.19)												
교육 이수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는 반드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의료기관의 모든 예방접종 시행의사는 반드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p16												
지원 비용	-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백신별 공고가 -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8,200원. 단, DTaP-IPV 혼합백신은 27,300원 (2017.6.19. 변경사항: 1회당 18,400원. 단, DTaP-IPV는 27,600원, DTaP-IPV/Hib는 36,800원)	-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백신별 공고가 -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8,600원. 단, DTaP-IPV 혼합백신은 27,900원, DTaP-IPV/Hib 혼합백신은 37,200원 * 2018년도 예방접종시행비용은 1.1.부터 적용	'2017년 제4차 예방접종 비용심의위원회 심의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사항(17.10.19) p31												
실시 기준	-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 IPV 지연시 예방접종 (4개월~6세) <table><tr><td>1~2차</td><td>2~3차</td><td>3~4차</td></tr><tr><td>4주</td><td>4주</td><td>6개월</td></tr></table>	1~2차	2~3차	3~4차	4주	4주	6개월	-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 IPV 지연시 예방접종(4개월~18세) <table><tr><td>1~2차</td><td>2~3차</td><td>3~4차</td></tr><tr><td>4주</td><td>4주</td><td>6개월</td></tr></table> * 마지막접종은 이전 접종과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4세 이후에 접종, 세 번째 접종은 두	1~2차	2~3차	3~4차	4주	4주	6개월	'예방접종대상감염병의 역학과관리' 개정사항 반영 p23
1~2차	2~3차	3~4차													
4주	4주	6개월													
1~2차	2~3차	3~4차													
4주	4주	6개월													

구 분	2017년	2018년	비고						
	(7~18세) <table><tr><td>1~2차</td><td>2~3차</td><td>3~4차</td></tr><tr><td>4주</td><td>4주</td><td>-</td></tr></table>	1~2차	2~3차	3~4차	4주	4주	-	번째 접종과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며 4세 이후에 받았다면 네 번째 접종은 하지 않음	
1~2차	2~3차	3~4차							
4주	4주	-							
비용 상환 기준	• B형간염(11세 이상) - 백신비는 0.5ml 단가 지원	• B형간염(11세 이상) - 백신비는 10ml 단가 지원	p27						
	<신설>	• BCG 피내용 백신비 - 실제 사용한 백신에 대해 백신비 신청 및 지급	p28						
	<신설>	• 권장하지 않는 교차접종 지양 - 일본뇌염 1차 접종은 베로세포유래 불활성화 백신 또는 생백신 으로 접종 함을 권장함	p21						
귀국 자녀 접종 기록 전산 등록	• 귀국 자녀 예방접종 전산등록 안내 - 영문예방접종증명서의 기록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에서 발급한 경우 아기수첩에 표기된 예방접종기록 인정여부 검토 중임	• 귀국 자녀 예방접종 전산등록 안내 - 영문예방접종증명서의 기록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수첩 및 백신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 가 부착된 수첩의 기록 을 접종 기록으로 인정	p33						
서식	<신설>	• 국가예방접종비용 연간 지급내역 * 전체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사업, 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사업, 기타예방접종사업, 노인인플루엔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출력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증빙서류용 p88						
안내서	• 예방접종별 안내문(VIS) <신설> <신설>	<삭제> • 국가예방접종 장애요인별 지침서(의료인용) • 국가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전략지침서(의료인용)	*예방접종 안내문(VIS)는 전산시스템 및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p156~157						

2.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사업 대상	만 12세 여성 청소년 (2004.1.1.~2005.12.31.) <신설>	- 만 12세 여성 청소년 (2005.1.1.~2006.12.31.) * 2003년생은 '16.12.31, 2004년생은 '17.12.31, 2005년생은 '18.12.31.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전까지 2차 접종 비용지원 가능 (단, 사업시행일('16.6.20.) 이전 1차 접종 완료자는 '03년생 '18.6.30, '04년생, 05년생 '18.12.31, '06년생 '19.12.31.까지 지원)	p41 * 2차접종 지원 명확히 함
계약 기간	위탁계약 체결기간: 3년	- 위탁계약 체결기간: 5년 * 고시 시행일(2017.10.19.) 이후 계약기관부터 적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사항(17.10.19)
점검방법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자율점검표, 방문점검표로 대체 <신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자율점검표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자율, 방문 점검표 모두 작성	* 건강상담 관련 내용 추가
보호자 마동반 청소년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신설>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한 접종 동의서 및 예진표를 구득하고,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에 대해 유선 상으로 충분히 설명한 후 접종 시행	p42
이상반응	<신설>	백신 안전성 관련 보호자 커뮤니케이션	
건강 상담비 청구	의료기관이 건강상담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 건강상담비 중 본인부담금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제한('17.10.1.~) * 요양급여 청구프로그램에 건강상담비 (초진진찰료) 청구는 변동 없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완료된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스템에 일괄 적용 후 비용지급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사업참여 방식	• 서면 제출		• 전자 제출(' 17.3.5.~, 매뉴얼 별도 안내 예정) * 위탁계약 시 B형간염 예방접종 시행은 필수임 * 위탁계약서와 사업 참여 확인증 모두 승인 시 참여 가능			p61		
계약 기간	<신설>		• 위탁계약 체결기간: 5년 * 기존 참여기관 중 3년이 경과한 경우 2018년에 참여 갱신, 이후 5년마다 갱신					
점검표 제출방식	• 자율점검표, 방문점검표 서면제출		• 자율점검표, 방문점검표 전자제출 (' 17.3.5.~, 매뉴얼 별도 안내 예정)			* 점검표 변경		
지원 비용	구 분	2017년		구 분	2018년	증감	* '18.1.1.부터 적용 * 예방접종비용은 2018년 보건소 백신 조달 계약 이후 변경 예정으로 변경 시 추후 별도 공지 p67	
	계	155,480원		계	162,420원	+6,940		
	HBIG & 1차 접종	54,700원	32,240원	HBIG & 1차 접종	57,100원	32,750원		+2,400
			22,540원			24,350원		
	2차 접종	22,540원		2차 접종	24,350원			+1,810
	3차 접종	22,540원		3차 접종	24,350원			+1,810
항원항체 검사	55,700원		항원항체 검사	56,620원		+920		
검사 문자수신 동의	<신설>		• 신규 대상자 신청 시 문자수신 동의여부 체크 추가 * '18년 개정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로 구축			* 문자수신 동의자에 한해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및 추가접종 사전알림 문자 서비스 제공 p68		
검사 결과 등록	• 검사결과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입력하고 검사결과지는 대상자 (피접종자)의 주민 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Fax 제출		• 검사결과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입력하고 검사 결과지는 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 의료기관에서 결과지 시스템 업로드 불가시 보건소에서 받아 B형간염 주산기감염 민원처리 메뉴를 통해 업로드		
접종/검사 등록 및 비용청구	• 접종/ 검사 순서 미준수 시 등록 불가		• 접종/검사 미준수 시 등록은 가능하되 비용상환 신청 불가					
서식	<개정>		• 사업참여 확인증 변경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변경 • 자율점검표, 방문점검표 변경			* 계약방식 변경으로 개정 * 문자수신 동의여부 추가 등		

국가예방접종 용어

- NIP(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국가예방접종
- IR(Immunization Registry): 예방접종 전산등록
- VIS(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 예방접종안내문
- HBIG(Hepatitis B Immunoglobulin):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대상 감염병	두문자어	백신명
결핵	BCG(피내용)	Intradermal Bacille Calmette-Guérin vaccine
B형간염	HepB	Hepatitis B vaccine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Diphtheria and tetanus toxoids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Td	Tetanus and diphtheria toxoids adsorbed
	Tdap	Tetanus toxoid, reduced diphtheria toxoid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DTaP, IPV combination vaccine
폴리오	IPV	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i>Haemophilus influenzae</i> type b Vaccine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DTaP, IPV, <i>Haemophilus Influenzae</i> type b combination vaccine
폐렴구균	PCV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PSV	Pneumococcal polysaccharide vaccine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Measles, mumps, and rubella vaccine
수두	VAR	Varicella vaccine
A형간염	HepA	Hepatitis A vaccine
일본뇌염	JE(불활성화백신)	Inactivated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JE(약독화생백신)	Live-attenuated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Human papillomavirus vaccine
인플루엔자	IIV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

목 차

I.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1. 사업개요	3
1) 사업 개요	3
2) 사업 목표 및 전략	4
3) 사업 내용	5
4) 예방접종업무 위탁 관련 법적 근거	6
5) 기관별 역할	11
2. 사업관리체계	13
1) 사업 추진 체계	13
2) 위탁계약 추진 절차	13
3) 비용상환 체계	14
3. 의료기관의 역할	16
1) 예방접종 교육 이수	16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17
3) 예방접종 시행	19
4)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누락접종(Recall/Remind) 안내 서비스 · 26	
5) 비용상환 신청 및 결과 확인	27
6) 자율점검 실시 및 방문점검 협조	32
7)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32
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33
9) 귀국 자녀의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지참 안내	33
II.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35
1. 사업 개요	37
2. 법적근거	37
3. 사업 추진실적	38
4. 사업 내용	38
5. 사업참여방법	49
6. 백신공급	51
7.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기록 등록	53

III.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55
1. 사업 개요	57
2. 법적근거	58
3. 사업 추진실적	58
4. 사업 목표	59
5. 사업 내용	59
6. 예방처치 일정 및 비용지원범위	63
7. 접종/검사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방법	67

[별첨자료]

I. 주요서식	71
<별첨 I-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73
<별첨 I-2>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75
<별첨 I-3> 예방접종 예진표	76
<별첨 I-4>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교육수료증	77
<별첨 I-5>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78
<별첨 I-6>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	79
<별첨 I-7>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80
<별첨 I-8>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80
<별첨 I-9>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81
<별첨 I-10>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해지신청서 ...	82
<별첨 I-11>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83
<별첨 I-12>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85
<별첨 I-1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86
<별첨 I-14> 백신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의료기관)	88
<별첨 I-15> 국가예방접종비용 연간 지급내역	88
<별첨 I-16>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9

II.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91
[1] 예방접종 전산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방법	93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98
[3]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09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11
[5]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사용방법	112

Ⅲ.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115
[부록 I] 관련 법령	121
[부록 II] 백신 보관과 관리	135
1. 백신의 보관과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	137
2. 백신 보관 시 필요한 기구	138
3. 백신의 주문과 인수, 재고 관리 시 주의사항	140
4. 백신 보관시 점검 사항	142
5. 백신 보관 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144
[부록 III]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	147
1. 어린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2018)	149
2. 백신 접종법	150
3. 각 백신간의 최소 접종간격	152
4.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153
5.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154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기준	155
7. 국가예방접종 장애요인별 지침서	156
8. 국가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침서	157
9.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별 허가내용	158
10.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건강상담 대상자용 안내문	159
1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감염자관리 안내문	160
12. 국내 유통 백신 현황(2017. 10. 기준)	161
13. 2016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164
[부록 IV] 민원상담 사례집	165
1. 국가예방접종사업	167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189
3.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195
4. 이상반응 관리	197



I.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3
1) 사업 개요	3
2) 사업 목표 및 전략	4
3) 사업 내용	5
4) 예방접종업무 위탁 관련 법적 근거	6
5) 기관별 역할	11
2. 사업관리체계	13
1) 사업 추진 체계	13
2) 위탁계약 추진 절차	13
3) 비용상환 체계	14
3. 의료기관의 역할	16
1) 예방접종 교육 이수	16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17
3) 예방접종 시행	19
4)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누락접종(Recall/Remind) 안내 서비스	26
5) 비용상환 신청 및 결과 확인	27
6) 자율점검 실시 및 방문점검 협조	32
7)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32
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33
9) 귀국 자녀의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지참 안내	33

1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과거 예방접종비용이 보건소 이용자에게 한정되어 지원되어 민간의료기관의 접종비용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 ※ 예방접종 장애요인은 높은 예방접종비용(83%), 의료기관과의 거리(28%), 예방접종횟수, 시기에 대한 지식부족(26%)임(예방접종인식조사, '08.7월)
- 이에,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까지 확대 지원함

○ 추진경과

- 시범사업 실시('05년~'06년)
 - '05년 민간의료기관 필수접종비용 지원 시범사업 실시(7월~12월, 대구, 군포)
 - '06년 보건소 예방접종 확대 시범사업 실시(1월~12월, 강릉, 연기, 양산)
- 근거 법령 제·개정('06년~'07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06.12.29.) 개정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07.10.)
-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사업 실시
 - (지원비용) 백신비('09.3.) → 백신비 및 시행비용 일부('12년) → 예방접종비용 전액('14년)
 - ※ '12년 본인부담금 5,000원 → '14년 본인부담금 폐지(전액 무료접종)
 - (지원항목) 8종('09.3.1.) → 9종('11.10.6. DTaP-IPV 추가) → 10종('12.1.1. Tdap 추가) → 11종('13.3.1. Hib 추가) → 13종('14.2.14. 일본뇌염 생백신 5.1. 폐렴구균 추가) → 14종('15.5.30. A형간염 추가) → 16종('16.6.20. HPV, 10.4.인플루엔자 추가) → 17종('17.6.19. DTaP-IPV/Hib 추가)

2) 사업 목표 및 전략

○ 전략 1. 공공기능 강화

● 예방접종 실시기준 관리 강화

-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기준 관리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본부 고시 2017-6호)

● 예방접종업무의 민간의료기관 확대 실시

○ 전략 2.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정기예방접종 대상자 부모에게 자녀의 다음접종 및 누락접종 안내 서비스 제공

- ※ 문자서비스는 정기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 수신 동의한 경우 제공함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등을 통해 올바른 전문정보 제공

● 예방접종내역 조회 및 예방접종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 제공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무료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 예정(2018년)

○ 전략 3. 예방접종 인프라 강화

● 예방접종 관련 범부처 통합 예방접종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행정안전부(주민정보): 지역사회 예방접종 대상자 정보 공유
- 교육부(학생정보): 초·중학교 입학생의 인적정보 및 접종정보 공유
- 보건복지부(보육시설 아동정보 등): 어린이집 입소자의 인적정보 및 접종정보 공유, 복지시설·기초생활수급자·장애아동의 정보 공유
- 건강보험공단(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의 접종정보 공유
-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대상자의 과거접종정보 공유



3)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5.1.1. 이후 출생자)

- '17년부터 사업대상자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적용함
 - ※ 보호자가 실제 생년월일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로 생년월일을 확인 후 보건소에서 변경
-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은 연령, 신규도입된 백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예방접종비용 지원 대상 연령이 제한됨
 - BCG는 생후 59개월까지 지원(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Hib, 폐렴구균 : 생후 59개월 이하(단,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서도 지원)
 - A형간염 : 2012.1.1. 이후 출생자
 - HPV : '05~'06년 출생한 여자(세부내용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조)
 - 인플루엔자 : 생후 6개월~ 만 12세 이하 어린이
 - ※ 백신 공급체계 등 기타 세부사항은 '2018-2019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는 해당 사업에서 예방접종비용 등을 지원하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형간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의 지원내용은 p59 참조

●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의 접종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 17종

BCG(파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수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Flu(인플루엔자),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4) 예방접종업무 위탁 관련 법적 근거

○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실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16호, 2016.12.2.]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3호)

제1조(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1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때, 다음 각 호 중 제4호 외의 감염병에 대



하어는 위험군 등 일부 권장대상에 대해서만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3. A형간염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를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에 대한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①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

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장과 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한다는 사실
2. 예방접종 내역에 대한 확인 방법

○ 정기예방접종 다음접종 사전안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정기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 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예방접종기록 보고 및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예방접종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보건소장등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성명
 -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2. 예방접종의 내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예방접종 명칭
 - 나. 예방접종 차수
 - 다. 예방접종 연월일
 - 라. 예방접종에 사용된 백신의 이름
 - 마. 예진 의사 및 접종 의사의 성명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66조(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 6호)

-  예방접종 실시 장소, 접종 의료인 숙지내용, 유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
-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등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등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비용 심의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기관별 역할

○ 시·도의 역할

- 관할 시도의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도 의사회 등 관련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
- 시·군·구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분석 및 미접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 마련
- 예방접종업무 담당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예방접종 전문교육과정 이수

○ 시·군·구의 역할

- 관할 시군구의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 의사회 및 의료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
- 관할 지역 육아, 보육시설 및 학교 대상 예방접종사업 관련정보 안내
- 예방접종업무 담당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예방접종 전문교육과정 이수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관리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 위탁의료기관 교육관리
-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점검실시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관리
- 보건소 방문자에 대해 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기록 전상등록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
- 예방접종대상자에게 정기예방접종 사전 알림 서비스 실시
-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분석, 미접종자 관리 및 접종안내
- 예방접종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의료기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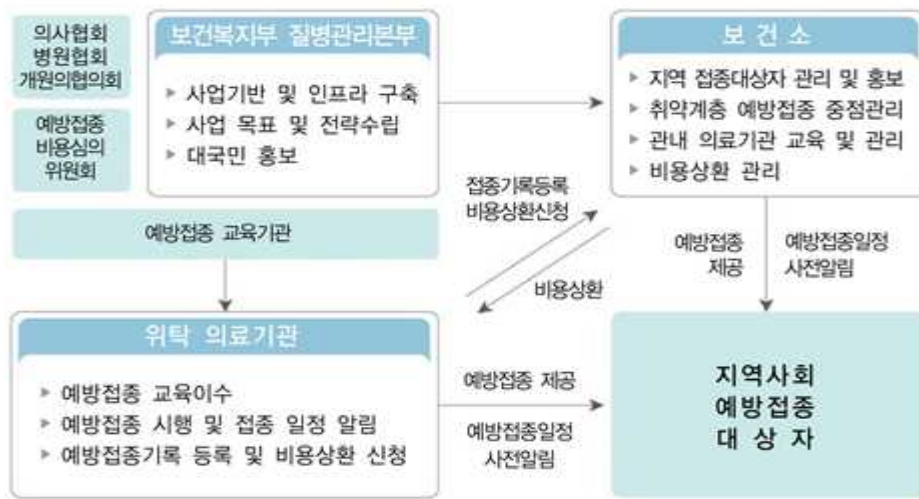
- 관할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 위탁계약 전 의료기관내 모든 예방접종시행 예진의사의 예방접종교육 이수
- ④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접종 환경 구비
 - 예방접종 백신관리(백신냉장고 온도점검, 청결, 유효기관 등) 철저
- ⑤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기록 보고 및 비용상환 신청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
 - 예방접종 내역 등록, 비용상환 신청 및 다음접종 안내
- ⑥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⑦ 자율점검 실시(상·하반기 각 1회 연 2회) 및 보건소 방문점검 협조
 - 백신관리상태, 예방접종실시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
- ⑧ 예방접종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예방접종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
- ⑨ 관할 시도/보건소와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업무협조체계 유지

2 사업관리체계

1) 사업 추진 체계



2) 위탁계약 추진 절차

1. 예방접종 교육 이수(의료기관)

- 사업 참여 전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을 통해 기본교육과정 이수
- ※ 위탁 의료기관 예진의사는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 계약체결(보건소, 의료기관) 및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 보건소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날인하여 위탁계약 체결
- 계약체결 후 보건소에서 교부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수령 및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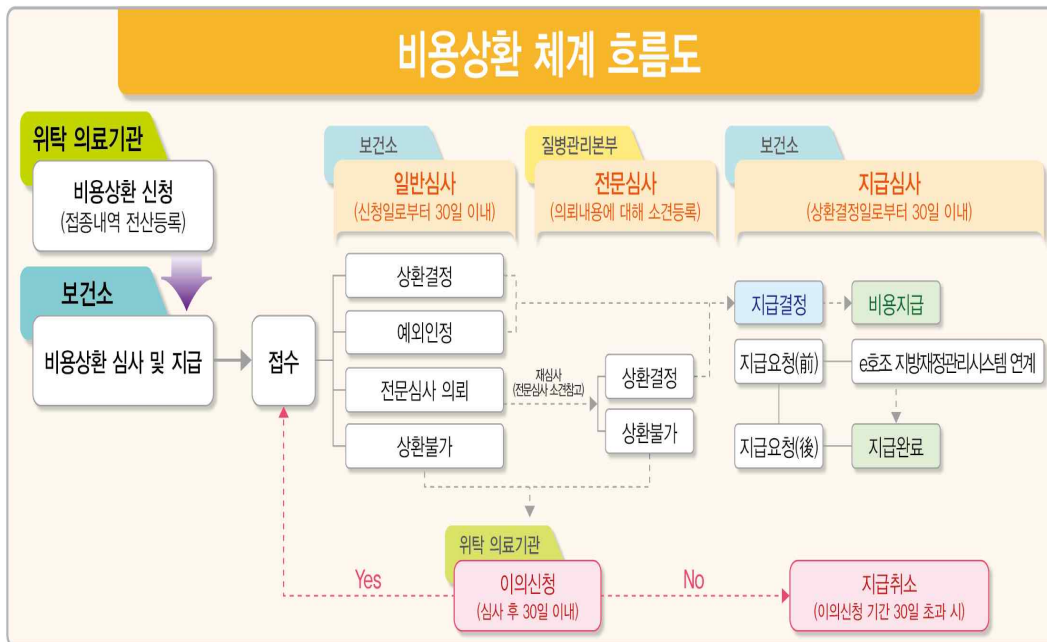
3. 위탁 의료기관 공고(보건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 위탁 의료기관 공고

3) 비용상환 체계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원체계

- 지자체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의료기관이 청구한 비용상환에 대해 피접종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비용 지급 심사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심사) 후 비용지급



● (의료기관) 피접종자 본인 확인 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접종내역은 가급적 당일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 등록된 접종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비용상환신청이 안되므로 정확하게 등록함
- ※ 출생신고 전 1개월 이하의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이후 접종기록 통합 및 신속한 비용상환업무를 위해 반드시 보호자의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함
- ※ 보호자는 모(母)의 인적정보를 등록함을 원칙으로 함. 기타 보호자를 등록할 경우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참조하여 보호자 본인확인 필요
- ※ 1개월 이상 출생신고 지연시 예방접종 임시관리번호(보건소에서 발급)로 접종기록 등록
- ※ 생후 1개월 이내 접종(B형간염 2차 또는 BCG)시 B형간염 1차 접종기록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1차접종 완료여부 확인(보호자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인적 통합



● (보건소) 신청내역을 접수 및 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비용지급

- 예방접종 실시기준, 비용상환기준을 참조하여 상환신청내역의 지급 심사
 - ※ 보건소 심사결과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정기적으로 심사결과와 적정성 점검 실시
- 보건소에서 지급심사가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본부로 전문심사 의뢰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접수, 심사 및 비용지급 실시
 - ※ 접종기록 및 상환심사내역은 신청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로 전송됨(약 1일 소요)
- 출생신고 전 신생아 임시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로 등록된 접종내역은 주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환 관리 후 지급처리
 - ※ 신생아 임시번호 접종자가 생후 3개월 이상 출생신고 지연시 예방접종 임시관리번호를 발급하여 비용지급심사 진행
- 의료기관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심사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이 가능하며, 일반심사(당초 심사)를 시행한 보건소에서 이의심사 시행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는 예방접종비용지급 별도 관리

● 비용상환 업무처리 기한

구분	내용	처리 기한	처리 기관	법적근거
비용 상환	신청	비용상환 신청기한 폐지(2015년) 단, 중복접종 등을 방지하기위해 가급적 접종 당일에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중복접종 발생시 먼저 전산등록한 기관에 비용지급 ※ 접종 전 시스템 및 예방접종수첩 등을 통해 과거 접종력 반드시 확인	의료 기관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신생아 제외) ※ 위탁 의료기관에서 보완 자료 제출에 소요된 기간(10일)은 제외됨	보건소	제7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심사) 제8조(심사관련 보완자료 요청) 제9조(예방접종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비용 지급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제외	보건소	제10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이의 신청	신청	비용상환 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료 기관	제11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심사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	

※ 법적근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4호)

3 의료기관의 역할

1) 예방접종 교육 이수

○ 교육과정

- (교육과정) 위탁 계약 체결 전 ‘기본교육과정’ 이수, 재계약 시에는 ‘보수교육과정’ 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대상)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재계약하고자 하는 기존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
 - ※ 의료기관의 모든 예방접종 시행의사는 반드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업무 관계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도 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교육내용)
 - (기본교육)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백신의 취급과 보관,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
 - (보수교육)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변경사항,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대처법, 백신의 보관과 취급,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

○ 교육방법

- (교육신청)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선택 후 온라인(e-learning) 교육 신청
 - 기본교육 과정명: [기본교육]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 의료기관 교육(2018)
 -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위탁의료기관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업무를 추가로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의 의료인은 ‘기본교육 II’과정을 신청
 - 보수교육 과정명: [보수교육]어린이 NIP 위탁 의료기관 교육(2018)
 - ※ 각 과정은 2018.3.2.~2019.2.28.까지 운영되므로 학습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이수



④ (수료 인 및 수료증 출력)

- 교육시스템의 '수료증출력 → 수강종료과정'에서 수료 확인 및 수료증 출력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 위탁 계약

④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 체결

-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 중 국가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함

④ 위탁계약 시 필요한 서류

- 예방접종 기본교육 수료증, 통장사본,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 위탁계약 체결 전 의료기관에 소속된 예방접종 모든 시행 의사는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 기본교육과정 이수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수입 및 지출을 구분하여야함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용 통장 사본 필요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여 서류는 p40 참조

④ 참여 백신 구비

- 의료기관에서 실제 접종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 모든 백신에 대해 참여함
 - ※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제 시행하는 백신 중 일부 백신만 선택적으로 참여 불가
-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에 의료기관에서 시행중인 백신 표기
 - ※ 참여백신만 비용상환 되며, 의료기관별 참여백신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안내됨
- 의료기관은 제출한 참여백신은 반드시 구비해야 함. 참여백신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계약된 참여백신 구비 여부, 백신 보관 관리, 유효기간 경과백신 처리 등 관리 철저

④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게시(별첨 1-2 서식 참조)

- 관할 보건소에서 교부한 지정서는 의료기관내에 잘 보이도록 게시

【위탁 의료기관 준수사항(계약 조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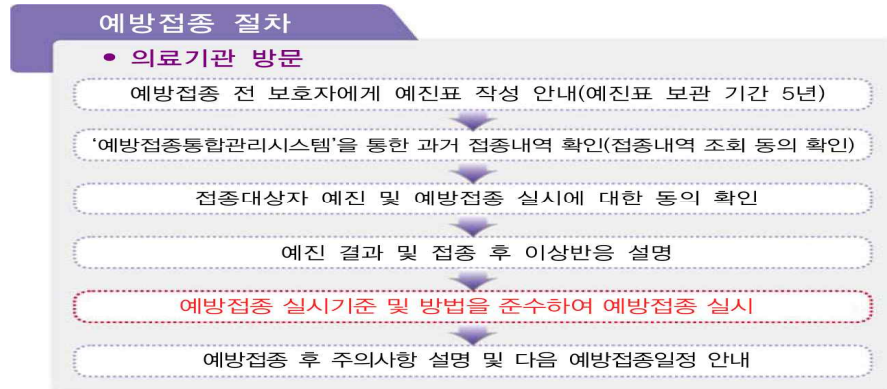
○ 재계약(계약 갱신)

- ④ 의료기관 정보(요양기관번호, 대표자, 관할 주소지 변경 등)가 변경된 경우 재계약 체결
- ④ 위탁 의료기관 이전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재계약 체결
- ④ 위탁계약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재계약 체결 준비
※ 2017.10.19. 이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위탁계약기간(3년) 만료시 재계약

○ 계약 해지

- ④ 위탁 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별첨 I-10)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
※ 계약해지 전 비용상환 신청한 접종내역은 심사 후 지급예정
- ④ 별도 계약 해지 절차 없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로 위탁 계약 해지 같음
- 의료기관 폐업신고시 자동 폐업처리되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소멸
※ 반드시 폐업 전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완료 함
- ④ 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위탁 의료기관으로 사전통지 없이 해약 가능

3) 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보관

- 예방접종 예진표(별첨 I-3.)를 비치하고, 예방접종 전 보호자에게 직접 작성토록 함
 - ※ 예방접종 예진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5년)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시 접종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 예방접종 대상자 본인 확인 및 과거 접종력 확인

- 예방접종 대상자의 본인 확인 및 과거 접종력 확인
 -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정확한 접종을 위해 접종 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후 중복접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과거 접종내역을 반드시 확인
 - ※ 생후 1개월 이내 접종(B형간염 1차, BCG)이 전산등록되지 않는 경우, 출생신고 전 신생아번호로 접종가능하므로 신생아번호(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종내역을 확인함
 - ※ 전산등록되지 않았으나, 보호자를 통해 접종을 확인한 경우 접종기관(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도록 안내
-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본인 확인
 - 신생아의 인적정보(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 인적) 및 **보호자(모(母) 원칙)의**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등록

- 모(母)의 인적 등록을 원칙으로 하나, 모(母)의 정보를 모를 경우에 한하여, 기타 보호자의 정확한 인적정보 확인 후 등록함
- ※ 예방접종은 권장하는 모든 접종횟수를 완료할 경우 충분한 면역을 획득하므로, 출생신고 전 신생아는 출생신고 후 접종기록과 통합 관리하기 위해 보호자의 정확한 인적정보가 중요함
- ※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보건소에서 발급)'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외국인 예방접종 대상자의 본인 확인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
- 외국인 등록 면제자 등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관리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여부 확인
-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체류자의 경우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 가능하므로 보건소 방문 안내
- ※ 관리번호 발급은 접종 대상자 보건소 방문이 원칙(유선발급 불가)

예진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설명

예진 시 예방접종 실시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에 대한 보호자 동의 확인

<예방접종 예진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동의 ☒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문자 수신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예진결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후 서명

<예방접종 예진표>

의사 예진 결과(의사 기록란)	확인 ☒
체온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
문진결과 :	
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6호) 및 사업지침 준수 후 접종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유의사항]

● 최소 접종 연령 및 접종간격 준수

- 최소 접종 연령 및 접종간격을 준수하여 접종함(p152 참조)
- 5일 이상 이원접종은 무효이며, 해당 접종이후 다음접종과의 접종간격 확인 후 재접종

● 생백신간 접종간격 준수

- 수두, MMR, 일본뇌염 생백신간 접종은 동시접종 또는 최소 4주 이상의 간격 준수

● 권장하지 않는 교차접종 지양

1. 우발적인 교차접종의 경우 접종력은 인정되는 접종(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 DTaP, DTaP-IPV 기초접종의 교차접종(기초 3회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
- PCV10 및 PCV13 백신의 교차접종
- HPV2 및 HPV4 백신의 교차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간 교차접종

2. 교차접종 시 접종력이 인정되지 않는 접종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간 교차접종, 생백신간 교차접종
 - 1차 접종은 베로세포유래 불활성화 백신 또는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함을 권장함

● 권장하는 접종 연령 준수

1. DTaP 백신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7세 이상은 Td 백신으로 접종

- DTaP 기초접종 완료 후 만 7세 이상은 Td로 접종(만 11세 이후 Tdap 가능)

● 불필요한 추가접종 지양(지연접종시 추가접종 생략)

- DTaP: 4차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 아동의 경우 5차 접종 생략
- IPV: 3차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 아동의 경우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 3차접종이 지연되어 만 4~9세 이후 아동은 4차 접종 생략 후 만 12세에 접종
 - 3차 또는 4차 접종이 지연된 만 10세 이후 아동은 추가접종 불필요
- Hib: 접종시작 연령에 따라 필요한 접종횟수가 다르므로 주의
 - Hib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백신 종류	첫 번째 접종 시 연령(개월)	기초 접종	추가 접종
PRP-T 또는 HbOC	생후 2~6	3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	2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12~14	1회	2개월 후 1회
	생후 15~59	1회	-

• Hib 지연접종 시 따라잡기 접종일정

최소접종 연령	1~2차 최소 접종간격	2~3차 최소 접종간격	3~4차 최소접종간격
생후 6주	4주: 만 12개월 이전에 1차 접종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만 12~14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만 15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4주: 현재 연령이 만 12개월 미만이고 1차 접종을 7개월 미만에 받은 경우 8주이며 12~59개월에 접종(마지막 접종): 현재 연령이 만 12개월 미만이고 1차 접종을 7~11개월에 받은 경우, 또는 현재 연령이 만 12~59개월이며 1차 접종을 12개월 미만에 받고 두 번째 접종을 15개월 미만에 받은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이전 접종을 만 15개월 이상에서 한 경우	8주(마지막접종) :만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만 12개월~만 5세 미만 소아만 필요

– PCV: 접종시작 연령에 따라 필요한 접종횟수가 다르므로 주의

• PCV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백신 종류	첫 접종 연령(개월)	기초 접종	추가 접종
PCV10	생후 2~6	3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	2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12~59	2회	—
PCV13	생후 2~6	3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	2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12~23	2회	—
	생후 24~59(건강한 소아)	1회	—
	생후 24~71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	2회	—

• PCV 지연접종 시 따라잡기 접종일정

최소접종 연령	1~2차 최소 접종간격	2~3차 최소 접종간격	3~4차 최소접종간격
생후 6주	4주: 만 12개월 이전에 1차 접종, 현재 만 24개월 미만인 경우 8주(마지막 접종): 만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 현재 만 24~59개월인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 우: 건강한 소아로 만 24개월 이 후에 1차접종 한 경우(PCV10은 8 주 후 접종 후 종료)	4주: 현재 만 12개월 미만이며 이전 접종을 7개월 미만에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건강한 소아로 이전 접종을 7~11개월에 한 경우(최소 12개월 이후 접종), 또는 현재 만 12개월 이상이며 1회 이상 12개월 이전에 접종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건강한 소아로 이전 접종을 만 24개월 이후한 경우	8주(마지막접종) 만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만 12개월~만 59개월 소아 또는접종연령에 관계없이 3회 접종을 받은 고위험군



- IPV 지연접종 시 예방접종 일정

연령	1~2차 접종간격	2~3차 접종간격	3~4차 접종간격	비고
4개월 ~18세	4주	4주*	6개월*	- 3차접종을 만 4세 이후 실시한 경우 더이상 접종 불필요. 단, 이전 접종과 6개월 이상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4차 접종 필요

* 마지막접종은 이전 접종과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4세 이후에 접종, 4세 이후에 3차 접종이 이전
접종과 최소 6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접종되었다면 4차 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예방접종 일정

백신	이식 후 첫 접종시기	기초접종		추가접종
		횟수	최소접종간격	
불활성화 백신				
B형간염 ¹⁾	6~12개월	3	(0, 1, 6개월)	-
DTaP/Tdap/Td ²⁾	6개월	3	4주	-
폴리오	6~12개월	3	4주	-
페렴구균 ³⁾	(3)~6개월	3	4주	이식 후 12개월
Hib	6~12개월	3	4주	-
인플루엔자 ⁴⁾	(4)~6개월	1	-	매년
A형간염	6~12개월	2	6개월	-
일본뇌염 ⁵⁾	6~12개월	2	4주	두 번째 접종 후 6개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⁶⁾	6~12개월	3	(0, 1, 6개월-서바릭스; 0, 2, 6개월-가다실)	-
약독화 생백신				
MMR ⁷⁾	24개월	2	4주	-
수두 ⁸⁾	24개월	13세 미만: 1 13세 이상: 2	13세 미만: - 13세 이상: 4주	-

¹⁾B형간염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부터 0, 1, 6개월 일정으로 접종한다.

²⁾나이에 관계없이 DTaP로 3회 접종할 수 있으며 7세 이상에서는 Tdap 1회 접종 후 Td 2회 접종으로도 가능하다.

³⁾페렴구균에 대한 기초접종은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접종하며 필요한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3개월 후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추가접종은 폐렴구균 다당백신으로 접종하되 이식편대숙주병이 있으면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접종한다.

⁴⁾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을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식 4개월 후부터 접종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4주 간격으로 1회 더 접종하여야 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받는 생후 6개월~9세 미만의 소아는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받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으로 매년 접종하여야 한다.

⁵⁾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후 6~12개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되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기초접종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한 후 3차 접종한다. 이후의 추가접종은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의 일반적인 접종 일정을 따른다.

⁶⁾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6~12개월 이상 경과한 후의 11~26세의 여성에게 0, 1, 6개월(서바릭스) 또는 0, 2, 6개월(가다실)의 일정으로 접종한다.

⁷⁾MMR은 조혈모세포이식 24개월 이후에 환자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하여야 하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의 접종을 추천한다.

⁸⁾수두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24개월 이후에 환자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한다.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p24 참조

● 예방접종 내역 등록

- 예방접종 실시 내역에 대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별첨 II 참조)
 - 자체 전산시스템 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방접종기록 등록 (가급적 당일 접종기록 등록 권장)
- 예방접종 전산등록 기준 준수
 - 접종기록은 순차적으로 등록함. 지연접종으로 다음차수가 생략된 경우도 생략된 차수 칸을 비우지 않고 순차적으로 등록

[예방접종 전산등록 기준 및 유의사항]

● DTaP-IPV 혼합백신

- DTaP-IPV 혼합백신으로 기초접종(1~3차)한 경우 'DTaP-IPV 1~3차'에 등록
 - ※ DTaP-IPV 콤보백신과 DTaP, IPV 단독백신을 중복등록 하지 않도록 주의
 - ※ DTaP 4차시기는 단독백신으로 접종하고 4차에 등록
 - ※ DTaP 기초 접종은 동일백신으로 접종
- DTaP 4차, IPV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만 4~6세 아동이 DTaP-IPV 혼합백신으로 추가 접종한 경우 'DTaP-IPV 추가(4차)'에 등록
 - ※ DTaP-IPV 추가(4차) 접종 전 DTaP 4차 단독백신 접종력 확인
 - ※ DTaP-IPV 추가(4차) : DTaP 5차, IPV 4차 접종과 동일

● Td/Tdap 백신

- DTaP 5차까지 완료한 이후 만 11~12세 Td 백신을 접종한 경우 'Td 6차'에 등록
- DTaP 4차를 만 4세 이후 접종하여 5차가 생략되고 만 11~12세에 Tdap(또는 Td)백신을 접종한 경우 'Tdap 6차(또는 Td 6차)'에 등록
- DTaP 5차를 6세까지 접종하지 않아 만 7세에 Td 백신을 접종한 경우 'Td(그외) 1차'에 등록
 - ※ DTaP 백신은 만 7세 미만에서 접종
- DTaP 기초접종을 하지 않고 만 7세 이상에서 Td 백신으로 3회접종(1회는 Tdap 접종)한 경우 'Td(그외) 1, 2차'에 순차적으로 등록하고 Tdap 접종은 'Tdap 6차'에 등록
 - ※ Td 3회 기초접종(1회는 Tdap 접종)시 1~2차는 4주, 2~3차는 6개월의 접종간격을 준수함

● Hib, PCV 백신

- 접종시작 연령에 따라 필요한 접종횟수가 달라지더라도 1차부터 순차적으로 등록



● MMR 백신

- 홍역 유행으로 6~11개월 영아에게 접종한 경우 MMR 1차에 등록(의학적 소견 등록)
- 생후 12개월 이전 1차접종하고 표준일정에 따라 12~15개월에 접종한 경우 MMR 1차에 중복등록(의학적 소견에 사유 선택·입력)

● 일본뇌염 백신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를 만 4~9세에 실시(4차접종 생략)하고 만12세에 접종한 경우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에 등록
 - 약독화 생백신 1차접종 후,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으로 교차접종을 한 경우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차'에 등록
- ※ 이후 접종은 접종 일정에 따라 완료하고 등록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및 예방접종 안내문 제공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면서 자녀의 건강상태를 관찰한다.
- 귀가 후 3시간 이상(최소 3일) 자녀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고열과 경련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 아기는 반드시 바로 눕혀 재우며, 접종 당일과 다음 날에는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예방접종별 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 제공

- 예방접종 후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안내문을 제공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http://cdc.go.kr>)에서 내려받도록 안내한다.
- ※ 안내문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예방접종관리>각종서식(안내문으로 검색)'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누락접종(Recall/Remind) 안내 서비스

●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누락접종 안내 개요

- 내용 :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자녀의 다음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안내하고,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누락접종을 알리는 서비스
- 정기예방접종 종류 : 국가예방접종 시행 백신
- 사전알림 주체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전알림방법
 -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을 통한 사전알림 절차

- 보호자가 접종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시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고, 접종기관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서비스 제공
- 보호자가 **다음접종일을 사전 예약한 경우 해당일자에 접종기관명으로 문자 발송**
- 다음접종일자를 사전 예약하지 않은 경우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른 접종시기 시작일에 시군구청장 명의로 문자 발송
- 2016년 7월부터 **다국어로 다음접종 사전알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을 안내하고, 보호자가 다국어 문자 수신을 희망할 경우 휴대전화번호 및 희망언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 다국어 서비스 언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 사전알림 공고

-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사전알림 서비스를 매년 1월 첫째 주 월요일에 공고하고 있음. 다만,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공고일은 변동가능함

● 정기예방접종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지연접종 안내

- 2012년생부터 표준일정보다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문자수신 동의자에게 질병관리본부명(예방접종관리과 전화번호)으로 문자 발송

5) 비용상환 신청 및 결과 확인

○ 비용상환 대상자별 상환 신청

● 주민등록 발급자의 비용상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내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5.1.1. 이후 출생자)
 - ※ 보호자가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안내(의료기관에서는 피접종자의 생년월일 수정 불가)
 - BCG는 생후 59개월까지 지원(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검사 음성인 경우)
 - Hib, 폐렴구균 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지원(단,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서도 지원)
 - A형간염 백신은 2012.1.1. 이후 출생자부터 지원
 - B형간염의 경우 10세 이하는 0.5ml, 11세 이상은 1.0ml 백신비 지원
 - * 시행시기: 2018년 보건소 조달계약 이후
 - HPV 백신은 '05~'06년 출생한 여아
 - * 기타 세부내용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조(p41 참조)
- 인플루엔자는 2018년부터 생후 6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어린이 지원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비용상환

- 신생아의 인적정보(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 인적)와 함께 보호자(모(母)를 원칙으로 함)의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 모(母)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확인 된 기타 보호자의 인적정보를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 ※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주민등록번호 생성) 이후, 출생신고 전 접종정보를 통합한 이후 비용청구가 접수(지급)됨. 단, 3개월 이상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보건소에서 비용 지급 처리

- 신생아 비용상환 신청가능 접종(출생 후 1개월 이내): B형간염 1차, BCG

◆ B형간염 1차 접종에 대한 비용상환 신청시 주의사항

- ▶ B형간염 1차 접종은 대부분 신생아 임시번호(생년월일 및 성별)로 등록되므로, 반드시 피접종자의 7자리 임시번호로 비용상환 신청여부 확인 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비용청구함

● 외국인 예방접종 대상자의 비용상환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에 준하여 비용상환 신청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번호 발급 후 무료접종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시 전액 본인부담
- ※ 여권이 없는 아동은 보호자의 여권 등으로 본인확인 필요

○ 비용상환 신청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내역 등록시 비용상환 신청(별첨 II 참조)

- 예방접종기록 등록시 자동으로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이 '비용상환 신청 비용' 생성되므로 신청금액 확인 후 등록
- ※ BCG 피내용 백신의 경우 다인용 백신으로 실제 사용한 백신량에 대해 백신비를 지급하므로, 백신 개봉 후 첫 접종에 대해서만 백신비를 청구

○ 비용상환 신청 결과 조회

● 비용상환은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접수 및 지급심사함

- ※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등록

● 비용상환 심사결과는 '상환결정', '예외인정', '상환불가', '전문심사 의뢰', '인증오류' 로 분류

심사결과	세 부 내 용
상환결정	사업 대상 기준에 적합하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완료시 심사결과에 '지급완료'로 표시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지연접종은 비용상환 가능

심사결과	세 부 내 용
상환불가	- 중복접종, 이른접종(최소접종연령 또는 최소접종간격 미준수) - 불필요한 추가접종(자연접종으로 생략되는 접종을 시행한 경우) - 일본뇌염 교차접종 등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
예외인정	의학적 소견이 타당한 중복접종 및 이른접종 등
전문심사 의뢰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전문심사를 의뢰한 접종
인증오류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된 접종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불가 ※ 의료기관에서 직접 수정 전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및 심사불가

- (상환불가) '상환불가 사유'에 대해 조치가 가능하며,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의신청 가능
- (예외인정) 의학적 사유가 타당한 중복접종 또는 이른접종 등 비용상환이 가능한 접종으로 반드시 의학적 소견 등록 필요

※ 예외인정 접종의 전산등록 방법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의학적소견/기타 사유'의 '사유입력' 버튼 클릭 후 대분류/소분류 항목을 선택하여 등록함
 * 직접 작성한 기타 사유의 경우 의학적 소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심사하므로 주의 필요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통	· 이전 접종력 불인정으로 인한 재접종	· 이전 접종 최소접종연령 미준수 · 이전 접종 최소접종간격 미준수	-
	·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 이식일자	-
	· 면역저하 상태 동안 받은 접종의 재접종(항암치료 후 등)	· 상세사유작성	-
B형간염	· 2.0Kg 미만, 미숙아 재접종	· HBsAg 양성 산모 · 산모의 HBsAg 상태 알 수 없음	· 출생 체중
	· 고위험군 재접종	· HBsAg 양성 산모의 출생아 · B형간염 만성 감염자의 가족 · 혈액제제 수혈 환자 · 혈액 투석 환자	-
DTaP	· 권장접종연령을 미준수한 우발적 접종	예) 만 7세 이상에서 DTaP 접종시	-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Td 6차	· 권장접종간격(5년)을 미준수한 우발적 접종	예) 이전 DTaP 접종간격 5년 미준수	—
Tdap 6차	· DTaP 기초접종 1~3차 미완료자	예) 만 7~10세 Tdap 백신으로 기초접종시	—
	· 권장접종간격(5년)을 미준수한 우발적 접종	예) 직전 접종한 DTaP 접종과의 접종간격 5년 미준수 시	—
일본 뇌염	· 과거 교차접종 시행으로 접종을 완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된 교차접종	—	—
Hib	· 고위험군 접종	· 상세사유작성	—
폐렴 구균	· 고위험군 접종	· 상세사유작성	—
MMR	생후 6~11개월 가속접종	· 홍역 확진 환자 접촉자 · 홍역 유행지역 거주자 · 홍역 유행지역 여행	—

- (전문심사의뢰) 보건소에서 심사가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본부로 전문심사요청
- (인증오류)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 경우로,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를 확인할 수 없어 비용상환 신청내역 접수 및 심사 불가함
- ※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인증오류자의 경우 정확한 인적정보로 수정시 접수 가능

비용지급 결과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지급결과’ 메뉴에서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가 지급한 비용 확인 가능(별첨 I-11. 참조)
 - 지급된 비용에 대해 기간별, 접종내역별, 보건소별로 검색가능

● 예방접종비용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대한민국 전자관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간염	HepB		2,27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치메로살 포함	4,510
		치메로살 미포함	6,300
	Td		12,680
	Tdap		19,640
폴리오	IPV		8,5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2,8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		30,88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페렴구균	PCV(단백결합) 13		61,200
	PCV(단백결합) 10		52,690
	PPSV(다당질)		20,0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160
수두	Var		12,770
일본뇌염	JE (불활성화 백신)	쥐뇌조직유래	4,840
		베로세포유래0.4ml	11,450
		베로세포유래0.7ml	17,660
	JE(생백신)		11,500
A형간염	HepA		14,43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56,270
	HPV 4		62,970
인플루엔자	Flu 3	0.25ml	8,590
		0.5ml(어린이)	9,050

* 2018.1.1.기준으로, 2018년 보건소 백신의 조달 계약이후 변경 예정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6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27,90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7,200원

※ 백신비 등 변경사항은 인터넷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전자관보 '공고'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공시'에서 확인 가능

6) 자율점검 실시 및 방문점검 협조

- (점검주기) 상·하반기에 걸쳐 각 1회씩 연 2회 실시
- (점검방법)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방접종 실시기준 준수여부, 백신관리사항 등에 대해 점검한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행정업무/자율점검의 '자율점검표 항목'에 해당내용 표시 후 제출함(p.117 자율점검 참조)
 - ※ 시스템에서 전자자율점검의 경우 ~
- (점검내용) * (별첨 I-11.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참조)
 - 일반사항: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게시, 계약 체결한 백신 사전 구비 등
 - 예방접종 실시: 예진표 작성, 과거접종력 확인, 백신의 종류와 투여방법 설명, 예방접종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설명, 정확한 접종부위·접종 용량·접종방법에 따른 접종, 접종 후 20~30분 정도 관찰, 예방접종기록의 전산등록, 비용상환 신청기한 준수 등
 - 백신관리: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백신구입시 생물학적 출하증명서 수령, 백신 전용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 백신 보관 온도 2~8℃ 유지, 일 2회 이상 온도점검, 유효기간 확인 등
- 관찰 시·군·구의 방문점검 협조(연 1회 이상)

7)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 예방접종의 기록은 피접종자의 누락접종과 중복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 전 과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간에 공유하고 있음
 - 접종기관 간 공유되는 개인정보를 예방접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위탁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위탁계약조건 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

- 접종 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부록 III-6 참조)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예방 및 발생 시 대응법 (별첨 III 참조)

- 접종 후 접종기관에 20~30분간 머물러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리 장비 구비 및 후속조치 체계 마련
- 신속대응을 위한 담당자별 역할 숙지(예진 의사, 간호사, 보조원 등)

● 이상반응 신고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원/보건소 신고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기준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범위: 진료비, 정액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부록I 참조)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9) 귀국 자녀의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지참 안내

● 해외 장기체류 예정자에게 귀국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하도록 안내

-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접종증명서 필요
- 초·중학교 입학시 또는 어린이집 입소시 관련법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아기수첩은 보호자가 아기의 접종내역을 잘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수첩으로 접종기관 직인이나 공식 사인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음
- ※ 다만, 국가에서 예방접종수첩을 발급한 경우와 백신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의 접종기록은 인정(다른 나라 언어로 표기된 경우 번역서비스는 관계기관 업무 협의 이후 제공 예정임)

<관련법>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 예방접종증명서의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방법 안내

- 외국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가까운 보건소에 제출, 전산등록 요청하도록 안내
-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와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함



Ⅱ.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1. 사업 개요	37
2. 법적근거	37
3. 사업 추진실적	38
4. 사업 내용	38
5. 사업참여방법	49
6. 백신공급	51
7.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기록 등록	53



1 사업 개요

○ 배경

-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인생의 전환기인 여성 청소년에게 상담과 진찰,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춘기 여학생의 약 59%는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 생리를 시작하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약 4.6%는 이전에 성경험이 있음(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질병관리본부)

○ 추진경과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실시('16.6.20.~)

2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3호)
 - *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정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6호)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5호)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41호)

3 사업 추진실적

● 참여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소, 건)

구분	참여의료기관 수	비용상환 신청건수	상담건수
2016년	9,513	216,627	208,106
2017년	9,306	384,092	369,396

* '17.12.3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기준으로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현황

(단위: 명, 건, %)

구분	대상자수	1차접종		2차접종	
		접종건수	접종률	접종건수	접종률
'03년생	237,397	139,056	58.6	113,330	47.7
'04년생	228,417	162,063	71.0	99,614	43.6
'05년생	210,419	127,101	60.4	30,459	14.5

* '17.12.31.현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등록자료 기준으로 변경가능한 잠정통계임

* 대상자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이며, 지원기간은 1차접종의 경우 '03년생 '16.6.20.~'16.12.31., '04년생 '16.6.20.~'17.12.31., '05년생 '17.1.1.~'18.12.31.이며, 2차접종은 지원시기 이내 1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1차접종 후 24개월 하루전까지 지원

4 사업 내용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서비스 제공 원칙

- 건강 상담과 예방접종 서비스는 동시에 제공한다.
- 상담 전 사춘기 성장발달 및 초경에 관한 안내 자료, 예방접종 안내문을 제공한다.
- 건강 상담 전에 반드시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력(접종일, 백신종류)을 확인한다.
- 예방접종 전에 반드시 예진을 시행한다.
- 예방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대기하도록 안내한다.
- 다음 건강 상담 및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한다.

○ 사업체계

- 지자체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의료기관은 접종 후 예방접종비용 청구, 피접종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청구내역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 및 건강상담비 중 본인부담금 지급(백신비는 조달계약업체로 지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탁의료기관이 청구한 건강상담비(초진진찰료)에 대해 심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의료기관에 건강상담비 중 보험자부담금 지급



○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보건복지부	- 관련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총괄
질병관리본부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관리, 예방접종 비용지원 관리 및 예방접종 교육·홍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 상담 진찰료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심사 및 지급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참여 의료기관 관리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안내 및 시스템 이용법 안내 • 위탁의료기관 신규계약 및 재계약 관리(5년마다 갱신) * 계약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사업참여 확인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공급 협약서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승인 후 도매상 협약서, 사업참여 확인증까지 승인되어야 계약 완료됨 ※ 2017.10.19. 이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위탁계약기간(3년) 만료시 재계약 • 위탁의료기관 관리(연 2회(상·하반기) 자율점검, 연 1회 이상 방문점검)

기관	역할
시도 및 시군구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자율점검표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자율점검표 모두 확인, 방문점검표 별도 작성 - 백신관리 ● 분기별 사용물량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공급량 확정, 조달계약업체 또는 도매상으로 백신비 지급 - 건강상담비(초진진찰료 중 본인부담금) 및 예방접종 비용상환 관리, 백신비 지급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차 예방접종 후 다음접종일 안내 * 정기예방접종대상 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안내 - 미접종자 관리
의료기관	- 위탁계약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제출 - 온라인 교육 이수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연 2회) 실시 및 방문점검 협조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자율점검표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자율점검표 모두 제출 - 백신 보관 및 관리 - 예방접종 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 예방접종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 여성청소년 또는 보호자에게 사업 안내자료 제공 - 건강상담 전 점검표 및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안내 -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력 확인 * 보호자 문진 또는 예방접종 수첩 상 과거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접종기관에 전산등록 요청하며, 접종한 백신 종류(접종일) 확인후 건강 상담 및 접종 실시함 - 작성된 점검표 확인 및 표준 상담 업무 흐름도에 따라 상담 실시 * 상담 완료 후 점검표는 의료기관에서 보관(5년 보관) - 상담 후 부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전문의에게 진료 안내 - 예방접종 예진표 확인 및 예진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설명 - 올바른 백신의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부위에 접종 * 접종 시 극도의 긴장이나 접종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접종 후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넘어질 수 있으므로, 접종은 등받이 있는 의자에서 하거나 누워서 하는 것을 권장 *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장비 구비 및 후속조치 체계 마련, 신속대응을 위한 담당자 역할 지정 및 숙지 -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비용상환 신청) 및 요양청구프로그램에 상담비 청구

기관	역할
의료기관	* 예방접종 기록은 가급적 접종 당일에 순차적으로 등록 * 접종 당일 전산등록하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접종 발생시 접종기록을 먼저 등록 한 의료기관에 비용이 지급됨 - 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20~30분간 머물며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후 귀가 안내 - 다음 건강 상담 및 접종일정 안내 * 휴대전화 문자 수신에 동의할 경우 시스템에 다음 예방접종일 등록(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와 예방접종 예진표에 기록된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단한 경우 지체없이 이상반응 신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웹 신고 또는 관할 보건소로 유선 신고 *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

○ 세부사업 개요

- 사업대상: 만 12세 여성 청소년(2005.1.1.~2006.12.31. 출생자)
 - * 2003년생은 '16.12.31, 2004년생은 '17.12.31, 2005년생은 '18.12.31.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전까지 2차 접종 비용지원 가능
(단, 사업시행일('16.6.20.) 이전 1차 접종 완료자는 '03년생 '18.6.30, '04년생, 05년생 '18.12.31, '06년생 '19.12.31.까지 지원)
- 사업내용: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 상담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제공
 - *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제공
- 지원내용: 건강상담비(초진진찰료)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 지원
 - * 백신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백신을 현물로 공급함에 따라 백신공급 협약기관에 지급
 -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보건소에서만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 가능

☞ 건강 상담 및 예방접종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없으며, 두 가지 모두 제공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참여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건강 상담 및 예방접종 시행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보건소에서 건강 상담 및 예방접종 시행
- 지원백신: 가다실, 서바릭스
 - * 가다실 9 제외

■ 건강 상담비

- 건강 상담 비용은 1회당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가-1-가. 초진 진찰료 수가 적용
 - * 초진 진찰료 수준(본인부담금 포함) : 의원 15,310원, 병원 15,350원, 종합병원 17,080원, 상급 종합병원 18,800원('18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평일 기준)
 - * 진찰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청구 시 상병분류기호 R688(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로 기재하고, 청구 명세서의 특정내역구분(MT002)에 F012를 기재하여 청구
 - * 같은날 동일 의사에게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에 따른 진찰·상담 이외 별도 질환에 대하여 진료받은 경우 진찰·상담에 대한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하며, 검사, 처치 등의 다른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분리청구(명세서 각각 작성)
 - * 상담절차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 진찰료 산정 시 본인부담금은 전액 무료로 지원
 - *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완료된 자료를 받아 시스템에 월 1회 일괄 적용 후 보건소에서 지급
 - *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지원되므로, 대상자로부터 동 상담 비용(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 금지

■ 예방접종 비용

- 백신비: 가다실 62,970원, 서바릭스 56,270원
- 시행비용: 접종 당 18,6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 * 2018년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는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참고) 예방접종 시 접종대상자가 부득이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와 동행하지 않은 경우

-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한 접종 동의서 및 예진표를 구득하고,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에 대해 유선 상으로 충분히 설명한 후 접종 시행
 - * 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등 관련 서식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보호자가 서식 직접 다운로드 가능
 - * (서식 다운로드)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 예방접종관리 → 관련자료 다운로드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동의서식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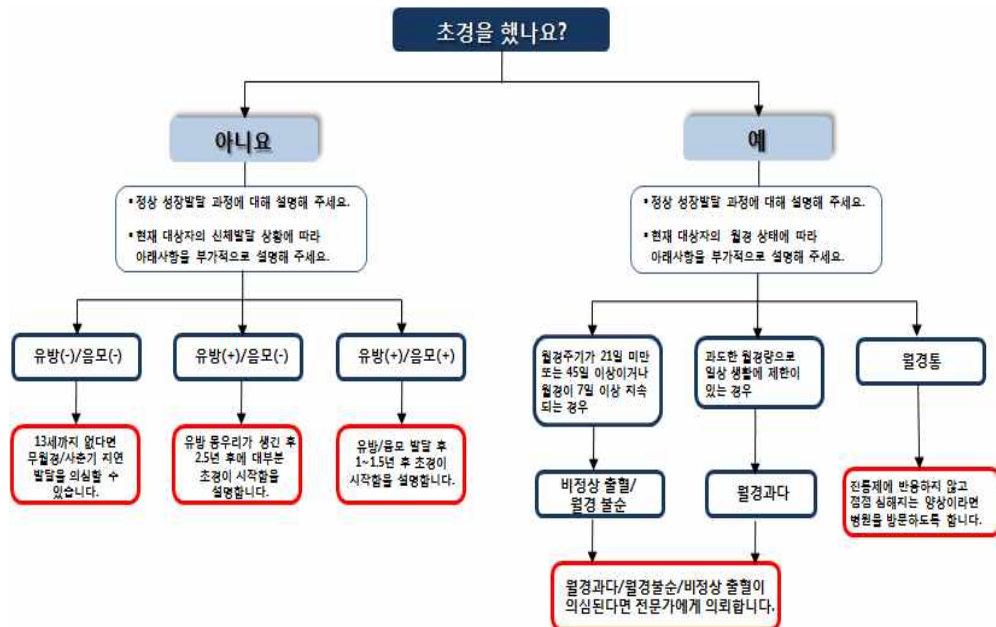


○ 상담 내용 및 과정

● 상담내용: 사춘기 성장발달 및 초경 관련 건강 상담

- * 건강 상담은 대상자가 작성한 점검표(별첨서식 I-6) 내용을 토대로 6개월 간격 2회 제공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예방접종관리→자료실→‘프로그램/메뉴얼’에 게재되어 있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의료인용 상담 교육자료’를 숙지하고 활용
-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진료 대기 시 사업 안내 자료(보호자용 리플릿, 건강상담 대상자용 안내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안내문)를 제공하고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상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함
 -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는 예진표와 함께 5년간 보관
- 상담은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진료실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며, 대상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의사 확인사항을 작성하고, 상담업무 Flowchart를 활용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성장발달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상담을 시행(달력형 상담도구 등을 활용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설명)
 - * 사춘기 성장발달 개요와 대상자의 성장발달 상황, 여성청소년에게 흔한 부인과적 질환(무월경, 월경통, 월경 이상)에 대한 설명과 질환의 유무 확인 등
 - * 상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나 전문가에게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이 경우 추가 검사나 진료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 아닌 별도의 의료행위로 비용지원 대상이 아님
-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 암 예방을 위한 백신의 필요성, 향후(만 20세) 자궁경부암 검진의 필요성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백신 안전성과 권장 접종 시기 등 보호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 상담 과정: 1차·2차 상담 시 동일한 건강 상담 업무 Flowchart에 따라 진행



< 여성 청소년 대상 건강 상담 과정(Flowchart) >

● 예방접종 실시기준

- (접종횟수) 최소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참고) 백신별 2회 접종 가능 연령: (가다실) 9~13세, (서바릭스) 9~14세

- 1차 접종 후 두 번째 접종이 15세 이후에 접종되더라도 총 2회 접종으로 완료
- 2회 접종 간 권고되는 최대 접종간격은 없지만, 접종 간 간격이 12~15개월보다 더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경험 시작 전에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제안됨(WHO, 2014)

- 2회 접종 시 권장 접종간격보다 일찍 접종될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 (가다실) 1차 접종 후 6개월 이내에 2차 접종 시 두 번째 접종과 최소 12주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3차 접종(1차와의 간격 6개월 유지)
- * (서바릭스) 1차 접종 후 5개월 이내에 2차 접종 시 두 번째 접종과 최소 12주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3차 접종(1차와의 간격 6개월 유지)

- 2회 접종이 허가된 이후 연령에서 1차 접종 시 총 3회 접종 실시

- * (가다실) 14세 이상에서 1차 접종 시 총 3회 접종(0, 2, 6개월 간격)
- * (서바릭스) 15세 이상에서 1차 접종 시 총 3회 접종(0, 1, 6개월 간격)

- 면역저하자의 경우 백신별 권장 간격에 따라 총 3회 접종 필요

● (접종용량 및 방법) 1회 0.5mL, 상완 삼각근 근육주사

● 동시접종 및 교차접종

- (동시접종) 다른 생백신 및 불활성화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

- * 동시접종 시 서로 다른 부위에 접종 권장

- (교차접종) 가다실과 서바릭스 제품 간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 * 단, 이전에 사용한 백신의 종류를 모르거나 국내에 해당 백신이 공급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참고) 9가 HPV 백신 유통에 따른 세부 안내사항(2017년 제2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 (교차접종) 2가, 4가 백신과 9가 백신의 교차접종은 안전성, 면역원성, 효능에 대한 연구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권장하지 않음
- (기존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경우) 기존 2가, 4가 백신을 완료한 대상자에게 9가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이므로 국가 권장여부는 추가 근거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함
- (동시접종) Tdap, 수막구균 등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함

● (금기 및 주의사항)

- 이전 백신 접종 후 또는 백신 성분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있었던 경우
- 급성 중증 열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접종 연기
- 예방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도록 안내 및 관찰

● 비용상환 기준

● 예방접종 비용 상환 기준

- (상환가능) 2005.1.1.~2006.12.31. 출생자에게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참고) 2차 접종 지연자에 대한 2차 접종 비용 지원 기간

- 사업 시행일* 이전 1차 접종 완료자: 2차 접종일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03년생 '18.6.30.까지, '04, '05년생 '18.12.31.까지, '06년생: '19.12.31.까지
- 사업 시행일* 이후 1차 접종 완료자: 1차 접종 후 24개월 하루전까지
(단, '03년생은 '16.12.31., '04년생은 '17.12.31.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자에 한함)
* 사업시행일: '16.6.20.

- (상환 불가) 중복접종 및 이른접종

- * '상환 불가' 접종의 백신비는 의료기관에서 부담(백신공급 도매상에게 직접 반납)
- * 건강 상담을 제공했더라도, 오접종의 경우 진찰료 및 예방접종 비용 지급 불가

☞ (참고) 중복접종 및 이른접종 사례

- (중복접종) 동일 차수 접종을 중복으로 시행한 경우
 - * 예방접종 기록 등록 지연 등으로 중복접종이 발생한 경우 접종기록을 먼저 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 지급
- (이른접종)
 - ① '18년 사업 대상 연령보다 이른 연령('07년 이후 출생자)에서 접종한 경우
 - ② 2차 접종이 최소 접종 간격보다 일찍 접종된 경우
 - * 2차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이며, 이른접종으로 재접종한 3차 접종은 비용상환

- (예외 인정) 면역저하자에게 3회(가다살 0, 2, 6개월 간격/서바릭스 0, 1, 6개월 간격) 접종하거나 조혈모세포 이식 등 타당한 의학적 사유로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 비용 상환 인정

☞ (참고) 예외 인정자에 대한 비용지원

- 면역저하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3회 접종 시 건강 상담은 1차, 3차 접종 시에만 시행
(0, 6개월 간격으로 2회 제공)하고 진찰료 청구 가능
- * 2차 접종 시 의학적 사유 선택/입력해야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가능
-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 상담은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예방접종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 재접종 시 해당 차수 기록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접종기록을 추가 등록하며, 의학적 사유 선택/입력해야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가능



● 예방접종 비용 및 이의신청

- (비용신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기록 등록 시 자동으로 신청
- (의학적 소견이 타당한 재접종자의 비용 신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기록 등록 시 화면 하단의 '의학적 소견/기타 사유' 에 해당 사유 입력
 - * 예)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을 시행한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선택 → '이식일자' 입력
- (이의신청) 비용상환 심사결과, 상환불가 판정된 내역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
 - * 이의신청 기간: 상환불가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 이의신청 방법: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법 참조

● 예방접종 비용 지급심사 및 지급(보건소)

- 접종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신청내역에 대한 적합성 심사
 - * 지자체장(보건소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 보완 요청 가능. 해당 기간 내 보완 자료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 통보 및 비용 지급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주의사항

●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및 예방법

- (국소반응) 접종부위 통증, 부어오름, 발적, 두드러기 등
 - * 접종부위 통증이 비교적 흔하게 보고(약 80%).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거나 일상 활동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이 약 6%에서 보고되었으나 대부분 수일 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
- (전신반응)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등
 - *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포함한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극히 드물고, 다른 영유아 백신과 비교하여 특별히 빈도가 높지 않음
-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도록 안내하고 피접종자의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
-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및 평소 대처법을 숙지

☞ 예방접종 후 일시적인 실신에 대한 주의 필요

- 청소년에서 예방접종 후 접종시 긴장이나 통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신하는 경우가 있으며,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필요
- 실신은 다른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 가능하며 주로 청소년 및 젊은 성인에서 단체 예방접종 시 발생
- 의료기관 주의사항
 - 접종은 등받이 있는 의자에서 하거나 누워서 하는 것을 권장
 - 예방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도록 안내 및 관찰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안전성 관련 보호자 커뮤니케이션

- 예진 시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에 대해 보호자와 피접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되, 대부분 일시적인 반응으로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도록 격려
- 예방접종 후 일시적 실신이 이상반응으로 신고되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앉거나 누워서 접종받고, 접종 후 의료기관에서 경과관찰 등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보호자와 피접종자에게 설명
- 예방접종을 통해 향후 자궁경부암이나 자궁경부 전암병변을 예방하는 백신접종의 효과(이득)*를 함께 설명
 - * 고위험 HPV 16, 18형 감염, 백신 유형과 관련된 자궁경부 상피내암(0기암, carcinoma in situ) 및 자궁경부 상피내 선암종(Adenocarcinoma in situ)에 대해 높은 예방 효과(>90%)를 보임
 - * 이상반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미루는 것보다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암 예방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이 큼
- 일본 등 해외의 이상반응 사례로 인해 다수의 보호자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례들로 백신 안전성을 발표한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히 전달
 - * (WHO) 국제백신안전성자문위원회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2006년 허가를 받은 이후 '17.7월까지 전세계적으로 약 2억 7천도즈가 접종되었으며, 미국, 호주, 유럽,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이상반응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안전하다고 발표함(2017.7월까지 안전성에 대해 총 7회 검토 및 발표)
 - * (일본) 복합국소통증(5사례)에 대한 일본 후생성 조사 결과 백신과의 관련성은 인정하기 힘들고,



심리 불안반응으로 잠정결론('14.2월, 7월), 일본 전문학회 17개 단체에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을 재개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16년)

- * (국내) 국가예방접종 도입이후 약 67만건 접종함. 현재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50건(0.008%) 중, 심인성 반응으로 일시적인 실신 및 실신 전 어지러움 등의 증상(29건)이 가장 많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안전성이 우려되는 중증이상반응 사례군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5 사업 참여 방법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신청(위탁계약 체결)

- 관내 의료기관 중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장과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위탁계약 체결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전 건강 상담 및 예방접종 관련 교육 이수 필요
 - 건강 상담 관련 교육자료 수령 후 내용 숙지
 - * 교육자료 다운로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접속 →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프로그램/매뉴얼
 - 온라인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 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 의료기관 교육(2018)' 이수
- 위탁계약 서류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기관
 - ①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 ②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 ③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기본교육 수료증 (2017년 이전 기본교육 이수자의 경우,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교육 수료증 추가 필요)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미참여 기관(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계약 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가능)
 - ①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
 - ② 통장사본
 - ③ 2017년 이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 의료기관 교육’ 기본교육 수료증
 - ④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 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계약 갱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관리

- 의료기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재계약 체결
- 위탁 의료기관 이전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재계약 체결
 - * 의료기관 폐업 시 폐업신고로 위탁 계약 해지 같음
- 위탁계약기간(5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후 재계약 체결 및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의료기관정보에서 ‘계약갱신일’ 등록
 - ※ 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갱신일’등록 시 당초 ‘위탁계약일’변경 금지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위탁계약일 변경 시 이전 접종 내역에 대해 비용상환 불가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기관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추가로 참여한 경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일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 계산
 - * 2017.10.19. 이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위탁계약기간(3년) 만료시 재계약

참여 철회(해지)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철회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서류 제출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만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제출
 -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유지하고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만 철회할 경우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수정하여 제출

- 참여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로 참여 철회를 갈음함

☞ (참고)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 의료기관 정보 연계

- 의료기관 폐업신고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동 폐업 처리
- 폐업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이 소멸되므로 예방접종 기록 등록이 누락된 내역에 대해 추가 등록 불가
→ 반드시 폐업 전 예방접종 기록 등록을 완료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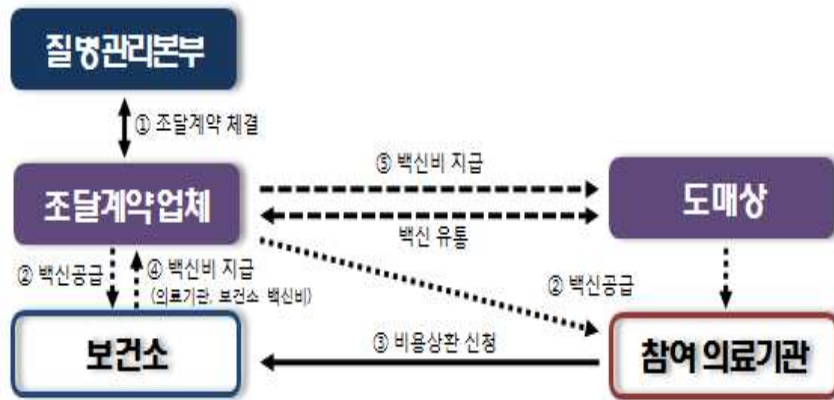
- 예방접종 업무 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사전통지 없이 위탁 계약 해지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해지
- 참여 의료기관이 건강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상담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사업 참여 해지

6 백신 공급

○ 백신공급

- 계약방식: 보건소 및 의료기관 사용량에 대한 총액계약
- 기관별 백신 공급방법
 - (보건소) 질병관리본부에서 분기별 사용물량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공급량 확정, 조달계약업체에서 백신 공급
 - (위탁의료기관) 조달계약업체 또는 도매상을 통해 직접 백신 확보,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결정된 건에 대해 백신을 공급한 조달계약업체 또는 도매상으로 백신비 지급

● 위탁의료기관 사용 백신의 백신비 지급절차 및 기관별 역할



< 백신 공급 및 비용 지급 절차 >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실시 후 보건소로 비용상환 신청
 ☞ (보건소) 지급심사 후 상환 결정된 건에 대해 백신비는 조달계약업체로, 시행비는 의료기관으로 상환
 * 다만, 조달계약업체의 도매상을 통해 공급된 백신은 조달계약업체가 도매상으로 백신비 지급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후 접종기록 등록 시 비용 상환 신청
 - * 조달계약 업체(또는 도매상)에게 백신비가 지급되기 위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를 반드시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보건소의 승인이 완료되어야함
- (보건소)
 -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내역 심사 후 비용 지급결정
 - 조달계약업체에서 청구된 건에 대해 백신비 지급
- (조달계약업체)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보건소의 지급결정 건에 대해 관할 보건소로 백신비 청구, 지급된 백신비를 실제 백신을 공급한 도매상으로 전달
- (도매상)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백신비 받음

● 협조 및 참고사항

- (보건소) 분기별 수요조사 시 과도한 수요제출 지양, 최근 접종률과 의료기관



분담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요 제출

- (위탁의료기관) 국가사업 외 백신은 보건소에서 비용지급이 불가하므로 최근 접종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사업으로 소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백신 확보
-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된 접종외 백신, 접종자 과실로 오염된 백신, 유효기간이 경과된 백신 등의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백신비 지급
- 백신공급업체 변경시, 변경된 업체와 작성된 협약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관할보건소에 승인요청 하여야 함
 - * 보건소의 승인 이후 전산등록된 건에 대해 변경된 업체로 백신비 지급됨, 이전 업체에서 공급한 백신이 남아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백신비 지급
- 국가예방접종으로 사용되지 않은 백신에 대한 비용 지급 등은 참여 의료기관과 조달계약 업체(또는 도매상) 간 자체적으로 관리(백신 구매 및 대금 지급)

7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기록 등록

○ 예방접종기록 등록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기록 등록
- 예방접종 기록은 가급적 접종 당일 등록
 - * 중복접종이 발생한 경우 접종기록을 먼저 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 지급됨
- 예방접종 기록은 순차적으로 등록
 - 건강한 아동의 경우 순차적으로 2회 등록(1차→2차)
 - 면역저하자의 경우 순차적으로 3회 등록(1차→2차→3차)
 - * 2차 접종 시 의학적 소견(면역저하 사유) 등록
 - 단, 과거 접종력이 등록되지 않았으나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다음 차수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접종기관에 전산등록 협조 요청)
 - 조혈모세포 이식 등으로 재접종한 경우 해당차수(기존 접종 날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접종내역 추가 등록



*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등록 시 의학적 소견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항목 선택 후 이식일자 추가입력

* 예시) 1차 접종 완료 후 조혈모세포 이식한 경우 전산등록: 1차→1차 재접종→2차→(필요시) 3차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오등록 시 처리 방법

- 도매상에서 백신비 지급 요청 후 또는 백신비 지급 완료 후에는 비용상환 접수취소, 접종내역 삭제가 불가능 하므로 도매상과 백신문제 처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백신 담당(043-719-6814/6816)과 선조치 필요



Ⅲ.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 사업 개요	57
2. 법적근거	58
3. 사업 추진실적	58
4. 사업 목표	59
5. 사업 내용	59
6. 예방처치 일정 및 비용지원범위	63
7. 접종/검사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방법	67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국내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경로는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 감염이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 감염 가능성은 산모의 B형간염 e항원(HBeAg)이 양성인 경우 65~93%, B형간염 e항원이 음성인 경우는 19~25%임¹⁾
- 주산기에 감염된 신생아는 대부분 불현성 감염 후 90% 이상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보유자가 되며 40~50대에 만성간염이나 간경화증으로 이행됨
- 주산기감염 위험이 높은 HBs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B형간염 백신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 75~80%가 예방되고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 97%까지 예방이 가능함²⁾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B형간염 주산기감염을 예방

○ 추진경과

- 정부·의료계가 공동으로 B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2002.6.26)
-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불린,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 시작(2002.7.1)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HO WPRO)에서 한국 B형간염 관리 성과 인증(2008.9.22)
-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B형간염 관리 성과인증’ 선정(2011.6.15)

1) Kwon SY, Lee CH. Epidemiology and prevention of hepatitis B virus infection. Korean J Hepatol. 2011 Jun;17(2):87-95. J Hepatol. 2011 Dec;55(6):1215-21

2) Y. Ghendon. WHO strategy for the global elimination of new cases of hepatitis B. Vaccine 8(supl);129-133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수행 방식 변경(2014.1.1)
 - 'B형간염 예방수첩(쿠폰 포함)' 발급에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비용청구 방식으로 변경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2014.6.5.)

2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 2017-6호)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9조

3 사업 추진실적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신규 등록 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자 추계	202,923	16,678	16,074	14,791	15,237	15,782	14,909	14,235	15,045	14,138	14,537	13,094	13,063	13,153	12,187
신규 등록자수	197,540	14,715	15,524	14,492	15,109	16,547	15,345	14,635	14,874	15,026	14,624	12,767	12,109	11,647	10,126
등록률	97.3	88.2	96.6	98.0	99.2	104.8	102.9	102.8	98.9	106.3	100.6	97.5	92.7	88.6	83.1

※ 등록자 수 기준 : 사업 대상자 수첩 발행년도 기준

※ 대상자 추계 = 년도 별 출생아 수 * 산모 표면항원 양성률

산모 표면항원 양성률 2002~2006 : 3.4%, 2007~2010 : 3.2%, 2011~ : 3.0%



○ 항원·항체 검사결과(2002.7. ~ 2016.12.)

구 분	검사결과	명	비율(%)
성공 (97.3%)	HBsAg (-) /Anti-HBs (+)	108,359	97.3
	HBsAg (-) /Anti-HBs (-)	56	0.0
실패 (2.7%)	HBsAg (+) /Anti-HBs (-)	2,997	2.7
	HBsAg (+) /Anti-HBs (+)	4	0.0
계		111,416	100

※ 기준: 2002.7.1.~2016.12.31.까지 사업 참여 상태가 종료인 대상자(1~3차 검사결과 포함)

4 사업 목표

- 10세 미만 소아의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률 0.1% 미만으로 유지

※ Regional Action Plan for Viral Hepatitis in the Western Pacific 2016-2020 : 2020년까지
5세 미만 영유아 표면항원(HBsAg) 양성률 1%미만, B형간염의 주산기 전파율 2%미만 달성

5 사업 내용

- 사업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05.1.1.이후 출생자) 중 산모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산모의 HBsAg 양성 또는 HBeAg 양성 결과

※ 미동의자의 경우 면역글로불린 투여, 항원·항체 검사, 추가 접종 및 검사비용 자비부담

※ 외국인 등록번호, 관리번호(장·단기 체류자), 시설번호 모두 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와 다름)

※ 7자리 신생아 번호 비용상환 접수 불가, 13자리 번호로 보완 후 접수 가능

- 지원내용

-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 비용 지원

※ B형간염 기초접종(1~3차) 후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 및 재검사 지원(최대 3차까지)

● 사업체계

- 지자체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위탁하고, 위탁의료기관이 청구한 비용상환에 대해 피접종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지급 심사 후 비용지급
 - 분만기관은 보호자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B형간염 1차 예방처치(면역글로불린과 백신접종) 후 대상자 등록 (산모검사결과 입력, 결과지 업로드) 및 처치내역 전산등록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구득한 기관에서 5년간 보관



●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시도	- 사업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도 의사회 등 관련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 - 시·군·구 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예방접종 전문교육과정 이수
시군구	- 사업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 의사회 및 의료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 - 예방접종 전문교육과정 이수 - 참여 의료기관 관리(참여갱신, 점검실시, 교육관리 등) ● 관내 의료기관의 신규 참여 독려 및 관리(5년마다 갱신) * 사업참여에 필요한 서류: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 기존 참여기관 중 3년이 경과한 경우 2018년에 참여갱신



기관	역할
시군구	* 2018.3.5.부터 전자계약 신설 예정으로 매뉴얼 별도 안내 예정 * 교육수료증: 2017년 이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기본교육 또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교육 * 사업참여 시 B형간염 예방접종 시행은 필수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안내 및 시스템 이용법 안내 • 연 2회 자율점검표 확인 및 연 1회 이상 방문점검 실시('18.3.5.이후 전자제출)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자율점검표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자율점검표 모두 제출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산모에게 사업 안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접종 및 검사가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맞게 시행·전산등록 될 수 있도록 교육 -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관리 • 타당한 사유 없는 중복접종, 최소접종 연령·간격 미준수한 이른접종, 접종/검사 순서 미준수 시 비용상환 불가 • 항원·항체 검사를 정량검사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비용상환 불가 - 사업대상자 승인 및 관리 • 신규 사업 대상자 승인 및 중간 참여자 대상자 체크 * 의료기관에서 산모검사결과지 시스템 업로드 불가한 경우 보건소에서 결과지 Fax로 받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민원처리를 통해 업로드 • 과거 수첩(쿠폰) 대상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후 전산등록시스템 방식으로 전환 • 접종/검사 미완료자 추적관리(상·하반기 각 1회, 연 2회) • 대상자 승인 및 7자리 신생아번호와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인적 정보 통합 - 사업 시행현황 모니터링 - 예방접종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예방접종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
산전진찰기관	- 산모 B형간염 검사 실시 -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안내 및 검사결과지 발급
분만기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보호자용 리플릿 배부) ※ 구득한 기관에서 5년간 보관 - 시스템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신청 및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지 업로드, 문자수신 동의여부 체크 * 단, 의료기관에서 결과지 시스템 업로드 불가할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결과지 Fax로 받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민원처리 메뉴를 통해 업로드 가능 - 면역글로불린 + B형간염 1차 접종 및 접종내역 전산등록 - 권장일정에 따른 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의 중요성 안내
접종/검사기관	- 예방사업 설명 및 향후 접종/검사 일정 안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등록, 문자수신 동의여부 체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대상자 체크 후 산모검사결과 입력, 결과지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 대상자 등록 * 단, 의료기관에서 결과지 시스템 업로드 불가할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결과지 Fax로

기관	역할
접종/검사기관	받아 B형간염 주산기감염 민원처리 메뉴를 통해 업로드 가능 - B형간염 예방접종(1차의 경우 출생 후 12시간 이내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 포함), 항원·항체 검사 정량검사 실시 및 접종/검사 내역 등록 ※ 자비 접종/검사의 경우에도 사업 종료 또는 지속 추적관리 위해 반드시 접종내역/결과 전산등록 ※ 항원·항체 검사 결과 등록 후 결과지는 시스템에 업로드 * 단, 의료기관에서 결과지 시스템 업로드 불가할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결과지 Fax로 받아 B형간염 주산기감염 민원처리 메뉴를 통해 업로드 가능 - 권장일정에 따른 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의 중요성 안내 - 항원·항체 검사결과에 따라 재접종/재검사 또는 사업 종료 안내 ※ 1차 항원·항체 검사 결과 항체 미형성 시 1차 재접종 후 반드시 2차 항원·항체 검사 실시 ※ 2차 재접종 후에는 3차 재접종까지 실시 후 3차 항원·항체 검사 통해 사업 완료 - 검사결과 감염자(항원양성, 항체음성)에게는 감염자관리 안내문 및 관련 정보 제공 - 접종/검사 미완료한 과거 쿠폰 대상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 접종/검사 미완료한 과거 쿠폰 대상자(2013년 이전 대상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후 지속 지원 가능 - 방법: 구득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팩스 전송 → 보건소에서 시스템으로 전환 → 시행 기관에서 접종/검사 내역 전산등록(검사결과는 파일 업로드) - B형간염 접종 및 접종내역 전산등록 감염자관리 안내문 및 관련 정보 제공
의료기관 (공통)	- 예방접종 교육 이수 * 2017년 이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기본교육 또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교육 - 보건소에 사업참여 신청(전자제출) * 사업참여에 필요한 서류: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 기존 참여기관 중 3년이 경과한 경우 2018년에 참여갱신 * 2018.3.5.부터 전자계약 신설 예정으로 매뉴얼 별도 안내 예정 * 사업참여 시 B형간염 예방접종 시행은 필수임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자율점검표 제출('18.3.5.이후 전자 제출)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자율점검표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자율점검표 모두 제출 - 보건소 방문점검 등 협조 -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 예방접종기록은 피접종자의 중복접종 및 접종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종기관 간 공유하며, 예방접종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위탁계약조건 제6항에 따라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우 사업 참여 해지
산모	-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 확인 및 결과지 수령하여 분만기관에 B형간염 검사결과 제출 - 사업 대상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보호자용 리플릿 수령 - 권장 일정에 따라 대상자의 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 위해 지정의료기관 사전예약 후 방문

6 예방처치 일정 및 비용지원범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 일정 및 비용지원 범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예방처치 일정

- 접종일정: 생후 0, 1, 6개월
 - ※ 첫 접종은 출생 후 12시간 이내 면역글로불린(HBIG, 0.5ml)과 함께 부위를 달리하여 접종
- 최소접종간격
 - 2차접종: 1차 예방접종 후 4주 이후
 - 3차접종: 2차 예방접종 후 8주 이후, 1차 예방접종 최소 16주 이후
-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장 시기에 접종 시행
- 접종용량: 10세 이하 0.5ml, 11세 이상 1.0ml
- 접종부위: 영유아는 대퇴부 전외측에 근육주사

접종 및 검사		접종 및 검사 권장 시기	접종부위	최소연령	최소간격
기 초 접 종	1차 접종 (백신, 면역글로불린)	<u>출생 직후(12시간 이내)</u>	대퇴 전외측	-	-
	2차 접종(백신)	생후 1개월	대퇴 전외측	생후 4주	1차 접종 후 4주
	3차 접종(백신)	생후 6개월	대퇴 전외측	생후 24주	2차 접종 후 8주 1차 접종 후 16주
1차 항원·항체검사		¹⁾ 생후 9~15개월	-	생후 9개월이상	-

1) 1차 항원·항체검사 권장시기는 생후 9~15개월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권장시기에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 지연 접종 시 최소연령 및 최소접종간격을 지켜야 하며, 3차접종 후 최소 4주 이후 검사 진행(지연접종이 아닌 경우, 가급적 권장 검사 시기에 준하여 시행)

- 접종/검사 순서: 1차 접종 → 2차 접종 → 3차 접종 → 1차 항원·항체 검사
→ (항체 미형성시)1차 재접종 → 2차 항원·항체 검사 → (항체 미형성시)
2차 재접종 → 3차 재접종 → 3차 항원·항체 검사

※ 1차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접종 및 검사 진행여부 결정(p66 참조)

● 미숙아(출생시 체중 2kg 미만인 동시에 37주 미만)의 예방접종 일정

- 체중 2kg 미만인 동시에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는 출생 직후 1차접종을 하고, 1차접종 1개월 이후에 미숙아 재접종, 미숙아접종 1개월 후에 2차접종, 2차접종 4개월 후에 3차접종으로 표준접종일정(생후 0-1-2-6~7개월)은 총 4회
- 예방접종 등록화면의 등록 순서: 1차 ⇒ “미숙아 재접종” ⇒ 2차 ⇒ 3차접종

● 재접종

-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접종 및 추가검사 진행여부 결정

(1) B형간염 1차 재접종

- 대상: B형간염 1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미형성자[HBsAg(-), anti-HBs(-)]
- 방법: 1차 항원·항체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 1차 재접종

(2) B형간염 2차, 3차 재접종

- 대상: B형간염 2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미형성자[HBsAg(-), anti-HBs(-)]
- 방법: 2차 항원·항체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1차 재접종일로부터 1개월 후) 2차 재접종하고, 2차 재접종일로부터 5개월 이후 3차 재접종 실시

(3) 최소접종간격

- 2차 재접종: 1차 예방접종 후 최소 4주 이후
- 3차 재접종: 2차 예방접종 후 최소 8주 이후, 1차 예방접종 후 최소 16주 이후

● 항원 항체검사

(1) 검사 일정

- 적정검사 시기는 생후 9~15개월이며, 접종이 지연된 경우 3차 접종 후 최소 4주 간격을 두고 검사
- ※ 정성검사로 시행한 경우 비용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EIA, CIA, ECL 등의 정량검사법으로 실시

(2) 검사결과 표기 방법

- 모든 항원·항체 검사결과(양, 음)와 정량결과(항원·항체가/단위)를 함께 입력

(3) 항체가의 정량 검사결과 판독 기준

- 예방 가능한 ‘항체가’는 10 mIU/mL 이상
- 항원이 음성이고 항체가 음성(항체가가 10 mIU/mL 미만)일 경우 재접종 필요
- ※ 주의: 시험 기기별로 단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조 기준에 준하여 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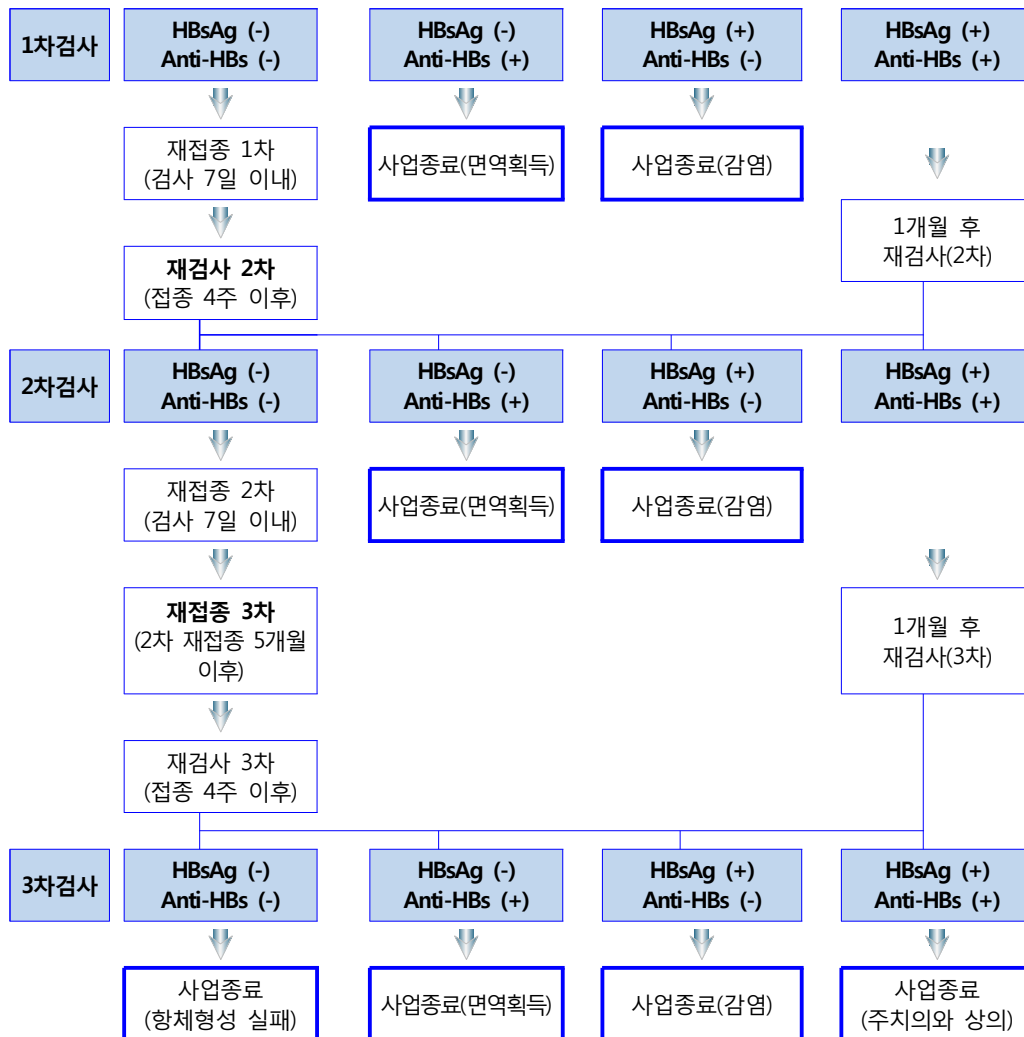
(4) 권장검사의 종류(비용지원 검사법)

-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면항원 및 항체 검사방법 중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권장

권 장 검 사 방 법(항체가 확인 가능)	인정
효소면역검사법 (Enzyme immunoassay : EIA) 미세입자효소면역검사법(microparticle enzyme immunoassay : MEIA) 형광효소면역측정법 (fluorescent enzyme immunoassay : FEIA) 효소면역측정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 ELISA) *EIA는 RIA와 비슷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있으며, 항체량의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함	○
화학발광 미세입자 면역측정법 (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 CIA,CLA,CLIA,) *CLIA는 고형물로 크기가 작은(microparticle) 자석성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검사의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음	○
전기화학발광 면역측정법 (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 ECL)	○
※ 비권장검사(비용지원 불가): 항체가의 측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검사 예	
방사면역측정법 (Radioimmunoassay : RIA) *효소 대신 방사선 동위원소를 표지자로 이용하여 반응시킴으로써 항원 및 항체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항체가를 측정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단계가 필요함	X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Immunochromatography assay : ICA) *현장검사 시약은 검사실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도 간단히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X
수동혈구응집법 (Passive hemagglutination : PHA) *민감도가 EIA나 RIA보다 1,000배 정도 낮아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X

※ 자문기관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기초접종 완료 후 1차 항원·항체 검사결과에 따른 일정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접종 및 접종비용 지원 범위

- 기초접종 3회(1차~3차)
 - ※ 1차 예방처치는 면역글로불린과 B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 항원·항체 검사 3회(1차~3차): 추가 검사필요 시 총 검사 3회까지 비용 지원
 - ※ 반드시 정량검사법(EIA, ECL, CIA 등)으로 시행한 경우 비용지원 가능
 - ※ 정성검사 또는 항체만 검사 시 재검사 필요



- 추가접종 3회(1차~3차 재접종): 추가접종 필요시 재접종 총 3회까지 비용지원
- ※ 접종 및 검사 진행 순서는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실시기준”에 따르며, 진행 순서가 다른 경우 비용 지급 불가
- ※ 지연접종/검사라 하더라도 2005.1.1.이후 출생아의 경우 비용지원 가능

● 2018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2018.1.1.부터)

- 면역글로불린 투여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비용 : 57,100원
- 2차 및 3차 예방접종 비용 : 24,350원
- 항원·항체 검사 비용 : 56,620원

구 분	2018년		2017년		비고
계	162,420원		155,480원		+6,940원
HBIG & 1차 접종	57,100원	32,750원	54,700원	32,240원	+2,400원
		24,350원		22,540원	
2차 접종	24,350원		22,540원		+1,810원
3차 접종	24,350원		22,540원		+1,810원
항원·항체 검사	56,620원		55,700원		+920원

- * HBIG 투여에는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약제비 포함
- * B형간염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포함
- * 예방접종 비용은 2018년 보건소 백신 조달 계약 이후 변경예정으로 변경시 추후 별도 공지
- * 항원·항체 검사 비용에는 검사료 및 검사 상담료 포함
- * 1차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접종 및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항목에 대해 추가 지원

7 접종/검사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방법

○ 접종/검사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방법

● 대상자 등록

- 로그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서 [예방접종관리]
- ⇒ [예방접종 등록] ⇒ [인터넷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등록 바로가기] 클릭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산모검사결과 입력,

결과지 업로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독여부 체크, 문자수신 동의여부 체크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우측 표준예방접종 등록표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일정에 맞게 자동 변경됨

※ 검사항목에서 HBsAg 또는 HBeAg이 양성인 경우에만 대상자등록 가능

예방접종 및 검사결과 등록

- 1차 접종의 경우 면역글로불린과 B형간염 접종정보 등록

※ 접종시간, 임신주수, 출생체중, 출생방법, 산모 예방접종력의 정보도 입력

※ 1차 접종 등록 후 보건소에서 '대상자 승인' 이 이루어져야 다음 접종 등록 가능



- 미숙아(출생시 체중 2kg 미만인 동시에 37주 미만 출생)의 경우 1개월 후 접종은 '미숙아 재접종' 칸에 등록
 - ※ 미숙아 재접종의 경우 피접종자의 '접종시 체중' 항목 추가로 입력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접종 및 검사는 일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등록
 - ※ 기초 1~3차 접종 후 1차 항원·항체 검사 정량검사법으로 실시. 검사 결과에 따라 이후 1차 재접종 → 2차 항원·항체 검사 → 2차 재접종 → 3차 재접종 → 3차 항원·항체 검사

HepB (유전자재조합)	미숙아			1차 재접종 1차 검사	2차 재접종 2차 검사	3차 재접종 3차 검사
------------------	-----	--	--	-----------------	-----------------	-----------------

- 항원·항체 검사 결과 등록 시 검사일자, 검사항목, 검사결과(항체가 포함) 정확히 입력하고, 검사결과지는 시스템에 업로드함

● 사업 종료 시

- 사업 종료 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체크란이 공란으로 표시되며,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에 보라색 박스, 검사 입력칸이 없어짐
 - ※ 항원·항체 검사 결과 항체가 생성된 경우 결과 입력 시 사업 종료됨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 (Vaccination Registr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nterface. On the left, there's a form for '예방접종등록' (Vaccination Registration) with fields for vaccine type, recipient information, and dates. A red box highlights the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type hepatitis perinatal infection prevention project) section. On the right, a table shows the vaccination schedule for various vaccine types (BCG, HepB, DTaP, etc.) across different birth cohorts (1st, 2nd, 3rd, 4th, 5th, 6th). The dates for the 1st, 2nd, and 3rd doses are highlighted in red for the 'B형간염 (유전자재조합)' vaccine.

● 비용청구 지급결과 확인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비용청구관리 → 비용청구지급결과에서 조회
 -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비용청구 내역 조회 가능

지급기관	전화번호	지급금액	회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차수	접종일	상환선생일	지급승인일	지급금액	등록명
		₩48,600			접종	1차	2015-03-30	2015-03-31	2015-05-20	₩48,600	
		₩97,200									
		₩48,600									

자율점검표 제출 및 점검방법

- 자율점검표 제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기관점검 → 자율점검 메뉴에서 [점검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고 [확인 및 서명] 버튼을 클릭하여 서명 후 저장하면 제출 완료됩니다.

※ 자율점검표 제출 확인 및 방문점검결과 등록 세부 매뉴얼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관리 → 행정지원 → 자료실 → 프로그램/매뉴얼에 3월 중 게재 예정



<별첨자료>

I. 주요서식

<별첨 I-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73
<별첨 I-2>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75
<별첨 I-3> 예방접종 예진표	76
<별첨 I-4>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교육수료증	77
<별첨 I-5>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78
<별첨 I-6>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	79
<별첨 I-7>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80
<별첨 I-8>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80
<별첨 I-9>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81
<별첨 I-10>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해지신청서	82
<별첨 I-11>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83
<별첨 I-12>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85
<별첨 I-1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86
<별첨 I-14> 백신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의료기관)	88
<별첨 I-15> 국가예방접종비용 연간 지급내역	88
<별첨 I-16>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9



<별첨 I-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	---

제2조	“을”	의 료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면 허 종 별		면 허 번 호	
		의료정보시스템	[] 사 용 ※ 사용사업체명 : _____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	---------	----------

제4조	위탁계약 범위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	---------	---

제5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3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제6조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	--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보존용지 70g/m²]

(뒤쪽)

〈위탁계약조건〉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별첨 I-2>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전자(또는 서면)-○○-○○○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m²]

<별첨 I-3> 예방접종 예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남 □여)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체중	kg
주소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동의 ☒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문자 수신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접종 대상자에 대한 확인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약이나 음식물(계란 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예 ☐ 아니오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경련을 한적이 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길랭-바레 증후군 포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병명:)	☐ 예 ☐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예 ☐ 아니오
(여성) 현재 임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피접종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의사 예진 결과 (의사 기록란)	확인 ☒
체온 : °C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
문진결과 :	
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첨 I-4>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제 1810300001 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소 속 :
직 군 : (면허번호:)
성 명 :
소 재 지 :

귀하는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기본교육과정.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질병관리본부장 직인생략



<별첨 I-5>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참 여 백 신 시 행 확 인 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 관 명		요 양 기 관 번 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소 재 지)			
어 린 이 국 가 예 방 접 종 시 행 백 신 정 보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시행여부	
결핵	BCG(피내용)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B형간염	HepB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Td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Tdap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폴리오	IPV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PPSV(다당질)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수두	Var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A형간염	HepA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일본뇌염	JE(불활성화 백신-쥐뇌조직 유래)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JE(불활성화 백신-베로세포 유래)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JE(생백신)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인플루엔자	Flu 0.25mℓ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Flu 0.5mℓ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 대표자 (서명)			



<별첨 I-6>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상담 체크리스트)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

건강 상담에 동의한 경우 아래 문항에 표시하면서 사춘기의 특징적인 신체 발달에 대해 알아보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 상담 대상자 이름 :

□ 생년월일:

① 건강 상담 동의	☐ 동의합니다(☞ ②번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래 ②~⑤번 문항은 표시하지 마세요.)
② 초경 여부 확인	☐ 예 (년 월) ☐ 아니오 (☞ ⑤번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③ 월경력 확인	1. 최근 월경 시작일 : _____ 2. 월경 주기 : ☐ 규칙적 ☐ 불규칙적 3. 월경 기간 : ☐ 2~7일 ☐ 2일 미만 혹은 8일 이상
④ 월경 관련 증상	1. 월경통 ☐ 있음 ☐ 없음 · 월경통이 있다면 ()점 (매우 심한 경우 10점) ·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 월경통인가요? ☐ 예 ☐ 아니오 · 진통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나요? ☐ 예 (복용 시 효과가 있었나요? ☐ 예 ☐ 아니오) ☐ 아니오 2. 월경 양 (해당사항 모두 표시해 주세요.) ☐ 1-2시간 마다 생리대를 바꿔야 한다. ☐ 밤에 생리대를 바꾸기 위해 잠에서 깬다. ☐ 일주일 이상 월경이 지속된다. ☐ 월경 양이 많아 학교생활이 힘들다. ☐ 월경 때 피곤하고 어지럽거나, 숨이 찬 적이 있다. ☐ 위 내용 모두 해당사항 없다. 3. 월경 주기 : ☐ 21~45일 ☐ 21일 미만 혹은 46일 이상
⑤ 유방 발달	아래는 유방 발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골라주세요. ☐ 1단계: 유방이 발달하지 않았음 ☐ 2단계: 젖멍울이 생기고 만져짐 ☐ 3단계: 유방이 점점 커지고 유륜(젖꼭지 주위의 피부보다 진하고 둥근 부분)도 넓어짐 ☐ 4단계: 커진 유방 위로 유륜이 언덕처럼 튀어나옴 ☐ 5단계: 튀어나왔던 유륜이 유방 전체와 같은 면으로 들어가고 젖꼭지만 튀어 나옴
⑥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접종력	1. 접종여부 : ☐ 있음 (접종일: 년 월 일) ☐ 없음 2. 이전에 접종한 적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나요? (☐ 있음 ☞ 어떤 증상이었나요?) ☐ 없음

아래 문항은 상담 후 의사 선생님이 작성해 주십시오.

구 분	확 인 내 용	확 인 ☑
①	2차 성징과 초경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였음	☐
②	초경 여부를 확인하였음	☐
③-1	(초경을 한 경우라면) 월경과다 여부를 확인하였음	☐
③-2	비정상 자궁출혈(월경 양, 간격 등) 여부를 확인하였음	☐
③-3	월경통 여부를 확인하였음	☐
④	(초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2차 성징 발현 여부를 확인하였음	☐
작성일:	의료기관명:	의사성명: (서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별첨 I-7>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전 화 번 호	
주소(소재지)			

①「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참여를 위한 교육자료 수령 및 사업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②「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시행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예방접종 시행 백신 정보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시행여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참여를 확인합니다.

20 . .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에 참여하지 않음 경우 참여 확인증(시행여부)에 ‘시행하지 않음’으로 표시하여 제출

<별첨 I-8>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중 ☐ 가다실, 또는 ☐ 서바릭스 공급에 대한 협약이다. 제2조(공급방법) “갑”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을”에게 위의 백신공급을 요청하고, “을”은 “갑”이 요청한 백신을 지정한 장소에 직접 운반·납품 한다. 제3조(보관 및 수송) “을”은 백신의 보관 및 수송시에는 「생물학적제제의 제조·판매관리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제4조(백신비 지급) “갑”이 예방접종 실시 후 보건소에 비용상환을 요청하고,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결정된 건은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정부 조달계약에 의해 결정)로 지급을 하며, “을”은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상환 받는다. ※ 보건소의 지급심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갑”은 “을”에게 백신비를 직접 지급한다. •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로 결정된 건(중복접종, 이원접종 등) • 접종자의 과실로 인해 백신 오염이 발생하여 예방접종에 사용하지 못하게된 경우 • “갑”이 공급 요청하고 “을”이 납품을 완료한 백신 중 유효기간이 도래시까지 접종하지 못한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외 백신은 국가에서 비용상환이 불가하므로, “갑”은 최근 접종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소진 가능한 범위내에서 “을”에게 백신 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백신공급기관 변경) “갑”이 백신공급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을”에게 변경의사를 통보해야하며, 백신공급기관이 변경 승인된 시점에 “을”이 공급한 백신이 남아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잔여 백신에 대한 백신비를 지급한다. 제6조(지원사업 수행) “갑”은 이 협약을 체결한 후 이 협약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로부터 위 내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기타) 동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운영세칙)에 따른다. 20 년 월 일 <table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갑”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주 소 : 연 락 처 : 의 료 기 관 명 : 요 양 기 관 번 호 : 대 표 자 : (인) </td> <td style="width: 50%;"> “을” 백신공급기관 주 소 : 연 락 처 : 회 사 사 명 : 사 업 자 번 호 : 대 표 자 : (인) </td> </tr> </table>		“갑”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주 소 : 연 락 처 : 의 료 기 관 명 : 요 양 기 관 번 호 : 대 표 자 : (인)	“을” 백신공급기관 주 소 : 연 락 처 : 회 사 사 명 : 사 업 자 번 호 : 대 표 자 : (인)
“갑”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주 소 : 연 락 처 : 의 료 기 관 명 : 요 양 기 관 번 호 : 대 표 자 : (인)	“을” 백신공급기관 주 소 : 연 락 처 : 회 사 사 명 : 사 업 자 번 호 : 대 표 자 : (인)		



<별첨 I-9>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정보			
항목	시행여부		
면역글로불린(HBIG) 투여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B형간염 예방접종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항원·항체검사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참여를 확인합니다. 20 대표자 (서명)			

<별첨 I-10>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의료기관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대 표 자		연 락 처	
	해지사유 및 요청사항			
본 의료기관은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해지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별첨 I-11>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자율 점검 표

(보건소 제출용)

※ 의료기관 대표자께서 점검하시고 점검결과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등록사항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전문과목 (표시과목)	
주소(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인원 : 명	☐ 의사 : 명 ☐ 간호사 : 명 ☐ 행정요원 : 명	☐ 간호조무사 : 명 ☐ 전산요원 : 명
예방접종 시행여부	국가 예방접종	예방접종비용 지원	기타
		☐ BCG(파내) ☐ B형간염 ☐ DTaP ☐ Td ☐ Tdap ☐ IPV ☐ DTaP-IPV ☐ Hib ☐ PCV(단백결합) ☐ PPSV(다당질) ☐ MMR ☐ 수두 ☐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쥐뇌조직 유래) ☐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베로세포 유래) ☐ 일본뇌염(생백신) ☐ A형간염 ☐ HPV ☐ 인플루엔자	☐ 장티푸스 ☐ 신증후군출혈열
	기타 예방접종	☐ BCG(경피) ☐ 로타바이러스	
일반사항 및 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일반사항			
1)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인증서」를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백신을 사전에 구비해 둔다.			
3) 보호자에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한다.			
2. 예방접종실시 전 준비사항			
1) 예방접종 예진표를 비치하고 있다.			
2) 접종 전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3) 예방접종 실시 전 반드시 과거 접종력을 확인한다(1차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차 : 예방접종수첩).			
4) 보호자가 작성한 예진표를 확인하여 접종대상자를 예진하고 진찰소견, 서명 등을 기록한다.			
5) 예진 시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일정 안내 문자서비스 수신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한다.			
6)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한다. -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안내문(VIS :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제공한다.			

일반사항 및 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3. 접종실시		
1) 준비된 백신의 유효기간, 처방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 백신을 접종하기 전 손을 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한다.		
3)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와 투여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4) 정확한 접종부위, 접종용량, 접종방법에 따라 접종한다.		
5) 주사 후 마른 솜이나 거즈로 주사부위를 뽀 부위를 가볍게 수 초간 눌러준다.		
4. 접종 후 서비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호자 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2) 다음 예방접종일을 안내하고, 20~30분 정도 접종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관찰한다.		
5. 기록보존		
1)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5년) 동안 보존한다.		
2) 접종대상자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휴대전화번호 등)은 수정한다.		
3) 예방접종기록은 가급적 당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전산보고)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접종기록을 작성하고 제출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6. 백신관리		
1) 백신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한다.		
2) 백신 구입 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한다.		
3) 백신보관만을 위한 전용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다. ※ 음식물, 검체 등을 함께 보관하면 안 됨		
4) 냉동고의 문이 따로 있는 냉장고를 사용한다.		
5) 백신보관 냉장고는 성애가 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6) 「백신전용 냉장고」 표시 및 「백신의 보관관리」 내용을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7) 냉장고 내부의 안쪽에 온도계를 부착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 시 즉시 교체		
8) 백신보관 온도는 2~8℃ 유지한다.		
9)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한다.		
10) 주기적으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며,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이 냉장고 내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다.		
11)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처리 한다.		
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 . . . 위 점검자(대표자) (서명)		

담당자 확인 (보건소 기재란)	종합의견 : 직급 : 성명 : (서명)
---------------------	--

※ 자율점검표 작성 내용이 거짓임이 확인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음



<별첨 I-12>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보건소 제출용)

※ 의료기관 대표자께서 점검하시고 점검결과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등 록 사 항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전문과목 (표 시 과 목)	
주 소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 인원 : 명	☐ 의 사 : 명 ☐ 간호사 : 명 ☐ 행정요원 : 명	☐ 간호조무사 : 명 ☐ 전산요원 : 명
상담 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상담 체크리스트)를 비치하고 있다			
2)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리플릿과 건강 상담 대상자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다			
3) 여성청소년 표준 건강상담을 위한 의료인용 상담 참고자료의 내용을 숙지하였다			
4) 상담 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리플릿과 안내문을 제공하고,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상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5) 상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진료실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6) 대상자가 작성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상담 체크리스트)는 5년간 보관하고 있다			
7) 상담은 반드시 예방접종과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두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8) 대상자와 보호자가 상담을 거부할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력 등록시 '상담안함' 항목을 체크해야 함을 알고 있다			
9) 상담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향후 자궁경부암 검진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0) 상담 Flowchart를 숙지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11) 상담시 사춘기 성장발달 과정과 무월경·월경이상·월경통 등 여성 청소년에게 흔히 발생하는 월경 관련 질환 등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의 항목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점검결과와 동일하며, 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 . . .			
위 점검자(대표자) (서명)			

담당자 확인 (보건소 기재란)	종합의견 직급:성명: (서명)
---------------------	--

※ 자율점검표 작성 내용이 거짓임이 확인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음



<별첨 I-1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보건소 제출용)

※ 의료기관 대표자께서 점검하시고 점검결과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등 록 사 항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전문과목 (표 시 과 목)			
주 소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 인원 : 명	☐ 의 사 : 명 ☐ 간 호 사 : 명 ☐ 행 정 요 원 : 명	☐ 간호조무사 : 명 ☐ 전 산 요 원 : 명		
시행 항목	☐ HBIG 투여 ☐ B형간염 예방접종 ☐ 항원항체 검사				
일반사항 및 사업 참여 관련 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당해년도 사업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을 숙지하였다					
2) HBsAg양성 산모에게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내용과 중요성, 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리플렛(보호자용)을 충분히 보유하고 필요시 배포하고 있다					
4) 사업 참여 전 보호자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함을 알고 있다					
5) 보호자에게 받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산모 외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을 알고 있다					
6) 사업 참여를 위해 보호자에게서 받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함을 알고 있다					
7)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아기 임신 당시의 산모의 HBsAg 양성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결과는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함을 알고 있다					
접종 관련 점검사항(□1~3해당사항 없음)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출생 12시간 내에 대상자에게 HBIG 투여를 B형간염 백신 접종과 부위를 달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2)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출생 12시간 내 백신 접종과 HBIG 투여는 분만시기(주말/심야 등)에 관계없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3) 대상자 중 미숙아·저체중아에게도 출생 12시간 내에 B형간염 1차접종과 HBIG 투여를 실시하고 있다.					
4) 미숙아(출생 시 체중이 2kg 미만이면서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대상자에게는 1차 접종 1개월 후 미숙아 재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5) B형간염 백신 접종을 대퇴부 전외측에 실시하고 있다					
6) 접종 전 이전 접종/검사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일정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					



7) 기초 접종 완료 후 면역 획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항원·항체 검사는 꼭 진행되어야 할 단계임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검사관련 점검사항(□해당사항 없음)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대상자의 항원·항체 검사는 반드시 권장되는 정량검사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2) 1차 항원항체 검사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생후 9개월 이후에 실시하고 있다		
3) 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와, 결과에 따른 다음 일정(사업 종료/재접종/재검사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4) 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값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결과지를 업로드하고 있다		
5) 감염으로 인한 사업종료 대상(보호자)에게 배포할 감염관리 안내문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6) 감염으로 인한 사업종료 대상(보호자)에게 감염관리 안내문을 배포하여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해야 함을 알고 있다.		
이외 항목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점검결과와 동일하며, 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점검자(대표자)		(서명)

담당자 확인 (보건소 기재란)	종합의견 직급·성명: (서명)
---------------------	---------------------

※ 자율점검표 작성 내용이 거짓임이 확인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음



<별첨 I-14> 백신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의료기관)

()월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

의료기관 _____

접종명	총 등록건수	비용상환 신청건수	비용상환 심사결과				총 상환금액 (원)
			상환결 정	예외인 정	상환불 가	미결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각종서식’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별첨 I-15> 국가예방접종비용 연간 지급내역(의료기관)

()년도 국가예방접종비용 연간 지급내역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표시과목		연락처	
의료기관 주소			
지급내역			
구분	지급완료건수	지급금액	
합계			
※ 예방접종 비용 환수 등으로 인한 접종력 삭제 또는 접종력 수정 등으로 인해 지급 내역서의 출력 시점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별첨 I-16>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집			휴대전화
		※ 접종·검사 일정 안내를 위한 알림을 받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수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피접종자 (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6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B형간염 산모가 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은 생후 12시간 내 면역글로불린 투여와 B형간염 백신 기초 3회 접종을 통해 97% 예방이 가능하고, 항원·항체검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감염이 예방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B형간염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최대 3회의 추가접종과 2회의 재검사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기별로 필요한 예방처치 및 검사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방처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예방처치를 위한 필수정보(산모 항원·항체 검사결과, 피접종자 예방접종력 및 항원·항체 검사결과)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기별 적절한 처치 및 비용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피접종자(아기)와의 관계: _____ / 성명: _____ (서명)					
의 사 기 록 란					확인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음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기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의사 성명: _____ (서명)		의료기관 명:			
		의료기관 연락처:			



<별첨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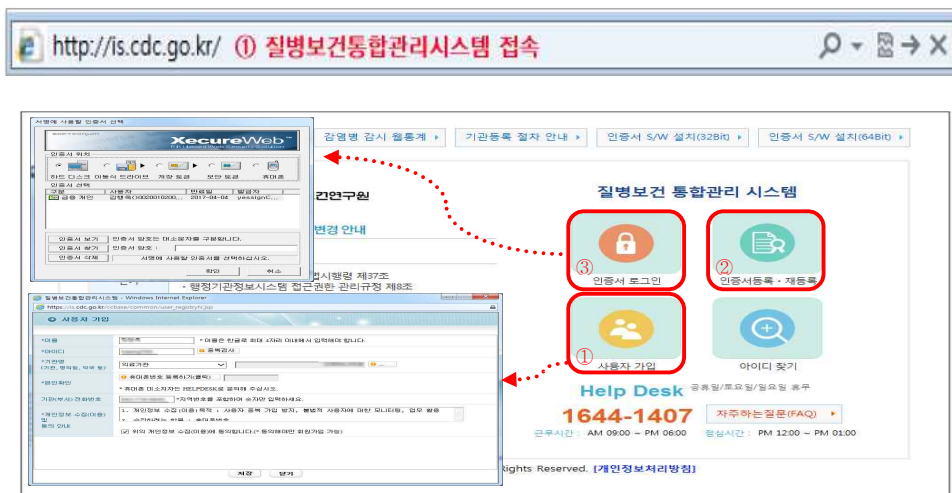
Ⅱ.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1] 예방접종 전산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방법	93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98
[3]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09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11
[5]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사용방법	112

1 예방접종 전산시스템 사용권한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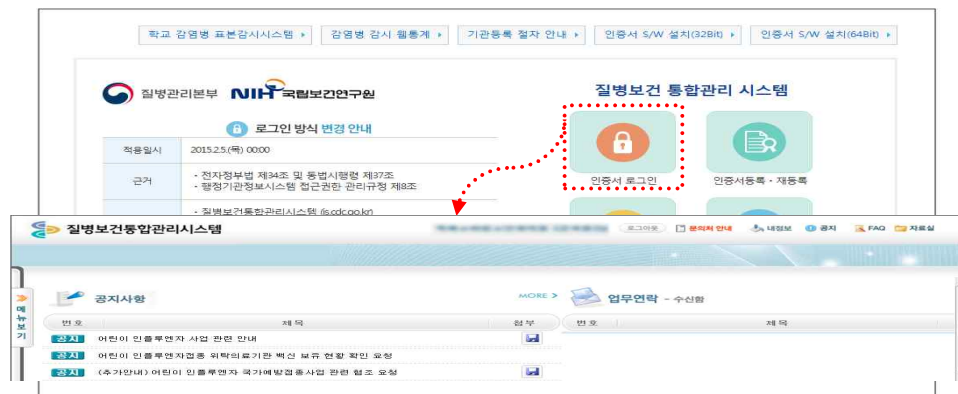
②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사용자 가입' 및 '인증서 등록'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문의: ☎1644-1407(정보화 T/F HelpDesk)



<그림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사용자가입>

- 등록된 인증서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그림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업무 권한 신청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기관(IR) 사용자 권한 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관리업무 사용자 권한’ 신청 절차

메뉴보기 → 권한/부가정보관리 → 예방접종업무 권한 상태 조회 → 승인기관(관할 보건소) 선택 →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 → 권한승인 후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메뉴 클릭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가능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완료 후 관할 보건소에서 참여 의료기관 승인 가능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권한/부가정보관리’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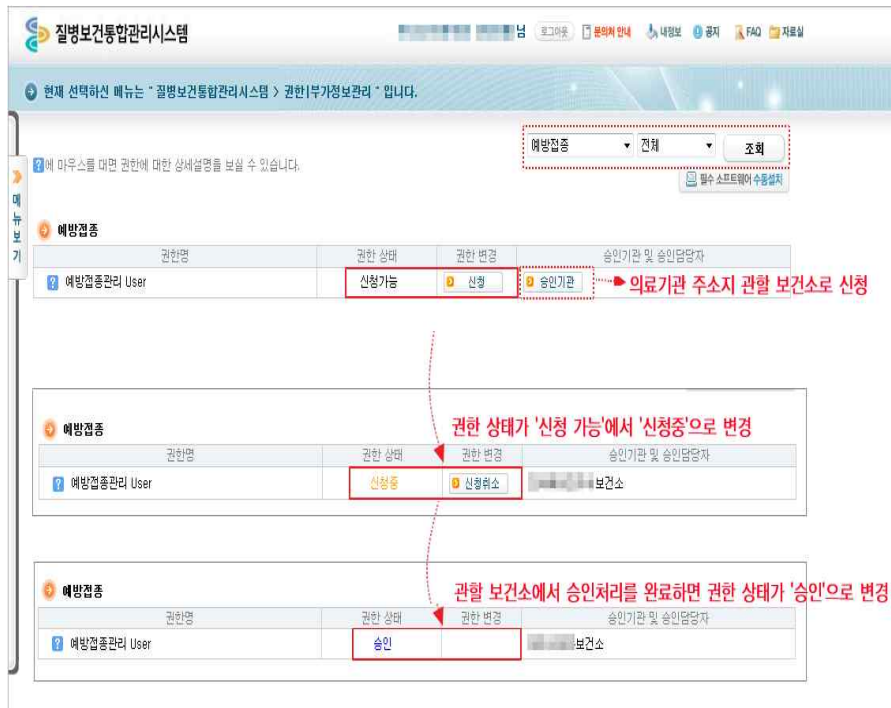
<그림 3.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1)>

- ② ‘권한 및 부가정보 관리’메뉴의 권한그룹선택에서 ‘예방접종’ 선택 또는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항목’에서 예방접종관리 User의 ‘승인기관’을 클릭하여 관할 보건소를 선택한 후 ‘권한 신청합니다.’

* 보건소에서 권한신청을 승인하면 권한상태가 ‘신청중’에서 ‘승인’으로 변경됨



<그림 4.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2)>



<그림 5.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3)>



<그림 6.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승인 후 메뉴>

③ ‘예방접종관리’ 메뉴 클릭하여 의료기관의 부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가정보: 기관 종별구분, 관할보건소, 사용 의료정보시스템명,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기관 E-mail, 핸드폰번호 등

●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전자계약

-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승인’ 후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에 필요한 서류 제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계약신청(어린이)메뉴에서 신청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에서 ‘계약신청’ 메뉴의 ‘기관정보’에서 의료기관 인증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를 등록합니다.

<그림 7.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승인요청-기관인증서 등록>

- ③ 위탁계약시 필요한 서류를 등록합니다.

<그림 8.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승인요청(3)-계약신청>

- 등록절차: ① 의료기관 기본정보 및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 ②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등록 → ③ 통장사본 이미지파일 업로드 → ④ 교육과정 이수증의 수료번호(10자리) 입력 및 검증 후 저장 → ⑤ 확인증 등록 버튼 클릭 후 의료기관에서 시행중인 백신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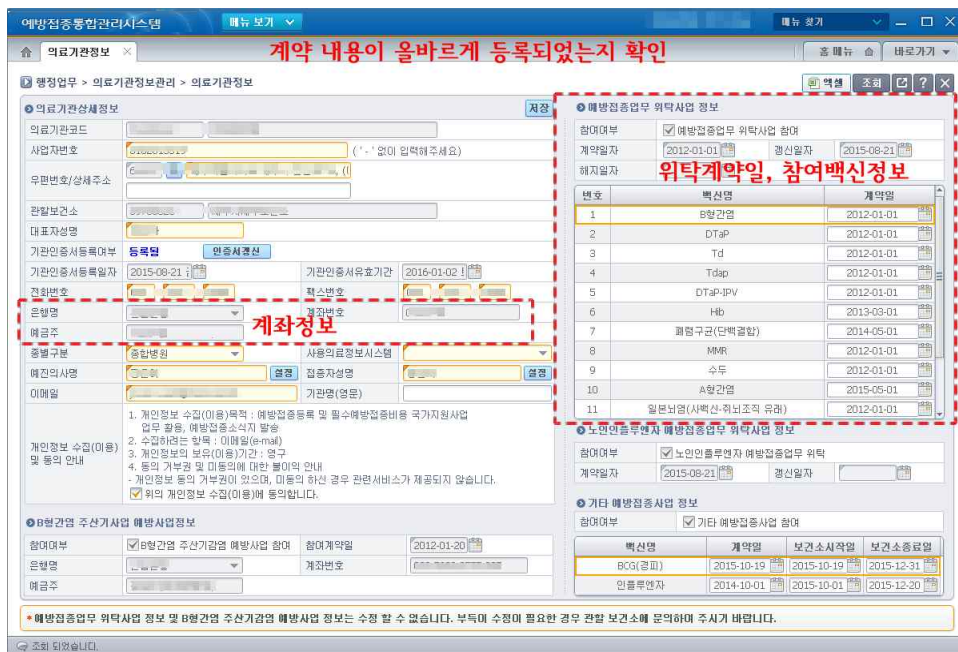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도매상 협약서 사본 이미지파일 추가등록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확인증' 등록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정보 정보 확인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완료한 의료기관(서면계약기관 포함)은 다음 절차에 따라 위탁계약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단, 서면계약기관은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승인 이후 확인 가능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인터넷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상단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에서 확인

※ 위탁사업 정보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관할 보건소에서만 수정 가능



계약정보

1. 개인정보 수집(이동)목적 : 예방접종등록 및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
 2. 업무 활용, 예방접종소식지 발송
 3. 수집하려는 항목 : 이메일(email)
 4.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영구
 5. 동의 거부권 및 동의에 대한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동의 거부권이 있으며, 미동의 하신 경우 관련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방접종업무 위탁사업 정보

번호	백신명	계약일
1	B형간염	2012-01-01
2	DTaP	2012-01-01
3	Td	2012-01-01
4	Tdap	2012-01-01
5	DTaP-IPV	2012-01-01
6	Hib	2013-03-01
7	파형구균(단백결합)	2014-05-01
8	MMR	2012-01-01
9	수두	2012-01-01
10	A형간염	2015-05-01
11	일본뇌염(사백산-정뇌조직 유래)	2012-01-01

노면인물류전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사업 정보

참여여부 ☒ 노면인물류전자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일자 2015-08-21
 결산일자 2015-08-21

가타 예방접종사업 정보

참여여부 ☒ 가타 예방접종사업 참여

백신명	계약일	보건소지정일	보건소종료일
BCG(결핵)	2015-10-19	2015-10-19	2015-12-31
인플루엔자	2014-10-01	2015-10-01	2015-12-20

<그림 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정보 확인>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며, 처음 접속할 경우 인터넷예방접종등록 프로그램 설치합니다.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인터넷예방접종등록 클릭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성

The screenshot shows the NIMS home page with the following sections:

- 1. 의료기관정보**: Basic information about the medical institution, including address and contact details.
- 2. 2017년 11월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 A table showing the cost reimbursement summary for November 2017. The table includes columns for vaccine type, application, completion, review, payment, reimbursement status, and reimbursement amount.
- 3. 인적정보 변경내역**: A table showing the personnel information change summary.
- 4. 예방접종등록**: A menu for vaccination registration, including a link to the national vaccination support system.
- 5. 최근 6개월간 비용상환 내역(예방접종지원사업+건강여성건강검진클러스터사업)**: A bar chart showing the cost reimbursement summary for the last 6 months (May to October 2017).
- 6. 공지사항 및 지원**: A section for notices and support, including links to various resources and documents.
- 7. 나의 주요업무**: A section for the user's main tasks, including links to various fun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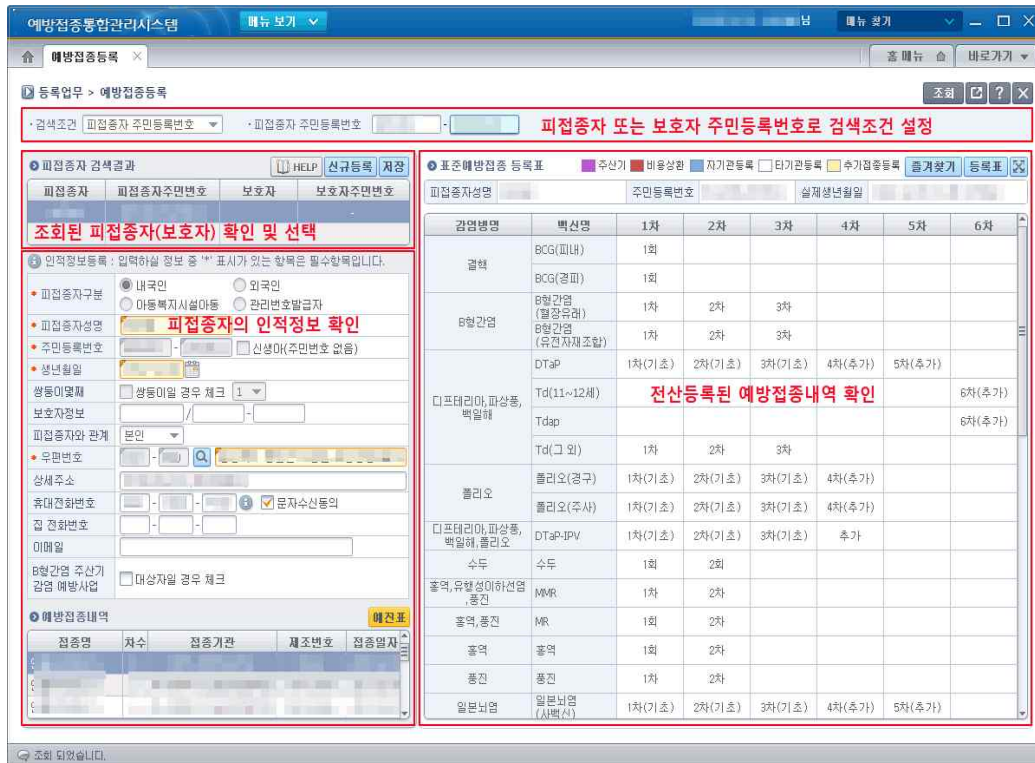
<그림 10.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홈 화면>

- ① 의료기관 기본정보 ② 당월 비용상환내역 ③ 신생아 임시번호 접종자의 인적정보 변경내역 ④ 예방접종등록 메뉴 바로가기 ⑤ 최근 6개월간의 비용상환 내역 ⑥ 공지사항 ⑦ 즐겨찾기

② 예방접종내역 등록

① ‘예방접종등록’ 메뉴로 이동

- 상단 ‘메뉴보기’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또는 좌측의 ‘예방접종등록 바로 가기’



<그림 11. 예방접종등록 화면>

② 피접종자의 인적정보를 등록하며, 인적정보가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피접종자 인적정보를 조회합니다.

- ※ 피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는 반드시 입력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의 경우 보호자(母를 원칙으로 함) 인적정보를 함께 등록합니다.
- ※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외 인적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 가능합니다.
- ※ 휴대전화번호 등록시 문자수신동의 항목을 체크할 경우 다음접종 사전 안내문자가 전송됩니다.

- ③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의 등록할 백신 차수를 선택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합니다.
※ 접종 전 반드시 과거접종내역을 확인하여 중복접종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④ 팝업창에서 ‘등록된 백신’을 선택하고, 기타정보(접종일자, 접종방법, 접종부위, 용량 등)를 확인한 후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등록 완료시 접종일자가 표기됨)

예방접종등록

① 검색된 피접종자 인적정보 확인

② 과거 접종내역 확인

③ 접종할 백신의 해당 차수 클릭

④ 백신 로트번호 확인 및 선택

⑤ 기타정보 확인 후 등록

종류	종류명	1차	2차	3차	4차	5차
일본뇌염	일본뇌염 (사백신)			3차(기초)	4차(추가)	5차(추가)
	일본뇌염 (생백신)	1차(기초)	2차(기초)	3차(추가)		
Hib	Hib			3차(기초)	4차(추가)	
페렴구균	페렴구균 (단백결합)			3차(기초)	4차(추가)	

<그림 12. 예방접종등록(접종정보)>

※ 접종내역 등록 시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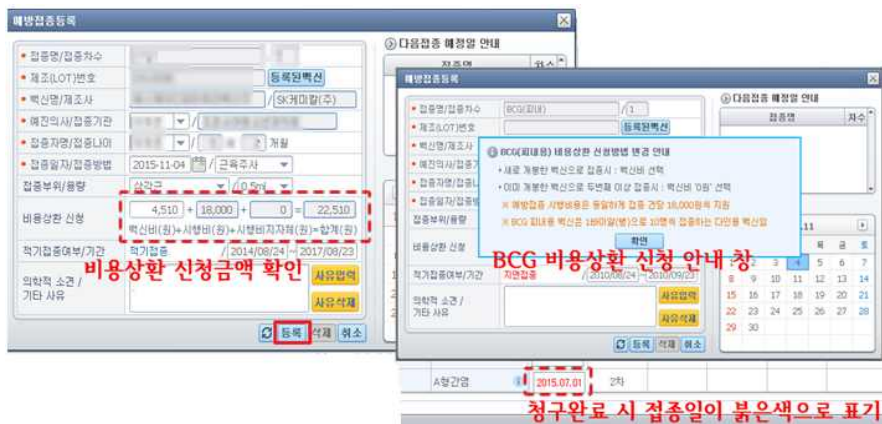
- 재접종(동일한 백신, 동일한 접종차수) 기록 등록은 해당 접종차수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 DTaP 접종이 지연된 만 7세 이상 대상자가 Td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에 ‘Td(그 외)’란에 등록합니다.

● 비용상환 신청

- ① 접종기록 등록시 생성된 팝업창에서 '비용상환 신청'항목의 비용을 확인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비용상환 신청됩니다.

※ 비용상환 신청금액은 접종별로 자동입력되나, BCG 피내용 백신(다인용)의 경우 백신을 개봉하고 첫 번째 시행한 건에 대해 백신비를 청구합니다.

※ 비용상환 신청되면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의 해당 접종기록에 빨간색 날짜로 표시됨



<그림 13. 비용상환 신청(1)>

- ②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재접종에 대한 접종기록은 해당 접종차수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중복등록하며, 타당한 의학적 소견으로 재접종할 경우 '의학적 소견'의 사유를 선택·기입합니다

※ 의학적 사유가 타당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그림 14. 비용상환 신청(2) - 의학적 소견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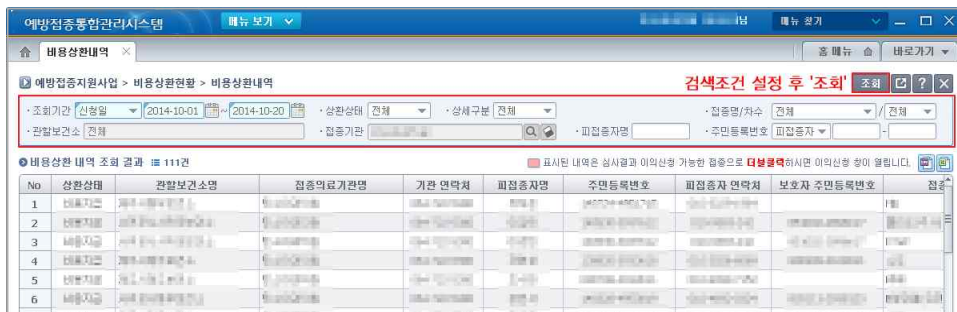
●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

- ①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비용상환내역 또는 메인 화면 좌측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5.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1)>

- ② ‘비용상환내역’에서 상환신청내역의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6.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2)>

- ③ 상환불가(분홍색으로 표시)내역의 이의신청은 해당 내역을 더블클릭합니다.

※ 이의신청은 ‘상환불가’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함(‘지급취소’건은 재심사 불가)



<그림 17.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3)-이의신청>

② 비용지급결과 확인

- ①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지급결과’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특정 보건소의 지급내역 조회는 조회 결과의 해당 보건소를 더블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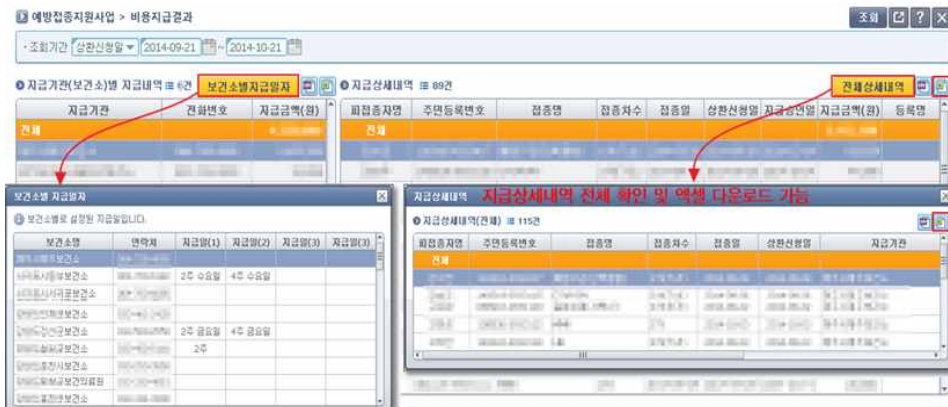
※ 지급승인일 : 보건소에서 해당의료기관에게 비용지급을 완료한 날짜



<그림 18. 비용지급결과 확인>

- ② 보건소별 비용지급일은 ‘보건소별 지급일자’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체상세내역’을 클릭하면 설정된 기간 내 지급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비용상환 청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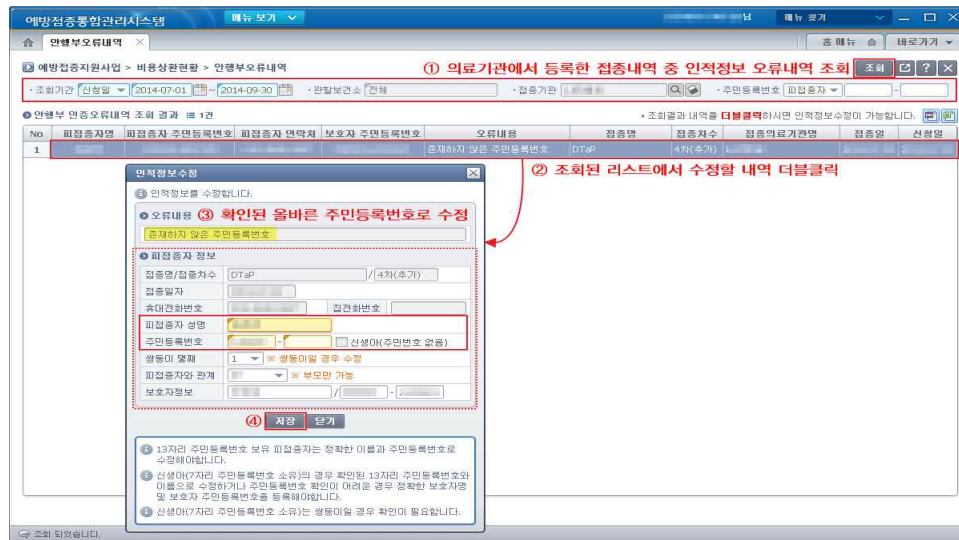
<그림 19. 보건소별 비용지급일정 및 전체상세내역 조회>

③ 주민등록번호 인증 오류내역 수정

- ①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자부오류내역’ 또는 메인 화면 우측 ‘행자부오류내역’에서 수정합니다.



<그림 20. 행자부 오류내역>



<그림 21. 오류 인적정보 수정>

다음 예방접종 문자 안내 설정

①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바로가기' → 문자알림서비스에서 다음 예방접종 문자알림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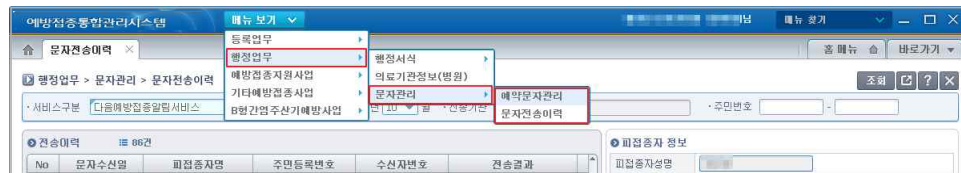
※ '예방접종등록' 메뉴에서 인적조회 후 바로가기를 통한 문자서비스 메뉴이동 시 조회된 해당 인적에 대한 문자 알림 설정가능

※ 다음 예방접종일정 미입력 시, 앞차수 접종일을 기준으로 다음 차수 접종당일(10:00 이후)에 접종시기임을 환기하는 문자가 자동 발송됨



<그림 22. 다음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1)>

- ③ 문자 발송 예약 및 전송 이력 확인은 '메뉴보기' → '행정업무' → '문자관리' → '예약문자관리', '문자전송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3. 다음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2)>

● 행정서식

- ① '메뉴보기 → 행정업무 → 행정서식'에서 예방접종 실시대장 등 행정서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림 24. 행정서식(2)-예방접종 실시대장>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 보기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정서식

조회: [비용상환내역] | 조회기간: [2014-02] | 월별 의료기관의 백신별 비용상환 신청건수, 지급원료건수, 총 지급액 확인 가능

비용상환내역 조회 결과

접종명	신청건수	지급원료 건수	총 상환금액(원)
DTaP	10	10	100,000
DTaP-IPV	5	5	50,000
수두	3	3	30,000
MbV	2	2	20,000
일본뇌염(사백신)	1	1	10,000
일본뇌염(생백신)	1	1	10,000
Hb	1	1	10,000

본 내역은 당월 2월 28일 현재까지 신청된 건에 한하여 집계된 것이며, 미접수된 비용상환내역은 없습니다.

<그림 25. 비용상환 현황 행정서식>

의료기관 정보 관리

①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에서 등록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정보에서 예진의사명과 접종자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예진의사와 접종자명은 최대 10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위탁계약 관련 사항(계좌번호, 위탁계약체결일, 위탁계약백신 등)은 보건소에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

의료기관상세정보

의료기관코드: [] | 사업자번호: [] | 우편번호/상세주소: [] | 관할보건소: [] | 대표자성명: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예진의사명: [] | 접종자명: []

예진정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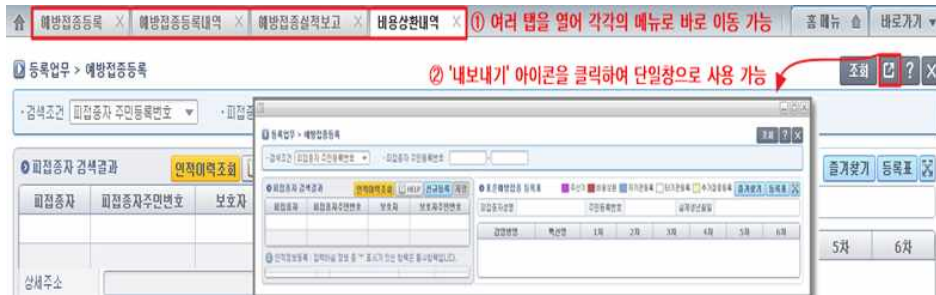
예진정보관리

1. 개인정보 수집(이름)목적: 예방접종등록 및 접종업무 활용, 예방접종소식지 발송
2. 수집하려는 항목: 이메일(email)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영구
4. 동의 거부권 및 미동의에 대한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동의 거부권이 있으며, 미동의 하신 경우 위외 개인정보 수집(이름)에 동의합니다.

<그림 26. 의료기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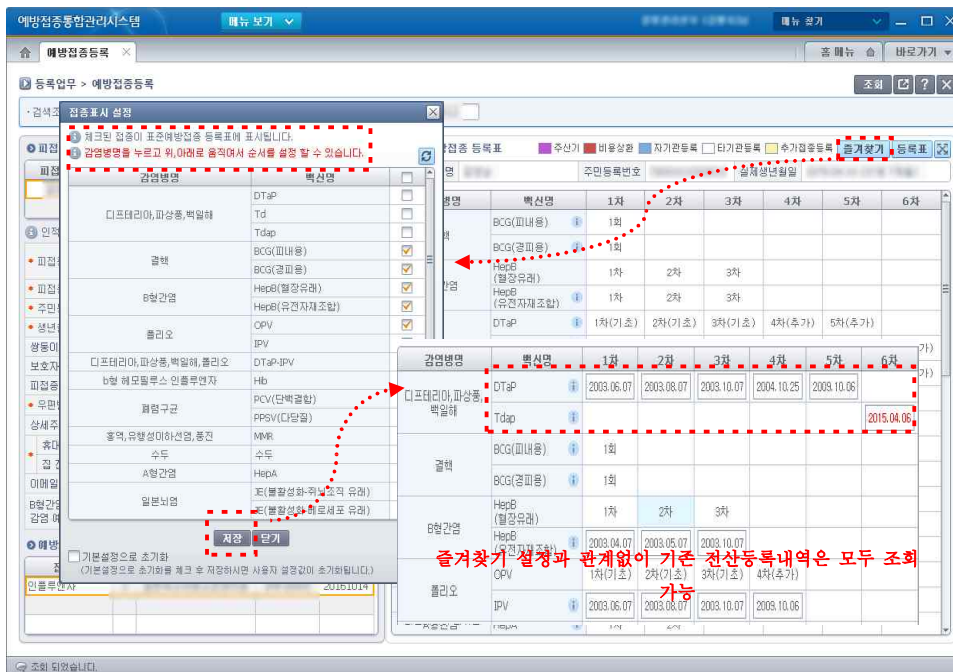
● 부가기능

- ① ①여러 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② 단일창('내보내기' 또는 'F3키')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림 27. 부가기능(1)>

- ② 실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만 설정하는 방법은 '예방접종등록→접종표시설정'에서 백신을 선택하고, 위치를 조정하면 백신 배열 순서도 변경됩니다.
※ 즐겨찾기 기능 설정과 관계없이 타 기관에서 등록한 접종내역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그림 28. 부가기능(2)>

자율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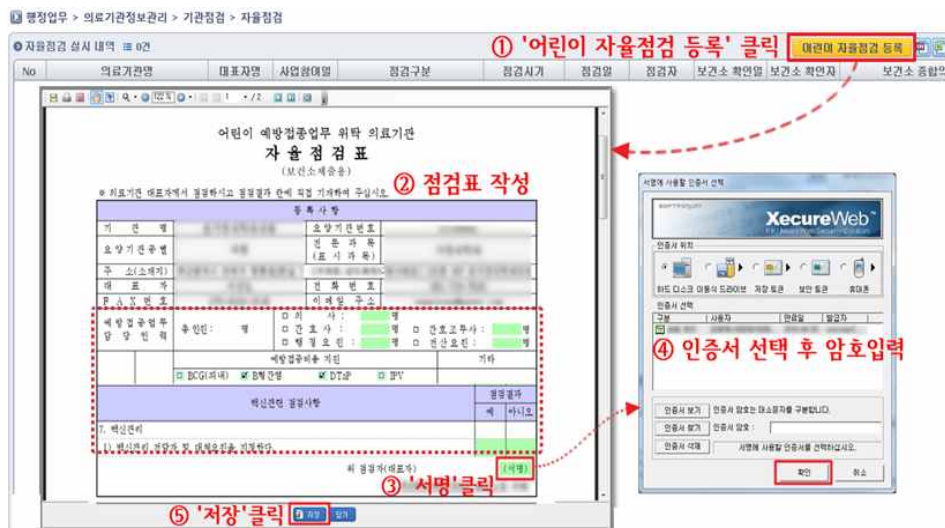
① ‘행정업무 → 기관점검 → 자율점검’ 에서 자율점검표를 작성(등록)합니다.



<그림 29. 자율점검 메뉴>

② ‘어린이 자율점검 등록’ 화면에서 점검사항 작성 후 서명(인증서)합니다

- ※ ‘저장’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 모니터 해상도를 권장설정으로 변경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서명단계에서 진행할가 시 ‘의료기관정보’에 등록된 기관인증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인증서 갱신한 후 재시도 하시기 바랍니다(p.99 참조).



<그림 30. 자율점검(1)-자율점검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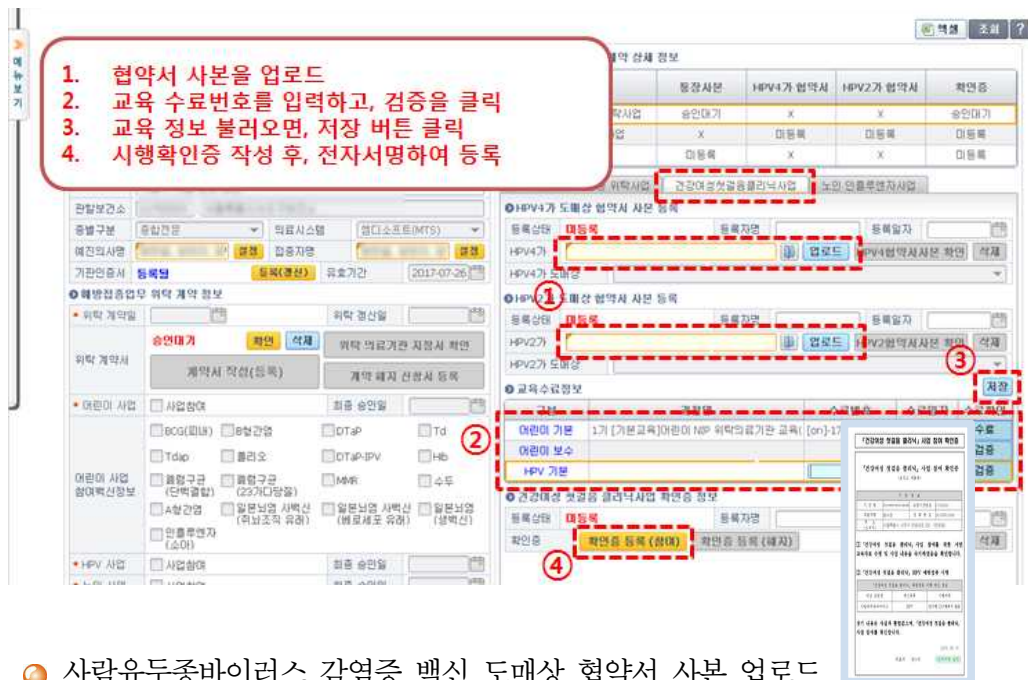
③ 자율점검 등록 후 ‘조회’를 클릭하여 등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 후 종료됩니다.

3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시스템 사용방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신청 방법(전자계약)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 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탭 클릭하여 신청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 참조



1. 협약서 사본을 업로드
2. 교육 수수료번호를 입력하고, 검증을 클릭
3. 교육 정보 불러오면, 저장 버튼 클릭
4. 시행확인증 작성 후, 전자서명하여 등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도매상 협약서 사본 업로드

-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스캔한 협약서 이미지를 선택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 협약서 사본 파일은 이미지파일(JPG, GIF, PNG)만 가능합니다.

- HPV 백신은 지정된 도매상으로 비용이 지급되므로, 사업 참여 중간에 도매상 변경이 있을 경우 HPV 협약서를 다시 제출받아 도매상 정보를 수정하여 승인해야 백신 비용이 해당 도매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교육이수내역 등록

- 교육수료정보항목에 수수료번호를 입력한 후 [검증]버튼을 클릭하여 수료여부

확인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교육이수내역을 등록합니다.

※ 신규 계약 시 기본교육 이수, 재계약시 보수 교육 이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등록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확인증 정보에 [확인증 등록(참여)]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고, 하단의 '서명 또는 날인' 클릭하여 서명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록 완료 시 '승인대기' 상태가 되며, 관할 보건소에서 승인하면 '승인완료'로 변경됩니다.

※ 계약서 및 확인증 '승인완료' 후 사업 참여 및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정보 확인

- 각 사업별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현황은 계약신청 화면 좌측 하단 내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승인일 기준으로 사업 참여와 비용상환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승인일과 참여백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신청 방법(전자 제출)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 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탭 클릭하여 신청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 참조

- 통장사본 업로드, 교육이수내역 등록,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등록

- 파일모양의 아이콘 클릭하여 통장사본을 업로드합니다.
- 교육수료정보 항목에 수료번호 입력한 후 [검증]버튼 클릭하여 수료여부 확인 후 [저장]버튼 클릭하여 교육이수내역 등록합니다.

※ 2017년 이후 NIP 기본교육 또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교육 이수내역 확인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확인증 정보에 [확인증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고, 하단의 ‘서명 또는 날인’ 클릭하여 서명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록 완료 시 ‘승인대기’ 상태가 되며, 관할 보건소에서 승인시 ‘승인완료’로 변경

※ 계약서 및 확인증 ‘승인완료’ 후 사업 참여 및 비용상환 신청 가능

5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사용방법

1. 회원가입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회원가입 및 학습자 권한신청을 합니다.

- ※ 로그인 → 메뉴보기 → 권한/부가정보관리 → 교육관리 User(학습자) 권한 신청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문의: ☎1644-1407(정보화 T/F HelpDesk)
- ※ 회원 가입시 학습자 정보로 수료증이 발급되니 성명, 직군, 면허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2. 로그인 하기

학습자 권한 승인 후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로그인(인증서) 합니다.

수강신청 및 학습하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하며, 신청한 교육과정을 '진행중인 과정'에서 선택 후 '강의실입장' 또는 상단 '수강과정'메뉴에서 선택한 후 학습합니다.

- ※ 회원가입시 소속기관 정보(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따라 수강 가능한 교육과정이 표시됨

예방접종 전문교육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교육과정입니다.

2015.08.04 노인인플루
2015.07.31 교육과정 !
2015.07.21 노인인플루
2015.02.23 (중요)1기
2014.09.03 생명관리법
2014.04.22 물리구급

진행중인 과정
1개의 수강중인 정보가 있습니다.
1기 [기본교육]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15)
15.03.01~16.02.29
강의실입장

온라인 교육과정 신청

예방접종관리과, 혈액안전감시과, 심혈관계질환관리과, 생물안전평가과, 생명과학연구관리과

1기 [기본교육]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16)
2016.03.02 ~ 2017.02.28
신청

1기 [보수교육]어린이 NIP 위탁 의료기관 교육(2016)
2016.03.02 ~ 2017.02.28
수강신청

○ 학습하기

‘강의실 입장’ 후 순차적으로 학습합니다.

※ 수강 도중 강의실 창을 닫을 경우 정상적으로 수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 교육자료는 각 과정의 ‘자료실’ 메뉴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 수료 확인하기

수강 종료 후 화면 상단의 ‘수료증 출력’ 메뉴에서 수료 확인가능합니다.



○ 문의하기

-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게시판(문고 답하기)에 문의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 교육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043-719-6848~6851



<별첨자료>

Ⅲ.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 1. 아나필락시스 정의 117
- 2. 아나필락시스 대응법 117



1 아나필락시스 정의

○ 개요

아나필락시스는 원인 물질(자극)에 노출 후 즉시 또는 수십 분내의 심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을 말하며, 피부반응(발진, 가려움증, 입술과 입안 부종), 호흡기계 증상(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심혈관계 증상(저혈압, 실신, 가슴통증, 빠른 맥박), 그리고 소화기계 증상(복통,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호흡곤란, 저혈압,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으로 사망할 수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2 아나필락시스 대응법

○ 신속 대응

- 1) 상황평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증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인은 예방접종 후 20~30분간 대기하는 동안 백신 접종부위의 부종, 발적 등 발생여부 및 전신 과민반응으로 진행되는지 관찰한다.
- 2) 도움요청: 전신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내 신속히 전파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담당의사를 호출한다.
- 3) 응급처치: 담당의사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한 뒤 간호사의 보조를 받으면서 기도확보, 산소공급,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 투여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 ※ 에피네프린은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에 필요한 1차 약제이고 호흡곤란을 완화시켜주며, 적절한 심박출량을 유지시킴
 - ※ 에피네프린 투여 후에도 증상 및 혈압 조절이 안되는 경우 10~20분 간격으로 3회까지 투여가 가능하며, 항히스타민은 발진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어 2차 약제로 사용 가능
- 4) 응급의료기관 후송: 응급처치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 까지 담당의사 주도하에 진행하고 구급차가 도착하면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센터에 후송한다.

○ 사전 준비 사항

1) 응급처치 장비 및 점검사항

- 가. 산소공급을 위한 산소탱크는 산소 충전 상태를 확인한다.
- 나. 산소마스크, 앰부백, 에어웨이는 소아용/성인용을 구분하여 준비한다.
- 나. 에피네프린과 안티히스타민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연령별 용량을 확인한다.

〈표 1. 아나필락시스 피료제(체중, 연령별 용량)〉

연령대	체중	에피네프린 근주용량	안티히스타민 (디펜히드라민 근주용량 12.5 mg/mL)
1-6개월	4-7kg	0.05mg(0.05mL)	5mg
7-18개월	7-11kg	0.1mg(0.1mL)	10mg
19-36개월	11-14kg	0.15mg(0.15mL)	15mg
37-48개월	14-17kg		20mg
49-59개월	17-19kg	0.2mg(0.2mL)	30mg
5-7세	19-23kg		
8-10세	23-35kg	0.3mg(0.3mL)	40mg
11-12세	35-45kg	0.4mg(0.4mL)	
13세 이상, 성인	45kg 이상	0.5mg(0.5mL)	50-100mg

- 2)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를 2개 이상 지정(전화번호, 위치, 후송거리 등 파악)한다.
- 3) 응급처치 대응팀(의사, 간호사, 보조원)을 구성하며, 담당자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역 할
예진의사	· 환자 상태 평가 · 기도, 호흡 확보·유지, 순환기 및 의식상태 파악 · 약제 투여 필요성 판단 및 지시 · 심폐소생술 시행 필요성 판단 및 시행 · 응급의료센터(응급실) 후송 시 동행
간호사	· 상황 전파 및 도움 요청, 약제 준비 및 투여 · 심폐소생술 시행 필요성 판단 및 시행 · 응급간호관리, 응급의료센터(응급실) 후송 시 동행(필요시)
보조원	· 의료기관 내 상황 전파, 119 신고 및 구급차 호출 · 응급의료센터(응급실) 상황 알림, 후송 보조
보건소 구급차 운전기사	· 환자 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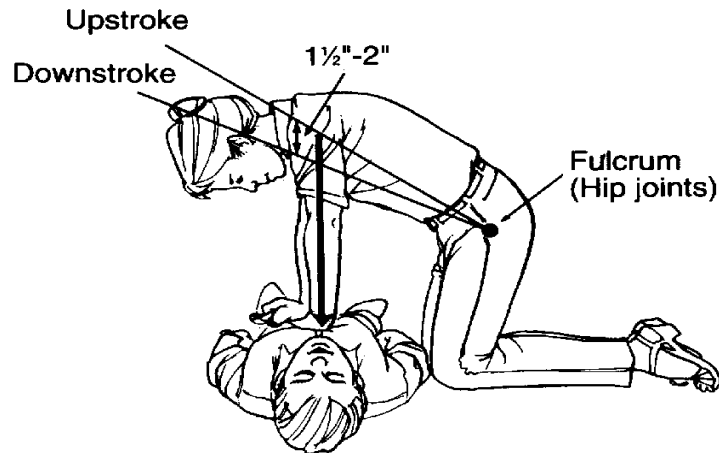
◎ 심폐소생술(필요시)

●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킨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의료인의 경우 맥박 확인(10초 이내): 성인 및 소아는 경동맥 또는 대퇴동맥으로 확인하고
영아(12개월 미만)의 경우 목이 짧고 굵으므로 위팔 동맥에서 확인

● 성인 심폐소생술 순서(C-A-B)

- 1) 흉부압박(Compressions): 손을 흉부압박 위치(양쪽 젖꼭지 연결선과 가운데 흉골이 만나는 지점)에 놓고, 30회 흉부압박을 시행(분당 100회 속도, 4-5cm 깊이)
- 2) 기도열기(Airway): “머리기울임(head tilt)-턱들어 올리기(chin lift)”
- 3) 2회 인공호흡(Breathing)
- 4)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



<그림 1. 흉부압박법>

●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 순서(C-A-B)

- 1) 흉부압박(Compressions): 손을 흉부압박 위치의 아래를 압박 위치에 놓고, 30회 흉부 압박 시행(분당 100회 속도, 4cm 깊이)

가. 소아: 한 손을 사용하여 손바닥 끝부분으로 압박

나. 영아: 한 손을 사용해 두 손가락으로 압박 또는 두 손을 사용해 엄지손가락으로 압박

2) 기도열기(Airway): “머리기올림(head tilt)-턱들어 올리기(chin lift)”

* 영아/신생아의 경우 기도를 수평으로 유지

3) 2회 인공호흡(Breathing)

4)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

● 흉부 압박 방법

연령	압박/호흡 비율	
	1인 구조자	2인 구조자
신생아	3:1	3:1
영아(<1세)	30:2	15:2
소아	30:2	15:2
성인	30:2	30:2



<부 록>

I. 관련 법령

-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123
-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126
- 3.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기준에
관한 고시 133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2017. 10.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센터장으로 한다.

1. 감염병관리센터장
2.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3.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
5.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 시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 의료기관이 책임진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 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은 p73 참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은 p75 참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2017. 9. 6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 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2. 법 제24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홍보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은 접종대상자를 진찰할 때마다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유
2.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의 중요성, 접종시기,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내역의 기록 및 보관의 중요성 및 정기·임시 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의 차이에 대한 교육·홍보
3.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작성토록 권유
- ④ 보건의료기관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주의사항 등) ①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
 2. 예방접종의 대상자가接种의 금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접종을 해서는 아니됨. 단, 금기사항이 아닌 경우를 금기사항으로 잘못 적용하여 접종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주의
 - ② 의료인은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부모나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한다.
 - ③ 보건 의료기관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1. 접종대상자의 인적사항
 2. 접종명, 접종차수, 백신제조번호, 접종일자, 접종방법 등 접종내역
 - ④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 보건 의료기관은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다만, 접종 후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한다.
 - ⑤ 보건 의료기관은 백신 구입 시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제조 연월일, 제조 회사, 제공자(공급회사 또는 국가기관), 백신제조번호, 유효기간, 구입량 및 재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종 전까지 백신의 역가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기와 방법을 사용하여 백신을 운반·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제2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준용) 이 고시는 별표 1에 규정된 접종대상 이외의 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7-6호, 2017.9.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결핵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에 접종을 권장한다.
- 백신종류
 - BCG(피내용)

② B형간염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HBsAg과 anti-HBs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인 성인 중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성인은 우선 접종권장 대상이 된다.
 - ①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 ②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받아야 되는 환자
 - ③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 ④ 주사용 약물 중독자
 - ⑤ 의료기관 종사자
 - ⑥ 수용시설의 수용자 및 근무자
 - ⑦ 성매개질환의 노출 위험이 큰 집단
- 표준접종시기
 - 모체가 HBsAg 양성인 경우 : HBIG 및 B형간염 1차 접종을 생후 12시간 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모체가 HBsAg 음성인 경우 : 생후 1~2개월에 B형간염 접종을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 모체의 HBsAg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 B형간염 1차 접종을 생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산모의 검사 결과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장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에 HBIG를 백신접종과 다른 부위에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③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무접종 해야 하는 산후조리



업자 및 종사자(의료인, 간호조무사)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생후 15~18개월, 만4~6세, 만11~12세에 3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 기초접종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접종일정

구 분		표준접종시기	접 종 간 격	백신
기초 접종	1차	생후 2개월	최소한 생후 6주 이후	DTaP
	2차	생후 4개월	1차접종후 4~8주 경과후	DTaP
	3차	생후 6개월	2차접종후 4~8주 경과후	DTaP
추가 접종	4차	생후 15~18개월	3차접종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후	DTaP
	5차	만4~6세	—	DTaP
	6차	만11~12세	—	Tdap 혹은 Td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 해당시설 근무 2주전까지 백일해 예방접종(Tdap)을 1회 접종한다.

④ 폴리오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종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단, 3차접종은 생후 6~18개월까지 접종가능)
- 만4~6세에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과 만4~6세에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⑥ 일본뇌염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쥐 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과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23개월중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한 후, 12개월 뒤에 1회 더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만6세와 만12세에 2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햄스터 신장세포 유래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⑦ 장티푸스

- 접종대상
 -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①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 ②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 ③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표준접종시기
 - Vi polysaccharide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3년마다 접종하고 2세 미만의 영아는 권장하지 않는다.

⑧ 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병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 표준접종시기
 - 매년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미만의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한다.

⑨ 신증후군출혈열

- 접종대상
 -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들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①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 ②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 ③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 표준접종시기
 -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뒤에 3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⑩ 수두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⑪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⑫ 폐렴구균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표준접종시기
 - 영유아의 경우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으로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⑬ A형간염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 해당 연도에 만 12세 이거나 만 12세에 달하게 되는 여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만 12세에 1차 접종 후 6개월 뒤에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예진표는 p76 참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2017.12.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및 보상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그 밖에 국가가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기준 및 금액) 예방접종 등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제2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적용대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록>

Ⅱ. 백신 보관과 관리

1. 백신의 보관과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 137
2. 백신 보관 시 필요한 기구 138
3. 백신의 주문과 인수, 재고 관리 시 주의사항 140
4. 백신 보관시 점검 사항 142
5. 백신 보관 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144



1 백신의 보관과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

가. 백신 접종에 관련된 지침서 준비 및 비치

백신 접종기관은 접종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침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백신 보관과 취급, 접종을 책임지는 사람과 예비 인원에 대한 연락처
- 지역 보건당국의 연락처
- 백신 생산 회사 혹은 백신 공급 업체 연락처
- 백신 보관용 냉장고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회사 연락처
- 백신 냉장고에 사용하는 온도계의 회사 연락처
- 백신 보관과 취급, 접종을 책임지는 사람과 예비 인원의 역할 분담
- 백신과 용해제의 보관 방법에 대한 정리된 내용
- 백신 보관 온도에 대한 내용
- 백신 보관 기구에 대한 내용
- 백신 보관 냉장고에서 백신의 위치
- 백신의 보관과 취급 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안
- 백신 재고 관리에 대한 내용
- 백신 이송과 백신을 회사나 백신 공급 업체에서 받을 때 절차에 대한 내용
- 백신 접종 방법에 대한 내용
- 백신 접종 후 조치 및 주사기 등의 접종과 관련된 물품의 관리에 대한 내용
- 사용 백신에 대한 설명서

나. 책임 관리자 지정

백신을 주문, 관리 및 접종하는 책임자를 정해야 하며, 책임자는 백신 관리 및 접종에 관한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새로운 백신의 도입 시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백신 책임 관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의 온도를 하루에 2회 점검하고 기록한다.
- 백신 보관이 잘못되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한다.
- 백신의 보관과 취급에 대한 기록을 한다.

- 백신 냉장고 안의 백신들 중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이 냉장고 내 앞에 위치하도록 하고 백신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 백신의 주문
- 백신 공급 업체에서 의료기관까지 백신 이송과정에 대한 검증, 백신 인수, 보관 및 관리를 책임진다.
- 백신 보관 이상 시 가장 먼저 조치를 하도록 하며, 만약 유고시에는 다른 예비 인원들이 응급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다.
- 백신 냉장고 온도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 자동 온도 조절계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절한다.

2 백신 보관 시 필요한 기구

-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 백신 보관 감시장비
- 비상 상태를 대비한 백신 임시 보관 물품
- 자가발전기 등 전원 차단시 대비 장비

가. 냉장고

1. 기종

백신 전용 냉장고(냉장고와 냉동고 분리된 것, 가정용 냉장고도 가능)를 구비한다. 냉장고문이 유리로 된 것을 사용할 경우 특히 일광에 노출시 백신의 역가가 떨어질 수 있는 생백신은 주의가 필요하다.

2. 냉장고 위치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이 없고, 벽에서 10cm 이상 및 바닥에서 2.5~5cm의 간격을 유지한다.

3. 냉장고의 온도

- 1) 백신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온도를 준수하며, 일반적으로 2~8℃에서, 5℃가 유지되도록 한다, 백신의 보관에 관한 지침은 백신설명서를 참조한다.
- 2) 냉장고의 온도 변화가 있거나, 온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 자동온도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조절한 후 30분 동안 온도를 점검한다.

- 3) 온도 점검은 최소 하루 2회 실시(아침 일과 시작전, 일과 후)하며 온도 기록지는 2년간 보관한다.
- 4) 새로운 백신 냉장고를 구입했거나 백신 냉장고를 수리 후 다시 사용할 시에는 바로 사용하지 말고 냉장고 온도를 2일 동안 측정 후 사용한다.

4. 냉장고 사용 시 주의점

- 1) 가능하면 문을 자주 열지 않는다.
- 2) 전기 콘센트도 단독으로 사용한다.
- 2) 다른 약물, 혹은 음식물과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 3) 문이 닫히는지, 도어가스킷에 새는 것이 없는지, 기밀기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이용한 온도 조절은 백신 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6. 백신 보관용 냉장고는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한다.

나. 온도계

1. (종류) 수은 온도계, 디지털 온도계, 자동온도기록장치 등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2. (위치) 냉장고 중간 부분에 두며, 벽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관리) 표준온도계를 사용하며, 표준 온도계는 매년 국가인증전문업체의 보정을 받는다. 디지털 온도계의 경우 여분의 건전지를 온도계에 부착 해둔다.
4.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에 알람이 울리는 것을 사용한다.

다. 비상 상태를 대비한 백신을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백신 보관에 갑작스런 이상이 생겼을 때 백신을 이송을 할 때 필요한 것들로 아이스팩, 아이스박스, 비닐 완충제, 여분의 온도계 등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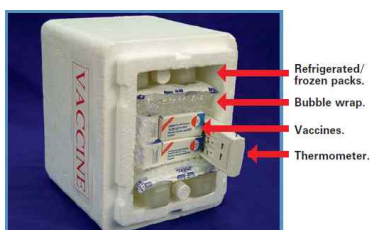
3 백신의 주문과 인수, 재고 관리 시 주의사항

가. 백신 주문 간격

1. 백신은 약 2~3개월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주문하며, 재주문은 30일정도의 여유를 둔다. 백신은 냉장고 용량에 50%정도 차지하는 것이 좋다.
2. 백신을 주문 시 빈번한 소량 주문은 지양한다.

나. 백신 인수 시 주의사항

1. 백신 제조사의 원칙에 따라서 보관 및 이송한다.
2. 온도를 유지하며 운송했는지, 적절한 온도, 운송기간 동안 저온을 유지하는 기구들(아이스팩, 완충제 등)을 확인한다.
4. 백신 운송 상자는 백신관리 책임자가 개봉하며, 책임자가 없는 경우 다른 예비 인원들이 할 수 있다.
5. 상자를 개봉한 후 주문백신의 수량, 백신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6. 백신이 물에 젖었거나, 상표가 훼손된 경우, 백신 병이나 주사기가 금이 간 경우에는 백신을 돌려보낸다.
7. 백신 운송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즉시 냉장고에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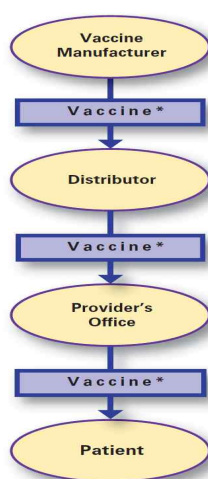


백신 회사나 공급업체에서 백신이 의료기관에 도착 시 그림처럼 온도가 제대로 보관이 되어 이송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백신이 깨져 있거나, 젖어 있거나, 상표가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백신을 인수하면 안 된다.

백신 인수는 책임자가 하도록 한다.

The Cold Chain



백신을 다른 곳에 옮길 때는 아이스 박스에 얼음을 채우고 백신과 얼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완충제를 채운 후 이송을 하여야 하며, 차량은 가능하면 냉장차를 이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때도 트렁크에 백신을 넣고 이송하면 안 된다.

<그림 1> 백신 이송을 위한 저온체계



다. 백신의 재고 관리

최소한 한달에 한번, 백신 주문을 넣기 전에 백신 재고 목록을 작성한다. 백신 재고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1. 병원에 새롭게 들어 온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의 수
2. 사용한 백신과 용해제의 수, 폐기된 백신과 용해제의 수, 손상이 있는 백신과 용해제의 수
3. 현재 보관하고 있는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의 수
4. 우선 사용해야 할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의 수
5.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의 수
6. 주문된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에서 반품을 할 수 있는 백신과 용해제의 수
7. 새롭게 주문을 해야 할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의 수

유효기간이 가장 적게 남은 백신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앞쪽으로 옮기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라. 백신 보관 일지

백신과 용해제의 도착일시, 수량, 인수자 및 점검자의 이름, 도착시의 백신과 용해제의 상태(도착 당시 백신을 보관한 용기의 온도, 백신의 손상 등), 인수한 백신의 이름, 각각의 백신의 회사이름, 백신의 종류(1인회용 백신, 다인용 백신, 프리필드 백신), 백신 제조번호(lot number), 각각 제조번호에 따른 유효기간, 인수한 백신의 수, 사용, 폐기, 손상이 된 백신의 수와 남은 수가 포함이 되도록 한다.

마. 백신 사용일지

매일 사용, 폐기, 손상이 된 백신의 수를 기록한다.

4 백신 보관시 점검 사항

가. 백신과 용해제의 보관

1. 백신 종류에 따른 특성

- 1) 불활성화 백신은 열과 냉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므로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 2) 생백신은 빛에 민감하므로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MMR, 로타바이러스, 수두 백신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쉽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동결건조 백신과 용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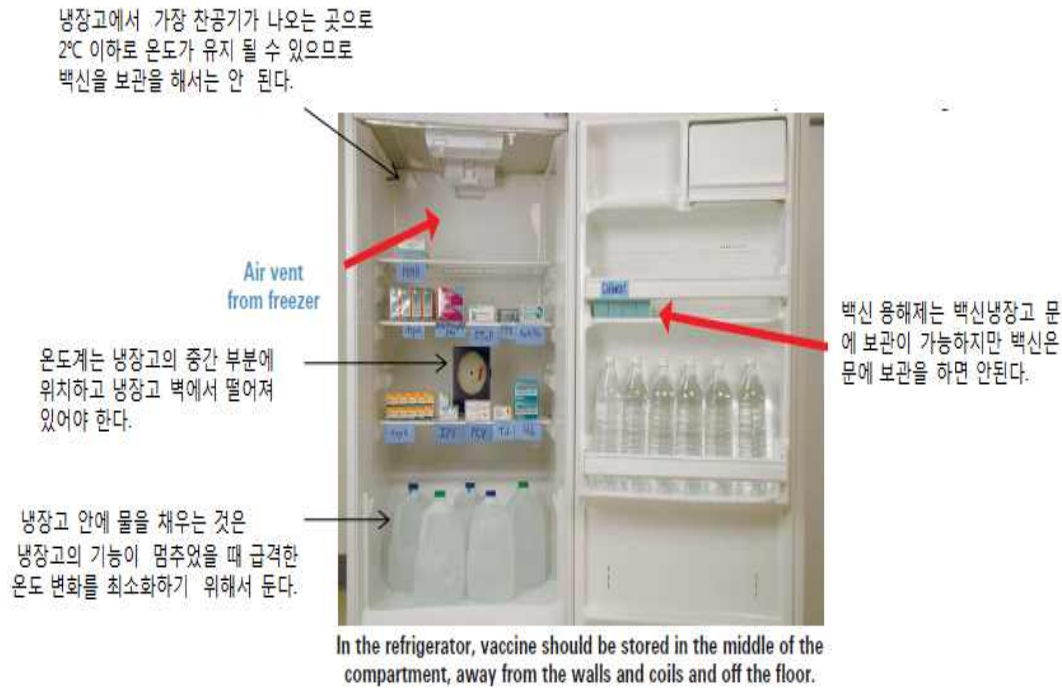
- 1) 2~8℃에서 보관하며, 온도 변화의 안정성을 위하여 5℃를 유지한다.
- 2) 용해제는 실온 및 냉장고 보관 가능하며, 냉장고 문에도 보관 가능하다.
- 3) ActHIB[®] 같은 백신은 용해제를 백신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3. 백신에 용해제 혼합 후 백신 사용

가능하면 혼합 후 즉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혼합을 할 때는 동결건조 백신 내용물이 용해제에 잘 녹도록 충분히 흔들어 주어야 한다.

4. 백신 보관 시 백신의 냉장고에서 위치, 보관 시 주의사항들

- 1) 냉장고의 온도가 위치에 따라 온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온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냉장고 공간에서 중간에 백신을 둔다.
- 2) 냉장고 벽에서 10cm를 띄워서 보관한다.
- 3) 백신 종류별로 정리하며, 백신이름을 붙여 혼란이 없도록 한다. 특히 성인용, 소아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백신은 다른 위치에 배치한다.
- 4) 백신은 유효기간 순서대로, 즉 새롭게 들어오는 백신이 가장 뒤에 위치하도록 한다.
- 5) 생백신은 빛과 열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를 요한다.
- 6) 냉장고 내의 온도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냉동고에 아이스 팩을 넣어둔다. 아이스팩은 벽 또는 문에 보관하고, 물병은 냉장고 아랫부분과 문에 보관한다.
- 7 다인용 백신은 사용을 시작할 때 백신에 사용 시작 날짜를 쓰고 유효기간이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BCG 피내용 백신은 개봉 후 4시간 이내 사용,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은 당일 사용이 원칙이므로 해당 시간이 경과한 후 백신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2> 백신 냉장고 저장물 위치

나. 냉장고 청소

1. 냉장고 코일과 모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냉장고에 있는 코일과 모터를 청소하며, 청소기간이 수분 이내일 경우 백신을 다른 곳에 옮길 필요는 없다.

2. 냉장고 내부 청소

백신을 아이스 팩이 들어있는 과 아이스박스에 옮긴 후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하며, 백신을 옮긴 후 역시 온도 점검은 계속 해야 한다.

냉장고 전원을 끈 상태에서 미지근한 비눗물로 닦은 후 물로 닦고 건조 시키고, 건조 후 전원을 켜 온도를 확인하고 백신을 냉장고에 넣는다.

5 백신 보관 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가. 취해야 하는 일반적인 조치사항들

1. 먼저 백신 보관 책임자 혹은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가 되어야 한다.
2. 백신 냉장고의 온도 측정, 잘못 보관한 시간을 측정 후 기록한다.
3. 백신 회사에 재사용여부 확인하고, 재사용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따로 보관한다.
4. 백신 보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냉동고에 있던 얼음 주머니,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보관한다. 역시 이때에도 백신 보관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한다.

나. 백신 냉장고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점검해야 할 것은?

1. 백신 냉장고의 온도가 올라가 있는 경우
 - 1) 전기 플러그가 콘센트에 정확하게 꽂혀 있는 지를 확인 한다.
 - 2) 냉장고 문이 실수로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 3) 도어가스킷이 노후가 되어서 새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한다.
 - 4) 온도계가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온도가 실제 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 5) 자동온도 조절 장치의 스위치를 확인하여 실제 온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 환기 및 온도를 낮추고 30분 동안 온도를 점검한다.
 - 6) 먼지가 있으면 전원을 끄고, 백신을 다른 냉장고 등에 옮긴 후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2. 백신 냉장고의 온도가 내려가 있는 경우
 - 1) 온도계가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온도가 실제 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 2) 자동온도 조절 장치의 스위치를 확인하여 실제 온도가 낮다고 판단이 되면 온도를 올리고 30분 동안 온도를 점검 한다.
3. 백신 냉장고가 소리가 많이 날 때
 - 1) 다른 곳에서 소리가 나는 지를 먼저 확인한다.



- 2) 냉장고의 코일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지 확인을 하고 혹시 이음새 부분에 나사가 풀어져 있는 지도 확인한다.

4. 백신 냉장고가 멈추었을 때

- 1) 전기 플러그가 콘센트에 정확하게 꼽혀 있는지 확인한다.
- 2) 자동온도조절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백신 냉장고의 문에 이상이 있을 때 조치는?

백신 냉장고 문의 도어가스킷과 문 사이의 밀폐정도를 확인한다. 만약 밀폐정도를 확인 후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교환 조치를 하도록 한다. 백신 문의 경첩이 잘못 고정되면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못하고, 도어가스킷 기능도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온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문의 기울기, 문을 닫았을 때 문의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라. 일과 중 갑자기 냉장고가 멈춘 경우(일시적인 이상)

1. 즉시 냉장고 회사에 연락을 하여 고장의 원인을 찾는다.
2.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 냉장고 온도 확인, 냉장고 멈춘 시간 등을 기록한다.
3. 백신 상태를 백신 공급회사와 상의하여 재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4. 냉장고의 온도가 유지되지만 기능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 백신 공급업체로 백신을 이송한다.
5. 일시적인 정전으로 인한 냉장고의 기능이 정지 된 경우에는, 백신 냉장고 문을 열지 말고 온도 측정을 하면서 경과를 본다. 만약 백신 냉장고 온도의 변화를 확인을 할 수 없다면 방안의 온도, 멈춘 시간, 다시 전원이 들어왔을 때 냉장고의 온도를 기록한다. 만약 권장 온도를 벗어난 경우는 즉시 백신을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관한다.
6. 백신 비상보관시 냉장고안의 온도, 방안의 온도, 다시 작동시까지의 시간, 비상 보관 시의 온도와 시간 등을 기록한 후 백신회사와 백신 재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마. 주말동안 정전이나 냉장고 기능 이상이 발견된 경우, 부적절한 백신 보관의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

1. 발견 당시 냉장고의 온도와 시간, 방안의 온도 등을 기록한다.
 2. 백신 보관 기록을 토대로 백신공급업체와 상의하여 재사용여부를 결정한다.
 3. 보관에 이상이 있었던 백신은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보관이 될 수 있는 다른 냉장고 또는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 등에 보관한다.
- 대부분 백신은 일시적인 온도 상승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생백신은 손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라도 보관상의 문제는 백신을 공급한 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부 록>

Ⅲ.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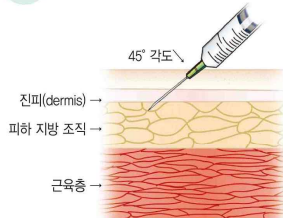
1. 어린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2018)	149
2. 백신 접종법	150
3. 각 백신간의 최소 접종간격	152
4.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153
5.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154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기준	155
7. 국가예방접종 장애요인별 지침서	156
8. 국가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침서	157
9.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별 허가내용	158
10.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건강상담 대상자용 안내문 ·	159
1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감염자관리 안내문	160
12. 국내 유통 백신 현황(2017. 10. 기준)	161
13. 2016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164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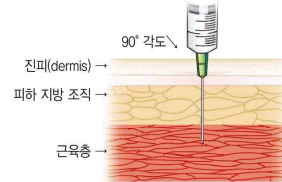
2. 백신 접종법

2 예방접종 방법

피하주사 주사부위 : 삼두근 바깥쪽 상부



근육주사 주사부위 : 대퇴부 전외측과 삼각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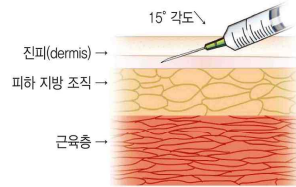


3 백신의 투여 용량 및 투여 방법

백신종류	분류	제조사/입사	제품명	Dose	경로	접종부위
결핵	약독화 생백신	(주)엑세스파마	피내용 건조 비씨지백신 에스에스아이주	1세 미만: 0.05 ml, 1세 이상: 0.1 ml	피내주사	삼각근 부위
		(주)한국백신	피내용 건조 BCG 백신	제품설명서	경피주사	제품설명서 참조
		(주)한국백신	경피용 건조 BCG 백신			
B형간염 (유전자재조합)	불활성화 백신	안센백신(주)	헤파박스	11세 미만: 0.5 ml, 11세 이상: 1.0 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SK케미칼(주)	헤파문			
		(주)LG생명과학	유박스비			
DTaP	불활성화 백신	(주)한국백신	정제디피티.코박스	0.5 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인판릭스			
Tdap	불활성화 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디피티에이피백신	0.5 ml	근육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부스트릭스			
Td	불활성화 백신	사노피파스티르(주)	아나셀주	0.5 ml	근육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SK케미칼(주)	에스케이티디백신			
폴리오	불활성화 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티디퓨어	0.5 ml	근육주사	삼각근
		(주)엑세스파마	디티부스터에스아이			
		사노피파스티르(주)	이모박스폴리오			
DTaP/IPV	불활성화 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아이피박스	0.5 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주)한국백신	코박스폴리오			
		사노피파스티르(주)	테트릭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 백신)	불활성화 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인판릭스IPV	0.5 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사노피파스티르(주)	악티브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박셈립			
페렴구균 (단백결합)	불활성화 백신	(주)LG생명과학	유히브	0.5 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한국화이자제약(주)	프리메나13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신폴로릭스			
페렴구균 (23가 다당)	불활성화 백신	사노피파스티르(주)	뉴모-23페렴구균백신	0.5 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한국MSD(주)	프로디악스-23			
MMR	약독화 생백신	한국MSD(주)	엠엠알 II	0.5 ml	피하주사	상완외측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프리오릭스			
수두	약독화 생백신	(주)녹십자	수두백신	0.5 ml	피하주사	상완외측면
		보린파마	바라-엘백신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주)녹십자	녹십자-일본뇌염백신(취 뇌조직 유래)	<취 뇌조직 유래>3세 미만: 0.5 ml, 3세 이상: 1.0 ml <베로세포 유래>3세 미만: 0.25 ml, 3세 이상: 0.5 ml	피하주사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주)녹십자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베로세포 유래)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일본뇌염백신(취 뇌조직 유래)			
	약독화 생백신	(주)글로박스	씨디.제박스(일본뇌염 생바이러스 백신)	0.5 ml		

- 영아 : 대퇴부전외측의 대퇴사두부근
- 소아와 성인 : 상완의 삼각근

 **피내주사** 주사부위 : 상완의 삼각근



백신종류	분류	제조사/수입사	제품명	Dose	경로	접종부위
A형간염	불활성화 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하브릭스	19세 미만: 0.5 ml, 19세 이상: 1.0 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사노피파스티르(주)	아박심80U소아용 아박심160U성인용	16세 미만: 0.5 ml(80 U), 16세 이상: 0.5 ml(160 U)		
		한국MSD㈜	박타	19세 미만: 0.5 ml, 19세 이상: 1.0 ml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불활성화 백신	한국MSD㈜	가다실	0.5 ml	근육주사	삼각근
		한국MSD㈜	가다실9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서바릭스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동아제약㈜	백시플루	3세 미만: 0.25 ml, 3세 이상: 0.5 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SK게미칼㈜	스카이셀플루 스카이셀플루4가			
		한국노바티스(주)	아그리팔S1 소아용아그리팔			
		(주)녹십자	플루아드 지씨플루			
			지씨플루쿼드라벨런트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백신 V			
			보령플루백신Ⅱ			
			보령플루백신Ⅲ			
		(주)LG생명과학	보령플루V테트라백신주			
			플루플러스티에프			
		(주)한국백신	코박스플루			
			코박스인플루			
			플루HA코박스			
		사노피파스티르(주)	인플루엔자 에퀴에이백신코박스			
			박씨그리프			
			플루아릭스테트라			
강티푸스	불활성화 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반트플루	0.5 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한국신도스㈜	아그리플루			
			일양플루백신			
신증후군출혈열	불활성화 백신	(주)녹십자	지로티프	0.5 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로타바이러스	약독화 생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힌다박스	0.5 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한국MSD㈜	로타리크	1.5 ml 2.0 ml	경구투여	경구
수막구균	불활성화 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로타텍	0.5 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사노피파스티르(주)	멘비오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한국MSD㈜	메낙트라	0.65 ml	피하주사	상완외측면

3. 각 백신간의 최소 접종간격

질병	백신	접종 권장시기	최소 연령	다음 접종 간격	다음 접종 최소 접종 간격
B형간염	B형간염(1차)	출생시	출생시	1개월	4주
	B형간염(2차)	생후 1개월	생후 4주	5개월	8주
	B형간염(3차) ²⁾	생후 6개월	생후 24주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DTaP(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DTaP(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12개월	6개월 ³⁾
	DTaP(4차)	생후 15~18개월	생후 12개월	3년	6개월
	DTaP(5차)	만 4~6세	만 4세	-	-
성인용 디프테리아 파상풍	Td	만 11~12세	만 7세	10년	5년
성인용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ap	만 11세 이상	만 11세	-	-
폴리오(불활성화 백신)	IPV(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IPV(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14개월	4주
	IPV(3차)	생후 6~18개월	생후 14주	3~5년	6개월
	IPV(4차)	만 4~6세	만 4세	-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 백신)	Hib(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Hib(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Hib(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9개월	8주
	Hib(4차)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	-
폐렴구균	단백결합(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8주	4주
	단백결합(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8주	4주
	단백결합(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개월	8주
	단백결합(4차)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	-
	23가 다당(1차)	-	만 2세	5년 ⁴⁾	5년
	23가 다당(2차)	-	만 7세	-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1차)	생후 12~15개월 ⁵⁾	생후 12개월	3~5년	4주
	MMR(2차)	만 4~6세	생후 13개월	-	-
수두 ⁶⁾	Varicella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4주 ⁶⁾	4주 ⁶⁾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1차)	생후 12~23개월	12개월	7~30일	7일
	불활성화 백신(2차)	생후 12~23개월	12개월	12개월	6개월
	불활성화 백신(3차)	생후 24~35개월	18개월	3~4년	2년
	불활성화 백신(4차)	만 6세	만 5세	6년	5년
	불활성화 백신(5차)	만 12세	만 11세	-	-
	약독화 생백신(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12개월	4주
	약독화 생백신(2차)	생후 24~35개월	생후 13개월	-	-
A형간염	A형간염(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6~18개월	6개월
	A형간염(2차)	생후 18개월	생후 18개월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⁷⁾	HPV(1차)	만 11~12세	만 9세	2개월	4주
	HPV(2차)	만 11~12세(+2개월)	만 9세(+4주)	4개월	12주
	HPV(3차)	만 11~12세(+6개월)	만 9세(+24주)	-	-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⁸⁾	생후 6개월 이상	생후 6개월	1개월	4주
	약독화 생백신	생후 24개월~49세	생후 24개월	1개월	4주
로타바이러스 ⁹⁾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	-

- 1) 혼합 백신(combination vaccines) 사용이 가능하다. 허가받은 혼합 백신 사용이 각 성분의 개별 접종보다 선호된다(CDC, Combination vaccines for childhood immunization: recommendat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nd the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MMWR Recomm Rep, 1999;48(RR-5):1-15). 혼합 백신을 투여할 때 최소 연령은 각 성분 백신 투여 최소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이다. 혼합백신을 투여할 때 최소 접종간격은 각 성분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중 가장 큰 값이다.
- 2) B형간염 백신 3차 접종은 2차 접종 9주 이후에, 1차 접종 18주 이후에 접종하여야 한다. 또한 3차 접종은 생후 24주 이전에 해서는 안 된다.
- 3) DTaP 3차 접종과 4차 접종 사이에 권장되는 최소 간격은 6개월 이상이다. 그러나 DTaP 3차 접종 4개월 후에 4차 접종을 하였으면, 4차 접종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 4) 23가 다당질 백신 2차 접종은 충수 폐렴구균 감염증의 위험이 높은 경우와 폐렴구균 항체 역가의 급속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권장된다.
- 5) 홍역 유행이 있고,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서 발생하는 경우,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아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생후 12개월 이전에 접종하는 백신은 표준 접종일정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는다(CDC, Measles, mumps, and rubella-vaccine use and strategies for elimination of measles, rubella, and congenital rubella syndrome and control of mumps: recommendat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MMWR Recomm Rep, 1998;47(RR-8):1-57).

- 6) 12개월~13세 미만의 소아는 수두 백신 1회 접종으로 충분하다. 13세 이상인 경우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받아야 한다.
- 7) HPV 4가 백신은 9~26세의 남성 및 여성에게 허가되어 있고 HPV 2가 백신은 9~25세의 남성 및 여성에게 허가되어 있다. 3차 접종은 2차 접종 후 24주이다. 초기 접종 이후 최소 10주가 지나서 접종할 시에는 3차 접종은 반복할 필요 없다. 4가 백신은 9~13세 소아, 2가 백신은 9~14세의 소아에게 6개월 간격 2회 접종으로 완료될 수 있다.
- 8) 9세 미만의 소아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하는 해에는 최소한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며, 다음 해부터는 1회 접종한다. 이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6개월~9세 소아들도 유행주에 따라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 결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참고한다.
- 9) 로타바이러스의 초기 접종은 생후 6주에서 14주 6일까지 투여되어야만 한다. 생후 15주 이상의 영아에게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8개월 이상의 영아에게 투여되어서도 안 된다. 1가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경우는 2회 접종하며 3차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자료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pidemiology and Prevention of Vaccine-Preventable Diseases, Hamborsky J, Kroger A, Wolfe S, eds, 13th ed, Washington D.C, Public Health Foundation, 2015]



4.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 지연시 예방접종(4개월~6세)

백신	최소 접종연령	1~2차 최소 접종간격	2~3차 최소 접종간격	3~4차 최소 접종간격	4~5차 최소 접종간격
B형간염 ¹⁾	출생시	4주	8주(1차접종 16주 후)	-	-
DTaP ²⁾	6주	4주	4주	6개월	6개월
IPV ³⁾	6주	4주	4주	6개월(마지막 접종과 최소 연령은 4세)	-
Hib ⁴⁾	6주	4주: 만 12개월 미만 1차 접종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만 12~14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만 15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4주: 현재 연령이 만 12개월 미만이고 1차 접종을 7개월 미만에 받은 경우 8주이며 12~59개월에 접종(마지막 접종): 현재 연령이 만 12개월 미만이고 1차 접종을 7~11개월에 받은 경우, 또는 현재 연령이 만 12~59개월이며 1차 접종을 12개월 미만에 받고 두 번째 접종을 15개월 미만에 받은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전 접종을 만 15개월 이상에서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만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만 12개월~만 5세 소아만 필요	-
PCV ⁵⁾	생후 6주	4주: 만 12개월 이전에 1차 접종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건강한 소아로 만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강한 소아로 1차 접종을 PCV13으로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 (PCV10은 8주 후 접종 후 종료)	4주: 현재 연령이 만 12개월 미만이며 이전 접종을 7개월 미만에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건강한 소아로 이전 접종을 7~11개월에 한 경우 (최소 12개월 이후에 접종), 또는 현재 연령이 만 12개월 이상이며 1회 이상 12개월 이전에 접종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강한 소아로 이전 접종을 만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만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만 12~59개월 소아 또는 접종 연령에 관계없이 3회 접종받은 고위험군	-
MMR ⁶⁾	생후 12개월	4주	-	-	-
수두	생후 12개월	-	-	-	-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⁷⁾	생후 12개월	7일	6개월	2년	5년
일본뇌염(생백신) ⁸⁾	생후 12개월 ⁹⁾	4주	-	-	-
A형간염 ⁹⁾	생후 12개월	6개월	-	-	-
로타바이러스 ¹⁰⁾	6주	4주	(4주)	-	-

* 지연된 예방접종이란 권장 접종시기보다 1개월을 초과하여 접종을 한 경우임.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접종부터 접종을 함

① B형간염: 3차 접종과 최소 연령은 24주임

② DTaP: 4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접종하였다면 5차 접종은 생략

③ IPV: 마지막 접종은 이전 접종과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4세 이후에 접종. 4세 이후에 3차 접종이 이전 접종과 최소 6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접종되었다면 4차 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단, 1~3차 접종이 경구용 생백신 또는 주사용 불활성화 백신 한 가지로만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4차 접종이 필요함

④ Hib: 만 5세 이상의 건강한 소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접종을 권장하지 않음

⑤ PCV: 만 5세 이상의 건강한 소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접종을 권장하지 않음

⑥ MMR: 2차 접종과 표준예방접종 시기는 만 4~6세이지만 해당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상기 최소접종간격으로 접종할 수 있음

⑦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을 4~9세에 할 경우는 4차 접종을 만 12세 이후에 실시하고 접종을 종료하며, 3차 또는 4차 접종을 10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접종을 하지 않음

⑧ 일본뇌염 생백신: 국내에서는 12개월부터 접종하나 국외에서는 약독화 생백신은 8개월부터, 재조합 키메라 바이러스 백신은 9개월에 접종을 추천함

⑨ A형간염: 접종 간격은 제품에 따라 6~18개월이며, 접종받지 않은 2세 이상 소아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⑩ 로타바이러스: 첫 접종과 최대 연령은 14주 6일이며, 15주 0일 이후에는 접종을 시작하지 않음. 접종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은 8개월 0일임. Rotarix는 2회, Rotateq는 3회 접종함

● 지연시 예방접종(7세~18세)

접종백신	최소 접종연령	1~2차 최소 접종간격	2~3차 최소 접종간격	3차~추가 최소 접종간격
Tdap/Td ⁽¹⁾	7세	4주	4주: DTap 첫 접종을 12개월 미만에 받은 경우 6개월(마지막 접종): DTap 첫 접종을 12개월 이후에 받은 경우	6개월: 첫 접종을 12개월 미만에 받은 경우
사립유두종바이러스 ⁽²⁾	9세	정기접종 간격을 지킨다		
A형간염	-	6개월	-	-
B형간염	-	4주	8주 및 1차 접종 최소 16주 후	-
IPV ⁽³⁾	-	4주	4주 ⁽³⁾	6개월 ⁽³⁾
MMR	-	4주	-	-
수두 ⁽⁴⁾	-	4주	-	-

① Tdap/Td: 기초접종 시 3회 접종 중 1회는 Tdap 백신으로 접종

② 사립유두종바이러스: 4가 백신은 9~13세 소아, 2가 백신은 9~14세의 소아에게 6개월 간격 2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음

③ IPV: 4세 이후에 3차 접종이 이전 접종과 최소 6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접종되었다면 4차 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단, 1~3차 접종이 경구용 생백신 또는 주사용 불활성화 백신 한 가지로만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4차 접종이 필요함

④ 수두: 13세 이상이면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5.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종류와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백신의 종류	초회 접종 연령	기초 접종 횟수 및 간격	추가 접종 시기
PRP T 또는 HibOC	생후 2~6개월	3회, 2개월 간격	생후 12~15개월 ¹⁾
	생후 7~11개월	2회, 2개월 간격	생후 12~15개월 ¹⁾
	생후 12~14개월	1회 ²⁾	2개월 후
	생후 15~59 ³⁾ 개월	1회 ²⁾	-

① 이전 접종 후 최소한 8주 간격

② 고위험 환자 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5세 이상에도 접종한다.

③ 침습성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소아들, 즉,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경상적혈구증, 비장 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HIV 감염, 초기 요소 보체결핍증, 특히 IgG2 아형 결핍 등의 체액면역결핍질환 환자에서는 연령에 따라 1~2회 접종한다(2회 접종 시 2개월 간격).

●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종류와 접종당시 월령에 따른 접종일정

백신의 종류	첫 번째 접종시 월령	기초접종 ¹⁾	추가접종 ²⁾ 시기 및 횟수
PCV10	생후 2 ~ 6개월	3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7 ~ 11개월	2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12 ~ 59개월	2회	-
PCV13	생후 2 ~ 6개월	3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7 ~ 11개월	2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12 ~ 23개월	2회	-
	생후 24 ~ 59개월(건강한 소아)	1회	-
	생후 24 ~ 71개월 (침습 폐렴구균 질환에 대한고위험군 ³⁾)	2회	-

① 1세 미만에 접종 시 최소 접종간격은 4주, 그 이후의 최소 접종간격은 8주임. 최소 접종연령은 생후 6주임

② 이전 접종으로부터 최소 8주의 간격을 두고 접종함

③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참고

*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되는 기저질환들)

위험군	질 환
정상면역 소아청소년	만성 심장 질환 ¹⁾ , 만성 폐 질환 ²⁾ ,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 만성 간 질환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소아청소년	경상구 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장애
면역저하 소아청소년	HIV 감염증, 만성 신부전과 신증후군, 면역억제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질환(악성 종양, 백혈병, 림프종, 호지킨병) 또는 고형 장기 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³⁾

① 특히 선천성 청색 심질환과 심부전

②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경구로 복용하는 천식환자도 포함함

③ B세포(체액면역) 또는 T세포 결핍증, 보체결핍증(특히, C1, C2, C3 및 C4 결핍증), 탐식구 질환(만성 육아종 질환은 제외)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3제2항(별표3)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이상반응 발생 가능 시간
비씨지(BCG)	1. 림프절 종창(지름 1.5cm 이상) 2. 골염, 골수염 3. 전신 파충성 비씨지 감염증 4. 국소 이상반응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6. 제1호부터 제5호로 인한 후유증	1년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기한 없음 기한 없음
B형간염	1. 아나필락시스 2. 국소 이상반응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24시간 이내 7일 이내 기한 없음 기한 없음
폴리오(주사용)	1. 아나필락시스 2. 국소 이상반응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24시간 이내 7일 이내 기한 없음 기한 없음
DTaP, Td, Tdap, DTaP-IPV	1. 아나필락시스 2. 뇌염, 뇌증 3.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4. 국소 이상반응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6. 제1호부터 제5호로 인한 후유증	24시간 이내 7일 이내 28일 이내 7일 이내 기한 없음 기한 없음
MMR	1. 아나필락시스 2. 뇌염, 뇌증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4. 만성 관절염 5. 국소 이상반응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7. 제1호부터 제6호로 인한 후유증	24시간 이내 21일 이내 7~30일 42일 이내 7일 이내 기한 없음 기한 없음
일본뇌염	1. 아나필락시스 2. 뇌염, 뇌증 3. 국소 이상반응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24시간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 기한 없음 기한 없음
수두	1. 아나필락시스 2. 뇌염, 뇌증 3. 국소 이상반응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24시간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 기한 없음 기한 없음
Hib	1. 아나필락시스 2. 국소 이상반응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24시간 이내 7일 이내 기한 없음 기한 없음
폐렴구균	1. 아나필락시스 2. 국소 이상반응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24시간 이내 7일 이내 기한 없음 기한 없음
인플루엔자	1. 아나필락시스 2.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3. 국소 이상반응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24시간 이내 28일 이내 7일 이내 기한 없음 기한 없음
A형간염*	1. 아나필락시스 2. 국소 이상반응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24시간 이내 7일 이내 기한 없음 기한 없음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1. 아나필락시스 2. 국소 이상반응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24시간 이내 7일 이내 기한 없음 기한 없음

*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지정 등 고시(별표)

7. 국가예방접종 장애요인별 지침서(의료인용)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권장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 기저질환 병력이 있을 때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서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안내하세요.

● 다문화 가정의 아이

정확한 연락처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엄마, 아빠 모두의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하세요.

엄마의 출신 국가를 물어보시고 해당 언어로 작성된 다문화 가정용 안내서를 출력해 주세요.

● 해외 거주자 및 잦은 출입국자

정확한 연락처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락처가 바뀌지 않았는지 물어보시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부모의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반드시 ‘거주한 나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자녀의 해외에서
접종기록을 전산등록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기록 전산등록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 내역 입력은 중복 접종, 접종 누락을 방지하고 미접종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접종 전 전산등록자료 및 예방접종수첩 등을 통해 반드시 과거 접종력을 확인하세요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접종하고, 접종기록은 앞차수부터 순차적으로 등록하세요.

동일차수에 재접종한 경우(접종력 불인정에 따른 재접종 등) 재접종기록은 해당 접종차수에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피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세요

★ 출생신고전 신생아의 경우 피접종자의 엄마(母)의 인적정보를 반드시 함께 등록하세요

★ 인적정보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병원 방문시마다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수정해주세요

★ ‘문자수신동의’항목을 체크하여 다음접종일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cdc.go.kr>)에서 ‘사용자 가입 및 인증서 등록’ 및 인증서 로그인 이후 예방접종
업무 권한을 신청해야 합니다.



8. 국가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침서(의료인용)

당신이 이야기하면 부모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권장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당신이 이야기하면 부모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부모들이 가장 신뢰하는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환자 및 보호자가 예방접종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진료 중 아이의 건강 및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중에 예방접종에 관한 안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줄 압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 완료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Tip!

● 미접종 내역 안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접종이 완료되었는지, 혹시 미접종 내역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미접종한 내역이 있거나 접종 시기가 된 예방접종이 있으면 접종 가능한 모든 접종을 시행하세요.

● 아이가 감기, 설사, 중이염 등 경한 질환을 앓고 있어도 접종을 시행하세요.

● 다음 예방접종 날짜를 미리 안내하고 다음 방문을 예약해 주세요.

● 보호자가 예방접종에 대하여 상담하고 싶을 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예방접종을 선택하도록 돕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담 후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필요성에 관한 안내서를 건네주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당신도 그들의 자녀의 건강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를 주도해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지가 부모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방접종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을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야 합니다.

9.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별 허가내용

제품명	수입사	효능·효과	용법·용량
가다실	MSD	● 9~26세 여성에서의 HPV에 의한 다음의 질병 예방 - HPV 16, 18형에 의한 자궁경부암, 외음부 암, 질암, 항문암 - HPV 6, 11형에 의한 생식기 사마귀 - HPV 6, 11, 16, 18형에 의한 다음의 전암성 또는 이형성 병변의 예방 * 자궁경부 상피내 선암,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1-3기, 외음부 상피내 종양 2-3기, 질 상피내 종양 2-3기, 항문 상피내 종양 1-3기 ● 9~26세 남성에서의 HPV에 의한 다음의 질병 예방 - HPV 16, 18형에 의한 항문암 - HPV 6, 11형에 의한 생식기 사마귀 - HPV 6, 11, 16, 18형에 의한 다음의 전암성 또는 이형성 병변의 예방 * 항문 상피내 종양 1-3기	● 9~26세 여성 및 남성 1회 0.5ml(근육) 0, 2, 6개월(3회) * 9~13세의 경우 2회(0, 6개월) 접종 가능
서바릭스	GSK	● 여성 - HPV 16, 18형에 의한 다음 질병의 예방 * 자궁경부암, 항문암 - HPV 16, 18형에 의한 다음의 예방 * 일시적, 지속적 감염 * 유의성이 불확실한 비정형 편평세포(ASCUS)를 포함하는 세포학적 이상 * 자궁경부 상피내종양(CIN1, 2, 3) * 외음부 상피내종양 2-3기 * 질 상피내종양 2-3기 * 항문 상피내종양 2-3기 ● 남성 - HPV 16, 18형에 의한 다음 질병의 예방 * 항문암 - HPV 16, 18형에 의한 다음의 예방 * 일시적, 지속적 감염 * 항문 상피내종양 2-3기	● 9~25세 여성 및 남성 ● 1회 0.5ml(근육) ● 0, 1, 6개월(3회) * <u>만 9~14세의 경우 6~12개월 일정으로 2회 접종가능</u> * 2회 접종 일정에서 만약, 2차 접종을 1차 접종 후 5개월 이전에 투여한 경우에는 3회 접종

10.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건강상담 대상자용 안내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여성의 비밀스러운 성장과정으로 알려진 초경,

누구와 상의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됐나요?
초경은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출발입니다.



초경은 자연스러운 성장과정 중의 일부입니다.

사춘기는 2차 성징이 발현되며 생식능력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춘기 발달과정은 유방발달 ▶ 음모와 액와모발달 ▶ 급격한 키 성장 ▶ 초경 ▶ 배란 순서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유방발육이 시작된 후 약 2~3년이 지난 후에 초경이 시작됩니다.



초경은 언제 시작하나요?

초경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만 12~13세입니다.
일반적으로 2차 성징(유방, 음모 발달)이 있으나, 만 15세까지
초경이 없거나, 2차 성징이 만 13세까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차성 무월경이 의심되므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경이후 월경은 어떤가요?

초경 후 2년까지는 약 50~80%에서 월경주기가 무배란성으로
불규칙하고, 2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규칙적인 배란주기를
갖게 됩니다. 초경 후 2년 이내라면 기다려주세요.

비정상 출혈은 어떤 경우 인가요?

초경 후 2년이 경과했는데 월경 주기가 21일 미만 혹은 45일 이상
간격이거나, 7일 이상 지속된다면 비정상출혈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출혈이 많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경통이 있어요!

월경통은 월경 주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주기적인
골반통증을 말하며, 월경을 하는 여성의 5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자궁, 난소, 혹은 골반 내에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월경기간 분비되는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월경통을 일차성 월경통으로, 골반장기의 이상에 의한 월경통을
이차성 월경통으로 분류합니다.
일차성 월경통인 경우 소염진통제를 통증이 있는
기간에 복용하면 70~90%에서 호전됩니다.
월경통 관련 진통제는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맞게 복용해야 하며,
복용 후에도 월경통이 호전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전문가를 만나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 B형간염 주산기감염 감염자관리 안내문(보호자배포용)

B형간염

- ✓ B형간염은 주로 혈액을 통해 전파됩니다.
- ✓ B형간염은 어린시기에 감염 될수록 만성화의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기에 감염된 경우 90%가 만성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B형간염에 감염되었을 경우 다양한 경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의와 상담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B형간염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야합니다.

B형간염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B형간염은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간 질환으로, 출산할 때 만성B간염 어머니에게서 아기로의 전염이 흔합니다. 대부분 출산 시 예방 처치로 면역력이 생기지만 적절한 처치를 받은 경우에도 100명 중 3명 정도는 출생 시 B형간염에 걸리게 됩니다. 만성 B형간염으로 진행이 될 경우 수십 년 후에 4명 중 1명은 간경화나 간세포암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B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B형간염은 주로 혈액이나 체액으로 전파됩니다. 대표적으로 출산 시에 엄마로부터 아기에 전파되거나,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B형간염인 사람과 성 접촉을 하거나 면도기, 주사기 등을 함께 사용할 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악수, 포옹, 가벼운 입맞춤, 기침, 대화, 수영과 같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 아이가 B형간염에 걸린 경우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B형간염 바이러스는 간 손상을 일으키고, 이것이 진행되면 간경화, 간세포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형간염으로 확인되면 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적절한 관리를 받아 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B형간염 아이와 매일 긴밀한 접촉을 하는 가족이 B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있나요?

B형간염은 함께 밥을 먹거나 손을 잡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조절되지 않는 물어뜯는 버릇이 있거나 전신 가려움증으로 피가 자주 날 경우, 출혈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선생님과 상의 후 어린이집(유치원)에 가도록 합니다. 또, B형간염이 있음을 담당선생님에게도 미리 알려져 상처가 생긴 경우에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아이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선생님에게 아이의 B형간염을 미리 알림으로써, 주사를 맞거나 혈액을 채취할 때 아이의 혈액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게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약 처방을 받을 때도 약물의 오남용을 막도록 합니다.

▶ 다른 아이들과 공동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생활수칙이 있나요?

일상적인 접촉을 하는 집단생활을 통해서 전염의 위험이 없지만, 축구, 복싱 등 상처가 생겨 피가 날 수 있는 운동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상처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양치도구나, 귀걸이와 같은 도구도 다른 아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12. 국내유통백신현황(2017. 10. 기준)

백신종류	분류	제조사	제품명	포장단위	유효기간	제조방법	원액		판매사	허가일	비고
							제조사	제조국			
BCG(피내)	생백신	(주)엑세스파마	피내용건조비브리오박신에스아이주	10mVial	18개월	원제 품수입	StatensSeruminstitut	덴마크	지사	2003-09-23	
		(주)한국백신	피내용건조BCG백신	1m/sample	24개월	원제 품수입	BCGLaboratory	일본	지사	2016-03-23	
		(주)한국백신	경피용건조BCG백신	12mg/sample	24개월	원제 품수입	BCGLaboratory	일본	지사	1993-01-12	
B형간염 (유전자 제조합)	사백신	인센백신(주)	헤파박스-진티에포주	0.5, 1.0mVial	36개월	국내제조	인센백신	한국	녹십자	2004-05-31	
			헤파박스-진티에포프리필드시린지주	1.0mVial	36개월	국내제조	인센백신	한국	녹십자	2010-08-04	
		SK케미칼(주)	헤파문주	0.5mVial	36개월	국내제조	LG생명과학	한국	지사	1998-11-10	
			헤파문프리필드시린지	1.0mVial	36개월	국내제조	LG생명과학	한국	지사	2012-04-24	
		(주)LG화학	유박스비주	0.5, 1.0mVial	36개월	국내제조	LG생명과학	한국	지사	1998-04-24	
			유박스비프리필드주	1.0mVial	36개월	국내제조	LG생명과학	한국	지사	2012-04-24	
DTaP	사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인판릭스주	0.5mVial	36개월	원제 품수입	GSK	벨기에	광동	2012-07-12	
콜리오	사백신	(주)브롬바이오파마	보림디에이피백신주	0.5mVial	24개월	원제 품수입	키에크젠	일본	지사	2014-12-17	
		사노피파스트로(주)	이모박스콜리오주	0.5mVial	36개월	원제 품수입	SanofiPasteurS.A.	프랑스	지사	2011-04-06	
DTaP-IPV	사백신	(주)한국백신	코박스콜리오프주	0.5mVial	36개월	원제 품수입	Billroth Biologicals B.V.	네덜란드	지사	2010-07-26	
DTaP-IPV/Hi	사백신	사노피파스트로(주)	티트락심	0.5mVial	36개월	원제 품수입	SanofiPasteurS.A.	프랑스	지사	2009-08-31	
Td	사백신	사노피파스트로(주)	펜탁심	0.5mVial	36개월	원제 품수입	SanofiPasteurS.A.	프랑스	지사	2016-05-08	
		SK케미칼(주)	엑스케이티디백신주	0.5mVial	36개월	원제 품수입	GSK	독일	지사	2009-10-21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티디큐어주	0.5mVial	48개월	원제 품수입	GSK	독일	보령	2005-11-23	
Tdap	사백신	(주)엑세스파마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주	0.5mVial	36개월	원제 품수입	StatensSeruminstitut	덴마크	녹십자	2010-01-07	
		사노피파스트로(주)	아다셀주	0.5mVial	36개월	원제 품수입	SanofiPasteur Limited	캐나다	한부통	2009-06-22	
MMR	생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0.5mVial	36개월	원제 품수입	GSK	벨기에	광동SK	2010-06-08	
		한국엠에스디(주)	엠엠알프주	0.5mVial	24개월	원제 품수입	MSD	미국	SK	1998-07-01	
일본뇌염	사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프리오릭스주	0.5mVial	24개월	원제 품수입	GSK	벨기에	광동	1999-08-20	
		(주)녹십자	녹십자-일본뇌염백신주	1.0mVial	18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지사	1999-11-09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0.4, 0.7mVial	36개월	원제 품수입	키에크젠	일본	지사	2013-10-25	
		(주)도광바이오파마	보림일본뇌염백신주	1.0mVial	18개월	국내제조	보림바이오파마	한국	지사	1991-09-12	
			보림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0.4, 0.7mVial	36개월	원제 품수입	키에크젠	일본	지사	2013-08-08	
	생백신	(주)클로비스	씨디.제박스	0.5mVial	18개월	원제 품수입	Chengdu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 Ltd.	중국	한부신	2012-03-07	
		사노피파스트로(주)	이모렙주	0.5mVial	36개월	원제 품수입	Sanofi Pasteur Biologicals Co.	미국	지사SK	2015-04-03	

백신종류	분류	제조사	제 품 명	포장단위	유효 기간	제조방법	원액		판매사	허기일	비고
							제조사	제조국			
수두	생백신	(주)녹십자	수두박스주	0.7mL/vial	24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지사	1999-11-09	
		보린파마	바리-엘백신	0.5mL/vial	18개월	원제 품수입	Changchun Keygen Biological Products Co., Ltd.	중국	보령/ 한미백신	1995-03-07	
대상포진	생백신	한국엠에스디(주)	조스타박스	0.65mL/vial	18개월	원제 품수입	MSD	미국	녹십자	2009-04-17	
장티푸스	사백신	(주)모글바이오파마	지르티포주	0.5mL/vial	20개월	원제 품수입	ATVD-TEAM	러시아	지사	1992-12-09	
신증후군 출혈열	사백신	(주)녹십자	한티박스	0.5mL/vial	24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지사	1999-07-02	
Hib	사백신	사노피 파스퇴르(주)	악티브주	0.5mL/vial	36개월	원제 품수입	Sanofi Pasteur SA	프랑스	지사	2002-07-26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바생힐	0.5mL/PFS	36개월	원제 품수입	GSK	이탈리	광동	2009-03-18	
		(주)LG화학	유히브주	0.5mL/vial	36개월	국내제조	LG생명과학	한국	지사	2010-08-10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하브릭스주	0.5, 1.0mL/PFS	36개월	원제 품수입	GSK	벨기에	광동	1997-04-09	
A형간염	사백신	사노피 파스퇴르(주)	아박스800소아용주	0.5mL/PFS	36개월	원제 품수입	Sanofi Pasteur SA	프랑스	지사	2009-07-18	
		사노피 파스퇴르(주)	아박스1600성인용주	0.5mL/PFS	36개월	원제 품수입	Sanofi Pasteur SA	프랑스	지사	2011-11-04	
		한국엠에스디(주)	박티프리필드시린지	0.5, 1.0mL/PFS	36개월	원제 품수입	MSD	미국	SK	2013-04-22	
		한국엠에스디(주)	박타주	0.5, 1.0mL/vial	36개월	원제 품수입	MSD	미국	SK	1999-04-10	
폐렴구균 (단백결합)	사백신	한국화이자제약(주)	프리메너13주	0.5mL/PFS	36개월	원제 품수입	Pfizer	미국	한미백신/ 한미약품	2010-03-19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신폴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36개월	원제 품수입	GSK	벨기에	광동	2010-03-26	
폐렴구균 (23가당량)	사백신	사노피 파스퇴르(주)	뉴모-23폐렴구균백신주사	0.5mL/PFS	24개월	원제 품수입	사노피 파스퇴르	프랑스	지사/ 한미약품	2002-05-20	
		한국엠에스디(주)	프로디악스-23	0.5mL/vial	24개월	원제 품수입	MSD	미국	SK	2000-12-15	
HPV	사백신	한국엠에스디(주)	기다실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36개월	원제 품수입	MSD	미국	SK	2007-08-17	
		한국엠에스디(주)	기다실9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36개월	원제 품수입	MSD	미국	지사	2016-01-25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48개월	원제 품수입	GSK	벨기에	보령	2009-07-03	
		한국엠에스디(주)	로타텍액	2.0mL/tube	24개월	원제 품수입	MSD	미국	SK	2007-06-22	
로타 바이러스	생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로타릭스프리필드	1.5mL/PFS	36개월	원제 품수입	GSK	벨기에	광동	2008-03-07	



백신종류	분류	제조사입사	제품명	포장단위	유효 기간	제조방법	원액		판매사	허가일	비고
							제조사	제조국			
인플루엔자	사백신	동아제약(주)	백시폴루4주사액 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12개월	원액수입제조	시노피 파스퇴르	프랑스	자사	2017-06-20	4가
			스카이셀폴루프리필드시린지	0.25,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SK(케미칼)	한국	자사	2014-12-26	
		SK(케미칼)주	스카이셀폴루4가 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SK(케미칼)	한국	자사	2015-12-24	4가
			보령폴루백신 V 주	0.25,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자사	2009-08-25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폴루백신 11주 - 11F 주	0.5mLPFS	12개월	원액수입제조	시노피 파스퇴르	프랑스	자사	2014-06-27	
			보령폴루 V 테트라백신 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자사	2016-07-19	4가
			보령폴루 V 테트라백신 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자사	2017-06-20	4가
			아그리폴스 1 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12개월	완제 풀수입	시큐러스	이테리	보령	1994-06-03	
			소아용 아그리폴 프리필드시린지	0.25mLPFS	12개월	완제 풀수입	시큐러스	이테리	보령	2011-05-12	
			폴루아드	0.5mLPFS	12개월	완제 풀수입	시큐러스	이테리	보령	2009-05-26	
	(주)녹십자	지씨폴루프리필드시린지 주	0.25,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자사	2009-07-22		
		지씨폴루쿼드리밸런트 프리필드시린지 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자사	2015-11-26	4가	
		(주)LG생명과학	폴루폴러스티에프 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자사	2009-08-25	
			코박스폴루PF 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자사	2009-09-15	
	(주)한국백신	코박스인폴루PF 주	0.25,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자사	2014-07-04		
		코박스폴루4가PF 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자사	2017-07-19	4가	
		코박스인폴루4가PF 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자사	2017-06-20	4가	
		박씨그리프 주	0.25, 0.5mLPFS	12개월	완제 풀수입	Sandoz Pasteur S.A	프랑스	자사/ 한독	2008-06-23		
	시노피 파스퇴르(주)	박씨그리프트리 주	0.5mLPFS	12개월	완제 풀수입	Sandoz Pasteur S.A	프랑스	자사/ 한독	2017-06-20	4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폴루아리스테리 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12개월	완제 풀수입	GSK	독일	보령/ 유엔행	2014-12-26	4가	
일양폴루백신 프리필드시린지 주		0.25,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자사	2013-08-08			
일양폴루백신 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자사	2015-02-24			
테라텍트 프리필드시린지 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자사	2016-09-09	4가		

13. 2016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 백신별 예방접종률

- 예방접종 대상자는 2013년 출생아 438,982명이며, 만3세(생후 36개월)까지 권장하는 예방접종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명, %)

구 분	BCG 결핵	HepB B형간염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 폴리오	Hib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MM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Var 수두	JE 일본 뇌염
접종자	429,305	427,290	422,372	428,620	417,184	429,415	428,174	406,760
예방접종률	97.8	97.3	96.2	97.6	95.0	97.8	97.5	92.7

* HepB : B형간염(HepB) 정기접종 3회를 모두 완료한 경우

DTaP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정기접종 4회를 모두 완료한 경우

IPV : 폴리오(IPV) 정기접종 3회를 모두 완료한 경우

Hib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정기접종 4회 또는 따라잡기접종 1~3회를 모두 완료한 경우

JE :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 3회 또는 일본뇌염 약독화생백신 2회를 모두 완료한 경우

□ 예방접종 연령시기별 예방접종률

- 생후 12개월까지 예방접종(5종, 총 13회)을 모두 접종한 아동은 95.9%임
- 생후 24개월까지 예방접종(7종, 총 17회)을 모두 접종한 아동은 92.7%임
- 생후 36개월까지 예방접종(8종, 총 19~20회)을 모두 완료한 아동은 89.2%임

(단위 : 명, %)

구 분	생후 12개월	생후 24개월	생후 36개월
접종자	420,860	406,838	391,759
예방접종률	95.9	92.7	89.2

* 생후 12개월 미만 : BCG 1회, HepB 3회, DTaP 3회, IPV 3회, Hib 3회(따라잡기 접종자의 경우 1~2회)를 모두 완료한 아동

* 생후 24개월 미만 : BCG 1회, HepB 3회, DTaP 4회, IPV 3회, Hib 4회(따라잡기 접종자의 경우 1~3회), MMR 1회, 수두 1회를 모두 완료한 아동

* 생후 36개월 : BCG 1회, HepB 3회, DTaP 4회, IPV 3회, Hib 4회(따라잡기 접종자의 경우 1~3회), MMR 1회, 수두 1회, 일본뇌염 3(2)(불활성화백신 3회, 약독화생백신 2회)를 모두 완료한 아동

* 기타 상세한 현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정책사업 → 예방접종 →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보건·사회·복지 → 보건 → '전국예방접종률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 록>

IV. 민원상담 사례집

1. 국가예방접종사업	167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189
3.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195
4. 이상반응 관리	197



I 국가예방접종사업



일반원칙

Q 1.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접종이 지연된 경우 처음부터 재접종해야 하나요?

A 1. 처음부터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접종차수부터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합니다.
하지만, 표준접종간격보다 길어지면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지연된 예방접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종받도록 합니다.

Q 2. 권장되는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일찍 접종한 경우 재접종해야 하나요?

A 2. 최소접종연령과 최소접종간격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재접종해야 합니다.
생백신과 생백신은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최소 4주간의 간격을 두고 접종하며, 동시접종 시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고, 국소 반응을 구별하기 위해 주사 부위는 적어도 2.5 c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합니다.
*최소접종간격 또는 최소접종연령에서 4일 이하의 오차는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으로 접종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Q 3. 만 6세 아동으로 접종을 완료했지만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재접종을 하려고 할 때 얼마의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하나요?

A 3. 불활성화 백신은 백신에 따라 이식 후 6개월~12개월에 시작하고, 생백신은 24개월 이후에 환자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시 접종합니다. 면역학적 판단 기준은 (1) 최근 3개월 이내에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면서, (2) 이식편대숙주병이 없고, (3) 앞서 접종받은 불활성화 백신에 대하여 적절한 면역반응을 보인 경우입니다.

Q 4.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이전에 접종한 백신을 재접종해야 하나요?

A 4.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항암치료 또는 방사능 치료 이전에 접종했던 백신은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 중 면역저하상태에서 접종한 불활성화 백신은 면역기능이 회복된 이후 재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MMR, 수두와 같은 약독화 생백신은 체내에서 백신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증식하므로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치료 후 일정 기간 간격(최소 3개월)을 두어야 합니다.

Q 5. 질병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 접종을 할 수 없나요?

A 5. 국소 스테로이드를 피부에 도포하는 경우나 기관지에 분무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등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생백신 및 불활성화 백신은 접종이 모두 가능합니다. 전신적인 스테로이드 투여시는 불활성화 백신의 접종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량스테로이드(프레드니손 2mg/kg/일에 해당하는 역가 이상, 또는 체중이 10kg 이상 소아에서 20mg/일에 해당하는 역가 이상)를 투여받는 사람은 생백신 접종을 받으면 안되며,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하고 최소 1개월 이후 생백신을 접종합니다.



사업운영 총괄

Q 1. 출생신고 전 신생아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p.20 참조)

A 1.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 전 신생아의 경우 임시 신생아번호(생년월일 및 성별)와 함께 보호자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은 보건소에서 보호자 인적 확인 후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접종가능합니다.

※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아동번호(의료급여 관리번호)를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아동번호 미발급 시설아동은 시설아동번호 발급 시까지 관리번호로 접종

Q 2. 외국인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p.28 참조)

A 2.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외국인등록 면제자 포함)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3개월이상 장기체류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합니다.

Q 4. 모든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4. 지자체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5. 백신별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p.31 참조)

A 5.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행정지원 → 공지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 알림 → 공고/공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6.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A 6. 위탁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예방접종비용은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서 상환심사 후 지급합니다.

Q 7.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p.14 참조)시스템 등록방법 p101~103참조

A 7.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시 자동으로 비용상환 신청되며,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에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약 1일 소요) 후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접수, 심사 후 지급합니다.

* 백신제조번호 미등록 등 불완전 접종내역은 비용상환 신청 불가

Q 8. 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상환 신청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p.15 참조)

A 8. 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상환 신청기한은 2015년 폐지되었으나, 접종기록이 등록되지 않아 중복접종이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접종 당일 전산 등록 및 비용상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등록 한 의료기관에 비용지급

Q 9. (의료기관) 비용상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A 9. 보건소의 비용상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환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 상환불가 내역을 더블 클릭 후 '이의신청 팝업창'에 이의 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하며, 이의신청된 내역은 보건소에서 확인 후 재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Q 10.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과거 접종력이 없고, 보호자도 기억을 못해 접종을

하였으나, 나중에 보호자의 예방접종수첩 등으로 접종력을 확인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10. 접종 당시 전산시스템에 접종기록이 등록되지 않은 중복접종의 경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다만, 예방접종기록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 전 예방접종수첩 유무 등을 확인하여 중복접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11.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이라는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p.23 참조)

A 11.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는 조혈모세포 공여자(기증자)를 불문하고 이식 후 재접종해야하므로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Q 12. 백혈병 등의 혈액종양 또는 고형종양으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재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12. 일반적으로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이전에 접종 받았던 백신을 재접종이 불필요하나, 면역저하 상태 동안 접종한 불활성화 백신의 경우는 면역기능이 회복된 이후에 재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이 필요한 경우 비용상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의학적 소견에 의한 재접종은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백신별 비용상환 심사기준 및 실시기준

1. 결핵(BCG)

Q 1. BCG 접종이 지연된 경우 TST 검사비용도 지원되나요?

A 1. 생후 3개월 이상 접종이 지연된 경우 결핵균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가 필요하나, 검사비용은 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Q 2. BCG 예방접종 후 반흔이 없는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A 2. BCG를 접종하였으나 반흔이 없는 경우 재접종이 필요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재접종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Q 3. BCG(피내용) 접종 시 바늘이 빠져 백신이 흐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3. 같은 부위에 권장 용량을 주입합니다. 접종부위를 달리 할 경우 반흔이 이중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같은 부위에 접종하고, 특별한 간격을 띄우지 않고 접종 당일 재접종을 합니다.

Q 4. B형간염 주산기 감염대상자의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HBIG) 투여 후 얼마의 간격을 두고 BCG를 접종해야 하나요?

A 4. HBIG와 BCG 접종 간에 특별한 간격이 필요하지 않아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추어 접종합니다.

신생아에게 HBIG 투여 후 BCG 백신을 접종했을 때, BCG 백신의 효과가 감소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간격을 두고 접종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BCG백신은 혈액 함유제제와의 투여간격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Q 5. 해외에서 귀국한 13개월 영아로, MMR과 수두 접종 후 얼마의 간격을 두고 TST 검사를 해야 하나요?

A 5. MMR과 수두 접종일로부터 최소 4주 이상 간격을 두고 TST 검사 후 결과에 따라 접종을 실시합니다. 홍역 생백신의 경우 이론적으로 TST의 반응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MMR과 동시에 실시하거나 또는 홍역 백신 접종 후 최소 4주가 지난 후에 TST를 시행합니다. 참고로 TST 시행 후 MMR 등의 생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는 특별히 지켜야할 간격은 없습니다.

2. B형간염(HepB)

Q 1. B형간염 기초접종 후 항체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재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1. 기초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은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다만, B형간염 고위험군(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 받아야 하는 환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등) 등 의학적 소견으로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른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추가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며, 추가 접종 시 발생하는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Q 2. 미숙아의 B형간염 4회 접종비용은 상환되나요?

A 2. HBsAg 상태를 알 수 없거나, 양성인 산모에게서 37주 미만에 태어난 2kg 미만의 미숙아에게 실시한 출생 후 12시간 이내 B형간염 접종은 접종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생후 1개월부터 3회 접종을 권고하므로, 권장하는 총 4회의 접종비용은 모두 상환가능합니다.

※ 접종기록 등록 시 의학적 소견을 기입하고, 접종일자 순으로 등록(1차에 두 번 등록: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 → 추가등록)합니다. (p101 ② 참조)

Q 3. 과거 접종력이 없는 만 11세 아동에게 B형간염 접종 시 지원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3. 2018년부터 11세 이상 지연접종자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1.0ml 백신으로 접종하며, 1.0ml 백신비용을 상환합니다.

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Td, Tdap)

Q 1. 만 4세 된 아이가 DTaP 4차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접종일정과 비용상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1.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4차 접종을 실시하고, 5차 접종은 생략합니다. 비용상환은 해당 접종차수(DTaP 4차)에 접종내역을 등록하고 비용상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접종은 만 11~12세에 Tdap 또는 Td 백신으로 추가 접종합니다.

Q 2. 만 9세 된 아이가 DTaP 접종을 받은 적이 없다면 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 가능한가요?

A 2.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Td 백신으로 3회 접종(0, 1, 6개월 간격)을 완료하되, 이 중 1회는 Tdap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Td 접종은 <Td(그외)>에 순차적으로 등록하고, 3회 접종 중 1회를 Tdap으로 접종한 경우 해당 접종기록은 <Tdap-6차>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Q 3. 만 4~6세 DTaP 5차를 접종하지 못한 소아가 만 7세 1개월에 내원했을 경우



비용상환 되나요?

A 3. DTaP 추가접종이 지연된 만 7세 이상 소아는 Td 백신을 접종하며, 접종내역은 <Td(그외)-1차>에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합니다.

Q 4. 생후 18개월에 DTaP 4차를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고 4차(추가)에 등록했습니다. 비용상환 받을 수 있나요?

A 4. DTaP 4차 권장 접종시기에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IPV 접종력은 4차접종의 최소접종연령(만 4세)가 준수되지 않아 유효한 접종이 아니며,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Q 5. DTaP 3차 접종일로부터 5개월 후 4차를 접종한 생후 18개월 아동의 경우 재접종해야 하나요?

A 5.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DTaP 3차와 4차의 최소접종간격은 6개월이나,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후에 4차 접종을 실시한 경우 재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4개월 이내 접종은 무효가 되므로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이 때 디프테리아 과상풍 함유 백신은 너무 많이 접종할 경우 접종부위 림프절에 국소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 7세 이전에 총 6회를 초과하여 접종하지 않도록 이 후 접종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Q 6. DTaP 단독백신으로 1차 접종 후 DTaP-IPV 혼합백신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한가요?

A 6. DTaP 백신은 제조사마다 백신 제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접종(1~3차)은 동일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DTaP 1차 기초접종 시작을 단독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이전에 접종한 백신과 동일한 백신으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하도록 합니다. 추가접종(4차, 5차)은 교차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 제조사의 백신을 백신 수급 부족, 유통의 어려움 등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차접종을 할 수 있으나 이전과 동일한 제품을 접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단, 동일 제조사의 백신인 GSK의 DTaP(인판릭스)와 DTaP-IPV(인판릭스-IPV)는 교차접종 가능

Q 7. Tdap 백신의 최소접종연령(만 11세)보다 이르게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7. 비용상환 기준에 따라 최소접종연령 이전에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7~10세 소아가 DTaP 기초접종 3회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백일해 유행상황 등에서는 백일해 방어면역 불충분을 인정하여 Tdap 백신 접종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접종내역 전산등록 시 의학적 소견을 입력하여 비용상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8. Tdap(또는 Td) 백신 6차 추가접종 시 접종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권장 접종간격보다 이르게 접종을 시행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8. Td(또는 Tdap) 6차 추가접종 시 직전 접종한 DTaP 백신과의 접종간격은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2013년 제2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13. 11. 16)

Q 9. 만 6세 11개월에 Td 백신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이 경우 접종력이 유효한가요? 비용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A 9. Td의 최소접종연령이 만 7세이므로 해당 연령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시행한 이른접종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따라서 잘못 접종한 날로 해당 차수의 최소접종간격 이후에 접종가능한 백신으로 재접종합니다.

Q 10. DTaP 5차 접종이 지연된 만 7세 아동이 Td가 아닌 Tdap으로 접종했을 경우 Td로 재접종해야 하나요?

A 10.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Tdap의 최소접종연령이 만 11세이나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독소이드가 쌓이면 이상반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10년 후에 Td로 접종합니다.

4. 폴리오(IPV)

Q 1. 국외에서 OPV로 기초(1~3차)접종을 완료한 만 6세 아동입니다. 3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한 경우 4차 접종은 생략하나요?

A 1. OPV(Oral Polio Vaccine)와 IPV(Inactivated Polio Vaccine)간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이 경우 3차 접종 시기와 상관없이 나머지 접종을 IPV로 실시하여 총 4회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고, 비용상환 신청도 가능 합니다.



5.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Q 1. 만 6세 아동이 Hib 백신을 접종 받은 적이 없다면 접종권장연령(생후 2~59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A 1. 일반적으로 만 5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무증상 감염에 의해 Hib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어 접종이 필요 없으므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단, 침습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만 5세 이상 소아의 경우 소아기에 Hib 접종력이 없는 아동에 한해 1~2회 접종이 필요하며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침습 Hib 감염의 고위험군: 겸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백혈병, HIV 감염, 보체결손증, 특히 IgG2 이형 결핍 등의 체액면역결핍질환 환자에서는 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할 수 있음

Q 2. DTaP와 폴리오는 2차까지, Hib 백신은 3차까지 접종한 생후 15개월 아동이 Hib 4차를 5가백신(DTaP-IPV/Hib)로 접종해도 된나요?

A 2. 권장하지 않습니다. 5가백신(DTaP-IPV/Hib)은 기초접종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어있으므로 Hib 4차접종시에는 해당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6. 폐렴구균(PCV, PPSV)

Q 1. 폐렴구균 접종력이 없는 60개월 이상의 소아의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A 1. 일반적으로 건강한 만 5세(생후 60개월)이상 소아에게는 접종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렴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만 5세 이상이라도 과거 접종력이 없으면 폐렴구균(단백결합) 백신 접종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Q 2. 생후 24~59개월 연령에서 폐렴구균 1차 접종을 10가 백신으로 시작한 경우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권장되는데 생후 58~59개월에 10가 백신으로 1차 접종한 아동의 2차시기에 60개월이 도래한 경우 2차 접종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나요?

A 2. 일반적으로 건강한 60개월 이상 소아에서는 폐렴구균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폐렴구균 1차 접종을 10가 백신으로 하고 2차시기에 만 5세(생후 60개월)가

넘었다면 2차 접종은 불필요하며, 비용상환에서 제외됩니다.

Q 3. 면역저하 질환이 있는 3세 소아입니다. 이전에 폐렴구균 백신을 4회 모두 접종하였고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경우 비용상환 되나요?

A 3.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른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등)은 이전에 10가 또는 13가 단백결합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2세이상에서 다당질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며,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Q 4. 이전에 폐렴구균 10가 백신으로 접종하였는데 2차 접종을 13가 백신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만약 교차접종이 시행된 경우 다음 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실시하나요?

A 4. 폐렴구균 10가 백신과 13가 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으므로 기초 및 추가접종 시 동일한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발적으로 교차접종을 한 경우 다음 접종은 더 많이 접종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 합니다. 우발적인 교차접종 발생 시 접종력을 인정하여 비용상환 가능하지만,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과거 접종력 확인 절차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Q 1. MMR 2차 접종을 받은 소아가 가와사키병으로 1주 만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 받았습니다. MMR 재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1. MMR 백신을 투여하고 2주안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한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면역글로불린 주사 후 최소 11개월 뒤에 추가적으로 MMR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표준예방접종 횟수 이상의 접종은 적합성을 인정할 경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Q 2. MMR 1차 접종을 생후 11개월에 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2. MMR 1차 접종 최소연령은 생후 12개월로 최소접종연령보다 5일 이상 앞당겨서 시행한 이른접종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최소접종연령보다



이른접종 시 이미 실시한 접종은 무효로 간주하고 다시 접종해야 하며 재접종은 의학적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역사회 내 홍역 유행 등으로 생후 6개월~11개월 연령에게 이른접종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8. 수두(Var)

Q 1. 수두 접종이 지연된 경우 비용상환 기준은?

A 1. 과거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고 접종력이 없는 만 12세 이하 아동은 1회 접종을 실시하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과거 수두병력 및 접종력이 없는 만 13세 이상 아동은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필요

9. 일본뇌염(JE)

Q 1. 일본뇌염 1차를 생백신으로 접종하고 2차 시기에 사백신으로 접종을 원하는 경우 비용상환 되나요?

A 1. 일본뇌염 생백신과 사백신간 교차접종 허용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뇌염 생백신으로 접종한 경우는 2차 접종도 표준접종일정에 맞춰 생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본뇌염 생백신과 사백신간 교차접종의 경우 비용상환에서 제외됩니다.

Q 2. 일본뇌염 베로세포 유래 사백신 0.7ml 백신이 없어 0.4ml 백신 2vial을 사용 하여 만 3세 이상 아동에게 접종할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2. 식약처 사용허가 권장기준에 따라 만 3세 이상에서는 반드시 0.7ml 백신으로 접종하며, 0.4ml 백신을 사용하여 접종 시 비용상환에서 제외됩니다.

Q 3. 베로세포 불활성화 백신과 쥐뇌조직 불활성화 백신으로 각각 1회씩 접종했을 때 3차접종은 베로세포 백신을 접종해도 되나요?

A 3. 가능합니다. 첫 접종을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향후 잔여 접종은 동일한

백신으로 유지해야 하나 과거 우발적으로 2차 접종이 쥐뇌조직 유래 백신으로 접종된 경우 해당 접종(2차)이 최소 접종 간격 등의 기준을 준수한 접종이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하고, 향후 남아있는 접종은 배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10. A형간염(HepA)

Q 1. 2011년 출생아의 조혈모세포 이식 후 A형간염 예방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1. A형간염 백신은 2016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면서 표준예방접종 일정(생후 12~36개월)까지 지원함에 따라 2012.1.1.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생은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인플루엔자(Flu)

Q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1. 인플루엔자 접종 첫 해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첫 해 1회 접종을 받았다면, 다음 해 2회 접종을 완료합니다. 이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6개월~9세 소아들도 유행주에 따라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 아파트나 산업체로 인플루엔자 출장접종이 가능한가요?

A 2.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백신의 안전한 수송 및 보관의 문제와 불충분한 예진, 예방접종 기록 관리 미흡,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의 대처문제 등으로 접종 주체와 관계없이 기관방문이나 간이 접종실에서 수행하는 형태의 단체 예방접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상담비)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접종

Q 1. 왜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권장하나요?

A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성인 연령에서보다 어린 청소년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면역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성접촉이 발생하기 전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자궁경부암 예방에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백신별로 다름)에서 접종시에는 면역력 획득을 위해 3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Q 2. 만 12세에 서바릭스로 1차 접종 후 5개월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2차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2. 서바릭스는 1차 접종 후 5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 시 2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2차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가다실은 1차와 2차 접종간격이 5개월일 경우 총 3회의 접종이 필요하므로 2차 접종비용은 상환 불가하며, 3차 시기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함

Q 3. 만 11세에 4개월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3차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받을 수 있나요?

A 3. 서바릭스는 만 14세까지 1차 접종 후 5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 시, 가다실은 만 13세까지 1차 접종 후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 시 총 2회의 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차와 2차 접종간격이 이보다 이를 경우에는 총 3회의 접종이 필요하며, 지원대상 연령에 해당한다면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Q 4. HPV 1차 접종을 2가 백신으로 접종한 아동이 2차를 4가로 교차접종을 한 경우 재접종 여부와 2차에 대한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A 4.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2가지 HPV 백신을 교차해 사용할 때의 안전성, 면역원성, 효능에 관한 연구데이터는 제한적이므로 교차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교차접종이 된 경우 해당 접종력은 인정하여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하나,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Q 5. 1차를 서바릭스로 접종 경우 2차를 가다실로 교차접종을 한 경우 재접종하나요?

A 5.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교차해 사용할 때의 안전성, 면역원성, 효능에 관한 연구데이터는 제한적이므로 교차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교차접종이 된 경우 해당 접종력은 인정하여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Q 6. (의료기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공급 협약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공급사를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공급 협약서’를 다시 업로드하면 변경신청이 완료됩니다. 승인이 지연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7.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계약 체결 가능한가요?

A 7. 가능합니다. 한 가지 백신만 접종할 경우 해당 백신에 대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를 제출(업로드)하며, 두 가지 백신 모두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가와 4가 백신에 대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를 각각 제출(업로드) 합니다.

2.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서비스 제공 관련

Q 1.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대상자에게 건강상담 또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업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없나요?

A 1. 상담 또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업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반드시 건강 상담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함께(건강 상담+예진 및 예방접종)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사가 건강 상담 및 예진 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건강 상담 및 예방접종을 다음으로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대상자가 상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예방접종서비스만 제공 가능

Q 2. 예방접종 대상자가 건강상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건강상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건강상담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가 건강상담 점검표에 건강 상담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표시를 하면 건강상담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하며 예방접종 기록 등록 시 등록 화면 하단에 '건강 상담 동의안함'을 클릭하며 상담비용청구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Q 3. 주민등록말소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A 3.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4. 의료급여자(1종/2종 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 건강상담비용(초진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나요?

A 4.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은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및 무료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른 진료 행위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청구시 요구되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셔도 건강상담비용(초진진찰료) 청구(보험자부담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본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자의 보험자부담금액 청구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02-705-6514)

3. 이상반응 관련

Q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안전한가요?

A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전 세계 71개국('17.3.31. 기준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국)에서 암 예방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2억 건 이상 안전하게 접종된 백신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큼 안전성 우려는 없으며 여전히 안전하다고 반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Q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타 영유아 백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의 통증*, 부종, 발적, 두드러기 같은 국소반응과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등 전신반응이 있으며, 이런 증상은 보통 2~3일 내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매우 드물게 심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접종부위 통증이나 심한 긴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넘어질 수 있지만('17.12.31.기준, '16.6.20.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 후 67만여 접종건 중 실신 및 실신 전 어지러움 등의 증상(29건) 발생,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중증 이상반응 신고 0건), 건강상태가 좋은날에 접종하기, 접종 후 반드시 20~30분간 접종기관에 앉거나 누워 경과 관찰하기 등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타 백신에 비해 접종부위 통증 빈도가 높은 편

Q 3. 뉴스를 보면 일본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던데 사실인가요?

A 3.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3년 자국에서 발생한 복합부위통증 등의 이상사례에 대해 접종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과 긴장에 의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2014년 2월, 7월). 또한 일본 이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안전성 문제없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도 여전히 무료예방접종 지원을 하고 있음).

* 백신으로 인하여 보행장애, 난소부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SNS 글은 과학적인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며, 세계보건기구 및 해당 국가들(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는 그 사례들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Q 4.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나요?

A 4. 질병관리본부는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을 감시하고 중증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심의를 거쳐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해주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예방접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상담비 진찰료 산정방법 등

● 일반사항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건강보험 이외 의료급여, 보훈 대상자 포함여부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이외 의료급여, 보훈 포함
2	외래 및 입원시 여성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라 예방접종과 진찰·상담이 실시된 경우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외래-입원 구분에 따른 각각의 본인부담률 적용

● 추가산정 관련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여성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 시 야간·공휴 가산 적용 여부	현행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가-1-가. 초진 진찰료 산정과 동일하게 야간·공휴·토요 가산 적용함
2	같은날 동일 의사에게 여성청소년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에 따른 진찰·상담 이외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료받은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에 따라,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에 따른 진찰·상담에 대한 진찰료 1회만 산정 ※ 다만,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별도 질환을 진찰한 경우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 가능 (분리청구)
3	여성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 시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 여부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같은 날 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진찰·상담 이외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산정 가능(분리 청구)
4	예외 인정자(면역저하자에게 3회 접종하거나 조혈모세포 이식 등 타당한 의학적 사유로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의 경우 진찰료도 3회 산정 가능한지 여부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 상담 시 발생하는 진찰료는 대상자당 최대 2회까지 인정
5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시행일 외 다른 날짜에 방문하여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 상담을 하는 경우 진찰료 인정 여부	여성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는 예방 접종 시행 당일 동시에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 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청구관련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시 기재하는 상병분류기호는?	R688(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로 기재함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시 기재내역은?	특정기호 F012(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 대상자) 기재함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시 기재된 본인 일부부담금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사업예산으로 지급) <건강보험, 의원 외래 작성예시> <table><tr><th>요양급여 비용총액 2</th><th>요양급여 비용총액 1</th><th>본인일부 부담금</th><th>청구액</th><th>특정내역구분 MT002</th></tr><tr><td>주1)15,310</td><td>15310</td><td>주2)4,500</td><td>주3)10,810</td><td>F012</td></tr></table>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2 = 진찰료 금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5,310원(요양급여비용총액1) X 30%(외래 본인부담률) = 4,500원(100원미만 절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사업예산으로 지급)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1-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의원 외래 작성예시> <table><tr><th>요양급여 비용총액 2</th><th>요양급여 비용총액 1</th><th>본인일부 부담금</th><th>청구액</th><th>특정내역구분 MT002</th></tr><tr><td>주1)15,310</td><td>15,310</td><td>주2)1,000</td><td>주3)14,310</td><td>F012</td></tr></table>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2 = 진찰료 금액 주2)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의 2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기재 = 2종 수급권자 그밖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구분 MT002	주1)15,310	15310	주2)4,500	주3)10,810	F012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구분 MT002	주1)15,310	15,310	주2)1,000	주3)14,310	F012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구분 MT002																		
주1)15,310	15310	주2)4,500	주3)10,810	F012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구분 MT002																		
주1)15,310	15,310	주2)1,000	주3)14,310	F012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00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사업예산으로 지급)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1-본인일부부담금= 15,310원-1,000원=14,310원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시행 당일 진찰·상담 외 다른 행위(검사, 처치 등)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청구방법	명세서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특정내역구분</th><th>특정내역</th></tr> </thead> <tbody> <tr> <td>예방접종</td><td>MT002</td><td>F012</td></tr> <tr> <td>다른 행위(검사, 처치 등)</td><td>MT001</td><td>R</td></tr> </tbody> </table>	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예방접종	MT002	F012	다른 행위(검사, 처치 등)	MT001	R
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예방접종	MT002	F012									
다른 행위(검사, 처치 등)	MT001	R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Q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1. 산전진찰기관 또는 분만기관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및 e항원(HBeAg) 양성 산모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후, 산모가 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으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 비용만 지원 가능합니다.

※ 면역글로불린 투여, 항원·항체 검사비용 자비 부담

Q 2.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참여가 가능한가요?

A 2.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산모 및 대리인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 예방처치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사업대상자(쿠폰 사용자)의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전산등록방식으로 전환, 관리합니다. 2017년부터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 사업에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구득한 기관에서 5년간 보관

Q 3. (의료기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산모의 B형간염 검사결과와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면 대상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인터넷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에서 피접종자 정보 입력 및 저장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산모 검사결과지 입력 후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 등록, 산모검사결과지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완료

- Q** 4. 출생신고가 지연된 신생아에게 시행된 예방접종비용은 지원되나요?

- A** 4. 법적출생신고기한(출생 후 1개월이내)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7자리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경우, 다음 접종을 등록 할 수 없고, 비용접수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출생신고를 못한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 Q** 5.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등) 자녀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A** 5. 미등록 외국인 자녀라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접종(검사) 시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인적사항 등록 시 보건소에서 해당 대상자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 등록하여야 합니다.

- Q** 6. 기초 1~3회 접종 완료 후 1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1차 재접종을 실시한 아동입니다. 2차 항원·항체 검사를 하지 못하고 2차 재접종을 시행하였는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A** 6.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실시기준에 따라 진행순서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용지급 불가합니다. 1차 재접종 후 반드시 2차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7. 검사를 EIA, CIA, ECL의 정량검사방법으로 하지 않은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A** 7. 사업에서 권장하는 항원·항체 정량검사법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 Q** 8. (의료기관)항원·항체검사 결과 항체가 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수정하려고 했더니 결과 등록 내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8.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원(음성)/항체(양성)으로 입력된 경우 사업이 종료되어 대상자의 예방접종 등록화면에는 기본접종력만 확인되므로, 대상자 인적 관할보건소에 연락하여 수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민원처리'에서 수정 가능

- Q** 9. '예방접종등록' 화면 접종일에 보라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란이 공란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맞나요?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메일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

- A** 9. 의료기관에서는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수첩(쿠폰) 대상자가 전산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건소에 확인 후 접종/검사 미완료된 과거 쿠폰 대상자라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구독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대상자 인적 관할보건소에 Fax로 제출하여 시스템 전환을 요청합니다. 시스템으로 전환 후 검사 및 재접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사업으로는 더 이상 비용지원 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및 교육이수

- Q** 1. (보건소) 계약체결 전 위탁 의료기관 교육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A** 1. 위탁 의료기관과 계약체결 전,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의 기본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Q** 2. (의료기관) 계약 체결 후 비용상환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A**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후 예방접종건부터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보건소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승인한 비용상환 참여일 기준

- Q** 3. (보건소, 의료기관) 기존에 사업 참여를 하였으나 폐업하여 타 지역으로 병원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체결을 다시 하여야 하나요?

A 3. 의료기관이 폐업하게 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폐업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연계를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예방접종업무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지역 관할 보건소와 다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Q 4.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접종실적이 없는 일부 백신에 대한 접종을 중단하여 위탁계약 참여백신 정보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4.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항목이 변경된 경우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Q 5.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며, 반드시 의사가 이수하여야 하나요?

A 5.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을 통해 이수가 가능하며, 예방접종 위탁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탁 계약 만료 후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Q 6. (의료기관) 교육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했는데, NIP사업 관련 교육이 교육과정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A 6. 교육과정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소속구분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기 승인된 권한 취소가 필요하므로 관리자에게 미승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권한에 대한 승인 상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메뉴보기-권한 부가정보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관리USER(학습자) 권한 승인 요청관련은 043-719-6851로 문의

Q 7. (의료기관) 사업 참여 전 보건소 주최 사업 설명회 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는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7. 위탁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 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 등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II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1. 등록 및 시스템 운영(위탁 의료기관 이용안내)

Q 1. 의료기관의 요양기관코드번호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1. 관할 보건소와 위탁 계약 해지 및 신규로 위탁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기존 승인된 예방접종권한은 미승인상태로 변경 처리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변경된 요양기관코드번호로 예방접종권한 신청 및 전자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2. 의료기관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IR의료기관관리(의료기관)’ 또는 ②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 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Q 3. 예방접종관리에 대한 권한 신청 시 “권한정보가 부적합합니다.” 등의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여 신청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 ‘도구’ → ‘호환성보기설정’ → ‘cdc.go.kr’ 추가 후 재신청합니다.

Q 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인증서 로그인을 했는데 메뉴에 ‘예방접종관리’ 폴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A 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가입완료 후 예방접종관리업무 권한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메뉴보기’ → ‘권한/부가정보관리’ 메뉴에서 예방접종관리업무에 대한 권한 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권한이 승인되면 메뉴에서 예방접종관리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5.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예방접종 내역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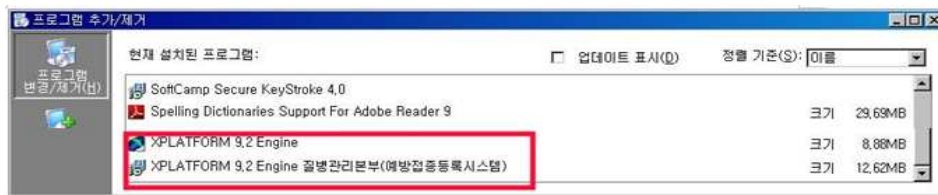
- A** 5. 의료정보업체에 질병관리본부로 전산등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업데이트 요청하신 후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에서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기록(비용사업) 연계가 가능한 업체명

비트컴퓨터, 브레인컨설팅, 네오소프트뱅크, 다솜정보, 유비케어, 포인트닉스, 전능아이티, 병원과컴퓨터, 중외정보기술, 메디칼소프트, 메디컴코리아, 엠디소프트, 금우뱅크소프트, 포닥터, 케이컴, 서전정보개발, 나은소프트, 대일전산, 메트로소프트, 엔지테크, 지누스, 자인컴, 메딕슨, 이헬스플러스, 뉴마테크, 지센커뮤니케이션,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 Q** 6. Active X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6. Active X 설치화면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XPLAFORM 9.2 Engine', 'XPLAFORM 9.2 Engine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삭제합니다.



- Q** 7. 윈도우 Xp에서 Active X 설치시 "command line" 오류가 발생하면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 A** 7. 모든 익스플로어창을 닫고 바탕화면의 "내컴퓨터"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후 [속성] → [고급] → [환경변수]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의 사용자 변수값 TEMP, TMP를 각각 선택하여 편집을 클릭해 사용자 변수값을 "c:\temp"로 수정, 확인 후 재부팅한 후 재설치하기 바랍니다.

- Q** 8.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형식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합니다. 어떻게 등록하나요?

- A** 8.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등록되어있는 번호가 맞는지 보호자에게 재확인하고, 올바른 주민등록번호임에도 계속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4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9. 등록된 피접종자의 인적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A** 9. 등록된 피접종자의 인적정보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차트프로그램) 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Q 10.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10. 실제 태어난 날짜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는 출생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보건소에 정보수정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

Q 11. “행정부에서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로 접종하여 등록(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정보가 변경된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확인바랍니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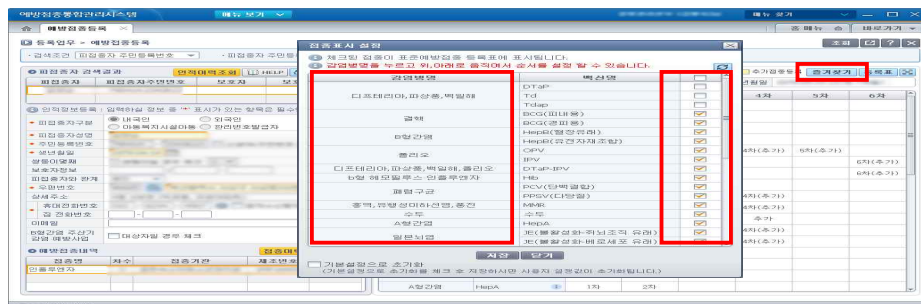
A 1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보호자에게 올바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8~51)로 연락하시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Q 12. 접종내역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재접종한 경우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A 12. 동일백신, 동일차수에 중복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접종차수 접종일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오른쪽버튼을 클릭하면 접종내역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접종정보가 중복으로 등록된 경우 접종일 박스가 노란색으로 변경됨

Q 1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표준예방접종 등록표’는 의료기관에서 자주 등록하는 접종만 따로 설정할 수는 없나요?

A 13. 현재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등록화면 오른쪽 상단의 ‘즐거찾기’를 클릭하여 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을 선택하거나 감염병명을 Drag&Drop하여 순서를 변경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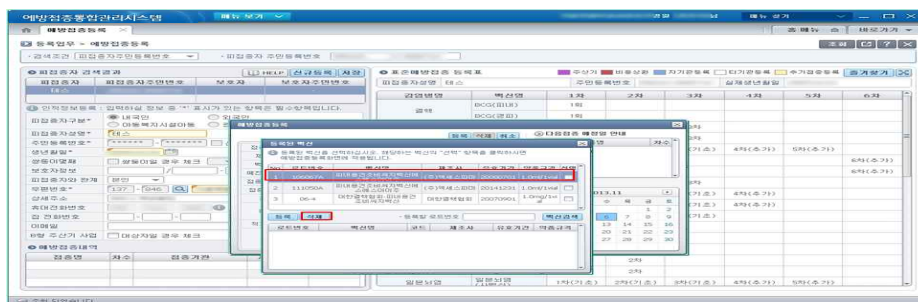


Q 14. 예진 의사명, 접종자명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 14. 상단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 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15. 접종내역 등록 시 매번 백신제조번호를 검색해야 하나요?

A 15. 자주 사용하는 백신제조번호를 설정(등록/삭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화면의 차수 선택 시 생성된 팝업창에서 ‘등록된백신’ 검색 후 조회목록에서 해당 백신의 제조번호를 선택 후 ‘등록’해 상단 목록에 추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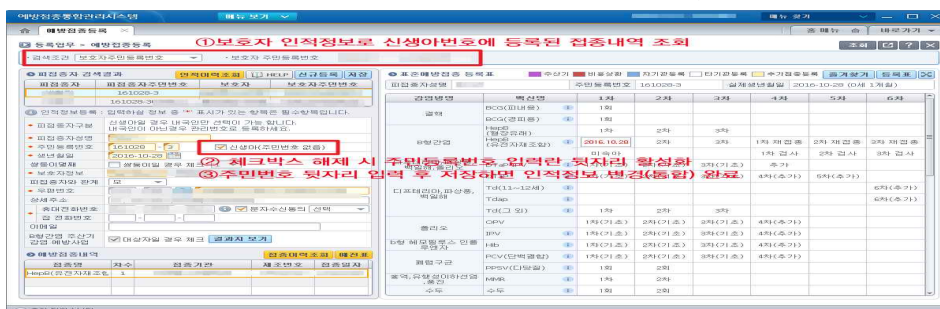


Q 16. 출생신고 전 임시 신생아번호 접종내역을 주민등록번호로 어떻게 통합관리 하나요?

A 16. 보호자의 주민번호로 신생아번호 접종내역을 조회합니다. 신생아(주민번호없음) 체크박스 선택해제 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활성화되고,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저장하면 주민번호 정보로 통합됩니다.

※ 임시 신생아번호와 주민등록번호에 중복 접종내역이 존재하는 경우는 통합이 불가하므로 중복등록내역을 우선 처리 후 통합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번호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8~51)로 인적 및 접종정보 통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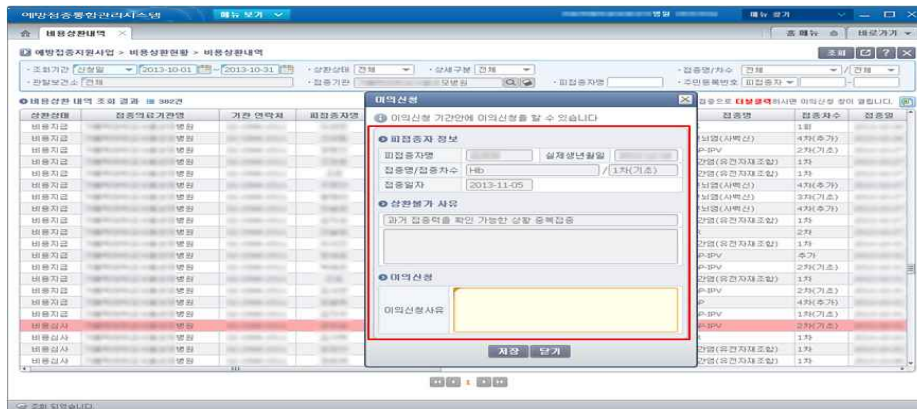


Q 17. 과거 접종력을 조회하였는데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용상환 신청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17.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기록이 등록된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중복접종은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B형간염 고위험군,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등)는 의학적 소견을 입력하면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18. 비용상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18. ‘비용상환내역’ 메뉴에서 비용상환 신청건 중 상환불가로 심사된 내역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상환불가 내역’을 더블클릭 후 ‘이의신청 팝업창’에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저장하면 완료되며, 이의신청된 내역은 보건소에서 확인 후 재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Q 19. 의료기관이 폐업된 경우에는 과거 비용신청 된 내역은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A 19. 폐업된 의료기관일 경우에는 의료기관 관할보건소에서 접종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관할보건소로 연락하시어 과거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을 요청을 하시면 보건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Q 20. 비용상환 신청건에 대한 행정자치부 오류내역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정부오류내역’에서 내역 조회 후 수정하고자하는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여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내용을 수정 후 ‘수정’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Q 21. 예방접종 위탁계약현황 등 기관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2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탁계약정보 외 기관정보(예진의사, 접종자, 전자서명용 기관인증서 등) 직접 수정 가능

Q 22. 비용상환 지급계좌번호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2. 의료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의료기관정보(병원)’ 메뉴에서 등록된 계좌번호 확인이 가능하며, 지급계좌정보를 수정하려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계약신청’ 메뉴에서 통장사본을 새로 등록 하고,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II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Q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등록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는?

A 1. 심평원에서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기관인증서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개인 공인인증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두 명 이상 중복사용이 불가(즉, 하나의 공인인증서에 하나의 ID만 사용 가능) 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2. 교육사이트 접속 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실명 인증 오류, 공인인증서 변경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Help desk(☎1644-1407)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3. 요양기관번호는 동일하나 소속(요양)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변경하나요?

A 3. 사업자등록증에 요양기관번호를 기재하여 질병관리본부 시스템 담당부서(정보화T/F)로 팩스(Fax 043-719-7069)를 보낸 후, 반드시 담당자(☎ 043-719-7059)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Q 4.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 의료기관입니다.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수강종료과정에서 '수료'로 확인되는데 관할보건소에서는 병원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나의정보'를 클릭하여 관할보건소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NIP 사업 교육은 의사 대상 교육이므로 간호사 등 기타 직군이 수료한 경우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Q 5. 의사선생님이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 본인의 개인 정보로 회원가입 후 동 ID로 의사분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사분이 교육 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5. 위탁계약을 원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시행 의사 1인 이상이 반드시 본인의 ID로 회원가입 후, 직접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Q 6. 다음 강의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6.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① Explorer 버전이 7.이하일 경우 8.이상 업데이트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② 'http://www.adobe.com/software/flash/about'에서 컴퓨터 내에 설치된 flash player의 버전이 10.x이하인 경우 11.x이상으로 업데이트 후 수강하기 바랍니다.
- ③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Google Chrome'인 경우 프로그램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브라우저를 'explore'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Q 7. 모든 강의를 수강하였고 진도율도 100%인데 '수강종료과정(수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A 7. 해당 과정의 [학습하기]를 클릭한 후 'e강의실' 화면의 왼쪽에 위치한 [강의실 입장]을 클릭합니다. 목차 화면 중, 마지막 회차의 강의 [복습하기]를 클릭한 후 화면 로딩이 끝나면 동영상 강의창을 닫은 후, 'e강의실' 화면을 닫으면 됩니다.

※ 수강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과로 문의 바랍니다.

Q 8. 예방접종 교육과정 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A 8. PDF파일을 다운 받았으나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포털사이트에서 PDF뷰어(Adobe Reader)를 다운받아 설치하기 바랍니다.

Q 9. 교육수료증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A 9. 교육시스템 홈 화면 상단의 '수강과정' 메뉴의 '수강종료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0. 소속 의료기관이 변경되어 기존 수강내역을 현재 이전한 소속기관의 ID로 이관했습니다. NIP사업 계약을 위해 수료증을 출력했는데 이전 의료기관 주소로 출력됩니다.

A 10. 수료증의 의료기관명과 기관주소는 수료 당시의 기관명과 주소로 인쇄되며, 해당 내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한 경우는 보건소 교육시스템 관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 의료기관에서 수료한 기본교육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Q 11. 기존에는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교육을 수료했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니 해당 교육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A 11.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교육을 수료한 아이디와 공인인증서에 등록된 아이디가 달라 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8~51)로 문의하여 교육내역 이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V 이상반응 관리

Q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나요?

A 1. 이상반응 신고를 받게 되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안전관리→이상반응→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에서 신고합니다.

Q 2. 피해보상 신청 기준이 있나요?

A 2.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이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3.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시 보상 결정 처리 절차와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3.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관할보건소에 이를 보상 신청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시·도지사는 신속히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피해조사결과가 및 피해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질병관리본부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보상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하고 보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상관련 세부 사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고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위탁 의료기관용)

- 창 간 : 2009년 1월
- 인 쇄 : 2018년 1월
- 발 행 : 2018년 1월
- 발 행 인 :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편 집 인 : 감염병관리센터장 김현준
- 편집위원 : 예방접종관리과
- 자문위원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 편 집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주 소 :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 전 화 : 사업운영 043) 719-6848~51
시스템관리 043) 719-6845~6846
- 팩 스 : 043) 719-6859
- 홈페이지 : <http://is.cdc.go.kr> nip01@korea.kr

ISBN : 978-89-6838-453-0 (93510)